

공무원연금 개혁(안)정책 대안 분석

2006

김재경 · 김정록 · 황정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머 리 말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급구조 불균형과 점진적인 제도성숙에 따라 연금재원 확보곤란 등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도의 외형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단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회보장적기능이 결여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에 공단이 재정재계산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 행정자치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대안 검토를 의뢰하고, 심도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위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 개선 정책건의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연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2006년 KDI와 발전위의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개선대안에 따른 장기재정추계 및 재정분석업무를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그 지원의 결과를 담고 있다. 우선, KDI 가정치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및 작년 공단 재정전망과의 비교결과를 수록하였으며, 둘째, KDI 개선대안의 재정과 형평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발전위 개선대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센터의 김재경 연구위원, 김정록·황정아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유익한 조언 및 협조를 아낌없이 제공하신 KDI의 문형표 박사, 순천향대의 김용하 교수 그리고 연구센터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연구센터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7년 1월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센터장 박 준 근

목 차

- ◆ KDI 기초율가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와 재정분석..... 1
- ◆ KDI 개혁대안 정책효과 분석..... 43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개선안 정책효과 분석..... 91

KDI 기초율가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와 재정분석

2006. 8

1. 재정추계방법 / 3

2. 가정치의 설정 / 6

3.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재정분석 / 19

표 차례

<표 2-1> 공무원수 가정	8
<표 2-2> 일반직 남자 공무원 퇴직률	10
<표 2-3> 공무원 남자 사망률	13
<표 2-4> 일반직 공무원 남자 연금선택률	16
<표 2-5> 경제기초율 가정	16
<표 2-6> 기타 가정	17
<표 3-1> 인원전망 결과	20
<표 3-2> 중기재정전망 결과	23
<표 3-3> 장기재정전망 결과	25

그림 차례

[그림 1-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6
[그림 3-1] 장기재정전망 결과	26
[그림 3-2]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32

부표 차례

<부표 1>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37
<부표 2>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주요 지표)	41

KDI 기초율가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와 재정분석

1. 재정추계방법¹⁾

가. 재정추계의 개요

□ 재정추계의 정의와 목적

- 장기간에 걸친 연금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서 장래 연금재정 상황과 경향을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 또한, 재정안정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절한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적인 수단으로 사용됨.

□ 장기재정추계의 기본 골격

- 연금재정추계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재정추계모형(actuarial projection model)과 추계가정(actuarial assumption)임.
- 재정추계모형이란 ‘시간에 걸쳐 가입자가 제도에 가입하여 기여하고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망하여 연금수급을 종료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합리적으로 함축한 장기재정추계의 설계도’임.

1) 김재경·김정록(2002)의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보완하여 작성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추계가정은 장래의 연금 내·외적 변화를 재정추계모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망률, 퇴직률, 연금선택률,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이 있음.
- 합리적으로 재정추계모형을 설계하였다고 할지라도 장래 환경변화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재정추계에 있어 적절하게 설정된 추계가정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기본 구조

- 급변하는 연금 내·외적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이 용역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장기재정추계모형을 준용함.
- 공단 재정추계모형은 수리적으로 안정된 모형으로서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 분포구조를 세분화하여 이들 분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음.
- 재정추계모형은 <그림 1-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원추계, 보수추계, 수입추계, 지출추계, 기타추계 등 5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재직자부문과 수급자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추계야말로 추계모형에 있어 가장 중요함.

□ 인원추계

- 재직자부문 인원추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생활수준(GDP), 고령화 정도에 따른 공무원 수요도를 파악하여 가입자수를 전망하였으며, 이에 퇴직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퇴직자수를 전망하였음.

- 수급자부분 인원추계에서는 1) 연령별, 성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연금선택률, 2) 성별, 연령별 연금승계율, 3) 성별, 연령별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퇴직급여수급자수와 유족급여수급자수를 전망하였음.

□ 보수추계

- 추계전년도의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평균보수월액 실적치에 명목보수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보수월액, 연금산정 기준보수 등을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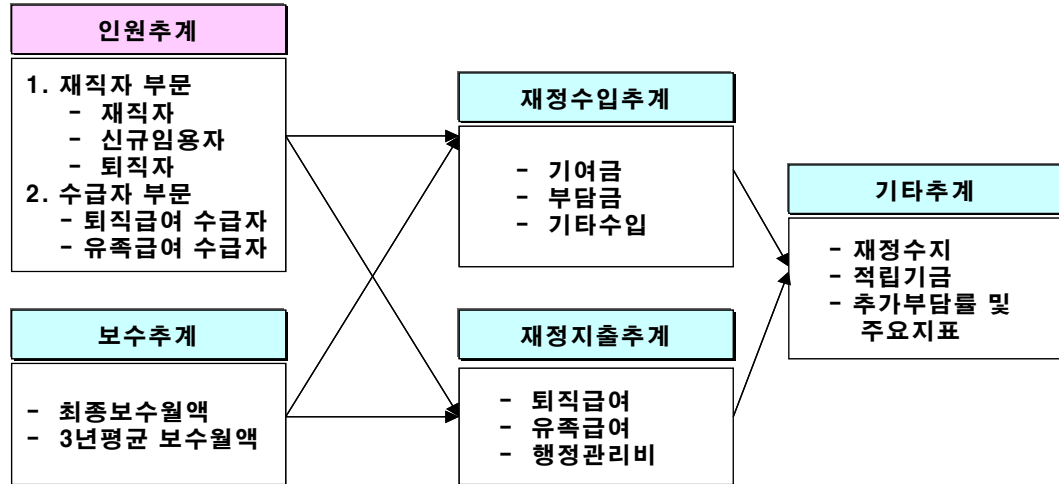
□ 수입추계 및 지출추계

- 수입추계에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재직자수와 보수월액에 공무원 및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적용하여 재정수입을 전망하였음.
- 연금지출부문과 관리비지출부문으로 구성된 지출추계에서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연금과 일시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해당 급여수급자수, 보수월액 및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연금지출을 전망하였으며, 기여금 대비 실적비율에 기반을 두어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관리비지출을 전망하였음.

□ 기타추계

- 기타추계부문에서는 앞서의 추계결과에 기반을 두어 재정수지, 보전액, 적립금 등을 전망할 뿐만 아니라 부양률, 지출률, 수지율, 보전율, 적립률 등의 지표를 전망하였음.
- 여기에서 부양률은 재직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지출률은 연금보수총액 대비 지출액, 보전율은 연금보수총액(혹은 GDP) 대비 보전액, 수지율은 지출액 대비 수입액 그리고 적립률은 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의 비율로 정의되어짐

[그림 1-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2. 가정치의 설정

가. 개 요

- 연금제도의 장기재정흐름은 인구학적, 경제적 및 연금 내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예컨대 연금제도 내·외 환경이 재직공무원의 규모와 구성, 보수수준과 분포 등에 영향을 미쳐 연금수입흐름을 달라지게 하며 수급자의 규모와 구성, 연금급여 수준 등에 영향을 미쳐 연금지출흐름을 달라지게 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정치의 설정은 과거 경험치 및 미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요 가정으로 가입자전망, 퇴직률, 사망률(기대여명), 경제기초율(물가상승률, 보수상승률, 이자율), 각종 연금선택률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 연구용역에서 적용한 가정은 기본적으로 공단 가정을 준용하였으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추계가정과 상이한 값을 적용하였음.
 - 신규임용자 성비를 2005년 경험치에 기반을 두어 교육직 남자 및 여자비율을 각 28.2% 및 71.8% 그리고 일반직 남자 및 여자비율을 각 65.6% 및 34.4%을 적용하였음.
 - 경제기초율의 경우, 과거연도 적용치는 연구센터의 경제기초율을 준용하되 추계기간 적용치는 2006년 KDI 경제기초율 및 3.0%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불변치 치환지표로 GDP디플레이터가 아니라 CPI를 사용하였음.
 - 인구학적 기초율 중 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유족연금승계율은 공단의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보정치를 2005년 실적치 수준으로 상·하향하였음.²⁾

나. 가입자수 전망

- 우선 1989~2005년 17개년도 실적자료에 기반을 두어³⁾ 1인당 실질 GDP의 로그값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를 예측함.

$$N_t^{1000} = -19.614 + 6.0125 \log(gdp_t) - 1.971D_t$$

$$(R^2 = 0.674)$$

where N_t^{1000} = 연도별 천명당 공무원수

gdp_t = 연도별 1인당 실질 GDP

D_t = 0 when $t < 1998$
1 when $t \geq 1998$

2) 2005년 실적치 수준은 다음과 같음.

항 목		교육직	일반직
퇴직연금선택률		94.66%	89.76%
유족연금선택률		63.13%	80.32%
공제일시금선택률		25.33%	21.04%
유족연금승계율	남자	98.2%	
	여자	74.1%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하 외(2004) 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다음으로 2050년까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리고 그 이후는 KDI 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잠정공무원수를 전망함.

$$N_t = N_t^{1000} * \frac{Pop_t}{1000}$$

where N_t = 연도별 잠정공무원수

Pop_t = 연도별 인구수

- 마지막으로 고령화 현상으로 공무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여 공무원수가 최대가 되는 2030년부터 공무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최종공무원수를 예측함.⁴⁾

〈표 2-1〉 공무원수 가정

연 도	1인당 실질GDP	인구수	인구천명당 공무원수	잠정공무원수	최종공무원수
2005	9,109,281	48,710,241	20	994,193	994,193
2010	11,125,683	49,594,482	21	1,032,096	1,032,096
2015	13,109,530	50,352,318	21	1,067,941	1,067,941
2020	15,590,909	50,650,260	22	1,097,187	1,097,187
2025	18,742,471	50,648,525	22	1,121,497	1,121,497
2030	22,688,175	50,296,133	23	1,138,786	1,138,786
2035	24,417,366	49,483,999	23	1,129,888	1,138,786
2040	26,540,292	48,204,474	23	1,111,166	1,138,786
2045	29,150,334	46,470,670	23	1,082,582	1,138,786
2050	32,350,845	44,336,997	24	1,044,937	1,138,786
2055	36,129,406	42,035,917	24	1,002,830	1,138,786
2060	40,573,356	39,634,177	24	957,538	1,138,786
2065	45,737,633	37,227,728	24	911,046	1,138,786
2070	51,723,978	34,856,015	25	864,200	1,138,786
2074	54,144,639	34,856,015	25	868,363	1,138,786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기초율추계 및 가입자전망(2004: 사회보험연구소)』과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전망(20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참조.

다. 퇴직률 가정

□ 산정 개요

- 퇴직률은 우선 2003~2005년 퇴직자와 2002~2004년 재직자 경험치에 기반을 두어 산정하였으며, 산정구간은 교육직의 경우 입직연령 18~65세와 재직기간 0~45년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 입직연령 18~60세와 재직기간 0~45년임.
- 일반직 남녀 및 교육직 남녀로 나누어 연도별, 연령별, 재직기간별로 산정하였으며, 교육직은 65세, 일반직은 60세에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보정 개요

- 보정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서, 우선 신규 임용자의 경우 직종별 및 성별로(2003~5년 당년입직 당년퇴직자 합 / 2003~5년 신규 임용자 합)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직종별 및 성별로 입직연령 5세 구간별(2003~5년 퇴직자 합 / 2002~4년 재직자 합)로 정의하여 원시퇴직률을 산정함.
- 다음으로 Jenkins 5차 점축보간법 및 Greville 3차 11항식으로 원시퇴직률을 평활하여 연령별 보정퇴직률을 산정함.
- 마지막으로 교육직 57세 이상 그리고 일반직 52세 이상의 경우 보정퇴직률이 아닌 3개년 경험퇴직률을 적용하여 최종퇴직률을 산출함.⁵⁾
- 지면의 제약으로 일반직 남자 퇴직률만을 제시하기로 함.

5) 부분적으로 실제 경험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레빌 3차 11항식으로 보정할 때 전·후 5개 연령값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육직 62세와 일반직 57세 이후의 불안정한 퇴직 추세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2-2〉 일반직 남자 공무원 퇴직률

(단위 : %)

임용연령 재직기간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0	0.53	0.53	0.37	0.90	1.47	2.62	2.32	5.17	4.34	100.00
1	5.52	0.91	5.16	8.90	9.01	9.73	8.53	11.70	8.96	100.00
2	5.58	0.83	5.24	9.06	9.21	9.79	8.45	9.20	15.43	100.00
3	5.21	0.73	4.92	8.57	8.81	9.27	7.87	15.67	25.31	100.00
4	4.41	0.62	4.23	7.42	7.82	8.14	6.90	20.25	24.30	100.00
5	3.33	0.53	3.29	5.82	6.42	6.54	5.84	2.78	100.00	100.00
6	2.18	0.47	2.31	4.12	4.89	4.71	5.09	6.48	100.00	100.00
7	1.19	0.45	1.47	2.66	3.52	2.96	4.04	23.14	100.00	100.00
8	0.45	0.41	0.85	1.56	2.41	1.46	4.20	24.30	100.00	100.00
9	0.01	0.37	0.49	0.91	1.60	0.53	1.23	54.00	100.00	100.00
10	0.02	0.35	0.35	0.62	1.04	0.45	4.07	100.00	100.00	100.00
11	0.02	0.33	0.34	0.58	0.64	1.49	1.07	100.00	100.00	100.00
12	0.02	0.32	0.38	0.62	0.30	1.56	25.96	100.00	100.00	100.00
13	0.03	0.32	0.42	0.67	0.02	3.01	16.87	100.00	100.00	100.00
14	0.15	0.32	0.45	0.67	0.06	0.96	48.98	100.00	100.00	100.00
15	0.26	0.34	0.46	0.58	0.11	1.22	100.00	100.00	100.00	100.00
16	0.35	0.38	0.49	0.41	0.87	1.90	100.00	100.00	100.00	100.00
17	0.43	0.45	0.53	0.19	1.59	56.59	100.00	100.00	100.00	100.00
18	0.49	0.52	0.60	0.23	1.04	49.14	100.00	100.00	100.00	100.00
19	0.54	0.61	0.66	0.27	1.49	80.21	100.00	100.00	100.00	100.00
20	0.58	0.70	0.68	0.35	2.8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1	0.59	0.78	0.61	1.30	2.8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2	0.59	0.83	0.45	2.04	44.5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3	0.58	0.86	0.23	1.92	36.4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4	0.55	0.86	0.10	1.90	56.7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5	0.53	0.85	0.20	3.0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6	0.52	0.83	0.75	2.5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7	0.53	0.83	1.24	47.4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8	0.56	0.83	2.28	30.7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9	0.59	0.87	2.84	47.4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	0.62	0.95	3.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1	0.63	1.05	4.4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2	0.59	1.15	49.6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3	0.48	2.73	44.7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4	0.54	2.42	44.9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5	0.18	1.1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6	0.73	1.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7	0.50	8.5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8	0.71	3.7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9	1.53	3.9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4.8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1	7.7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라. 사망률 가정

□ 산정 개요⁶⁾

- 우선 5세 군단별 기준사망률(1999~2003)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text{중앙사망률} = \text{사망건수} \div \text{경과재직건수}$$

- 사망건수 : 5세구간별 연중사망자수
- 경과재직건수 : (연초재직자수 + 연말재직자수) ÷ 2

- 다음, 5개년(1999~2003)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기준사망률은 5개년도의 중간 시점인 2001년 사망률이므로 국민생명표의 연평균 개선율을 산출하여 4개년 개선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기초사망률을 산출하였음.

$$q_x^0 = q_x \cdot (1 - r_x)^{N_x}$$

q_x : 기준사망률(5세군단) q_x^0 : 연금기초사망률(5세군단)
 r_x : 연평균개선율(5세군단) N_x : 개선기간(4개년)

- 국민생명표에 의한 연평균 개선율(r_x)은 1997년 국민생명표와 2001년 국민생명표 사망률의 기하평균임.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기초율추계 및 가입자전망(2004: 사회보험연구소)』 참조

$$r_x = 1 - \left(\frac{q_x^{2001}}{q_x^{1997}} \right)^{\frac{1}{4}}$$

q_x^{1997} : 1997 국민생명표의 사망률

q_x^{2001} : 2001 국민생명표의 사망률

□ 보정 개요

- 마지막으로 최종사망률을 구하기 위하여 세 단계의 보정작업을 거쳤으며, 우선, 5개년(1999~2003)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5세군단 연령별 기초사망률을 평활성(smoothness)을 갖춘 연령별 사망률로 치환하기 위하여 Jenkins 5차 접촉보간법을 적용하였음.
- 둘째, 평활성과 적합성(fitness)을 높이기 위하여 Greville의 3차 11항식법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서 Greville 보정까지 행한 사망률은 65세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수적인 방법에 따라 주어진 사망률에 기초하여 65세 이상 사망률을 추정하였음.
- 65세 이상 연령의 사망률 보정을 위하여 Compertz-Makeham법을 적용하였음.
- 지면의 제약으로 남자 사망률만을 제시하기로 함.

〈표 2-3〉 공무원 남자 사망률

(단위 : %)

연령 \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40	2060
20	0.0394	0.0363	0.0334	0.0307	0.0220	0.0157
21	0.0460	0.0423	0.0389	0.0358	0.0256	0.0183
22	0.0508	0.0467	0.0430	0.0395	0.0283	0.0203
23	0.0528	0.0486	0.0447	0.0411	0.0294	0.0211
24	0.0517	0.0476	0.0438	0.0403	0.0288	0.0206
25	0.0482	0.0447	0.0414	0.0383	0.0282	0.0208
26	0.0436	0.0404	0.0374	0.0347	0.0255	0.0188
27	0.0395	0.0366	0.0339	0.0314	0.0231	0.0170
28	0.0367	0.0340	0.0315	0.0291	0.0215	0.0158
29	0.0355	0.0329	0.0305	0.0282	0.0208	0.0153
30	0.0359	0.0335	0.0312	0.0291	0.0221	0.0168
31	0.0374	0.0349	0.0325	0.0304	0.0230	0.0175
32	0.0397	0.0370	0.0346	0.0323	0.0245	0.0186
33	0.0426	0.0397	0.0371	0.0346	0.0263	0.0199
34	0.0460	0.0429	0.0401	0.0374	0.0284	0.0215
35	0.0500	0.0470	0.0441	0.0414	0.0322	0.0251
36	0.0548	0.0515	0.0484	0.0454	0.0353	0.0275
37	0.0605	0.0568	0.0534	0.0501	0.0390	0.0303
38	0.0672	0.0631	0.0592	0.0556	0.0433	0.0336
39	0.0749	0.0703	0.0660	0.0620	0.0482	0.0375
40	0.0835	0.0787	0.0742	0.0699	0.0552	0.0435
41	0.0931	0.0878	0.0827	0.0780	0.0615	0.0486
42	0.1037	0.0977	0.0921	0.0868	0.0685	0.0541
43	0.1151	0.1085	0.1022	0.0963	0.0760	0.0600
44	0.1273	0.1199	0.1131	0.1066	0.0841	0.0664
45	0.1402	0.1328	0.1258	0.1191	0.0959	0.0772
46	0.1538	0.1457	0.1380	0.1307	0.1052	0.0847
47	0.1681	0.1592	0.1508	0.1428	0.1150	0.0926
48	0.1831	0.1734	0.1643	0.1556	0.1253	0.1008
49	0.1991	0.1886	0.1786	0.1692	0.1362	0.1097
50	0.2163	0.2047	0.1938	0.1834	0.1472	0.1181
51	0.2351	0.2225	0.2106	0.1993	0.1600	0.1284
52	0.2676	0.2533	0.2398	0.2269	0.1821	0.1462
53	0.2979	0.2819	0.2668	0.2526	0.2027	0.1627
54	0.3318	0.3141	0.2973	0.2814	0.2258	0.1812
55	0.3699	0.3510	0.3330	0.3160	0.2562	0.2077
56	0.4127	0.3916	0.3716	0.3526	0.2858	0.2317
57	0.4607	0.4372	0.4148	0.3936	0.3191	0.2586
58	0.5146	0.4883	0.4633	0.4396	0.3564	0.2889
59	0.5751	0.5457	0.5178	0.4913	0.3983	0.3229
60	0.6430	0.6116	0.5816	0.5532	0.4526	0.3703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2-3〉 계속

(단위 : %)

연령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40	2060
61		0.7192	0.6840	0.6505	0.6187	0.5062	0.4142
62		0.8047	0.7653	0.7279	0.6923	0.5664	0.4634
63		0.9006	0.8566	0.8147	0.7748	0.6339	0.5187
64		1.0083	0.9589	0.9120	0.8674	0.7097	0.5806
65		1.1290	1.0774	1.0282	0.9813	0.8140	0.6752
66		1.2644	1.2066	1.1516	1.0990	0.9116	0.7561
67		1.4162	1.3516	1.2898	1.2309	1.0210	0.8469
68		1.5865	1.5140	1.4449	1.3789	1.1438	0.9487
69		1.7773	1.6961	1.6187	1.5448	1.2814	1.0629
70		1.9911	1.9153	1.8424	1.7722	1.5173	1.2990
71		2.2308	2.1458	2.0641	1.9855	1.6998	1.4553
72		2.4992	2.4040	2.3124	2.2243	1.9044	1.6304
73		2.7997	2.6931	2.5905	2.4918	2.1334	1.8265
74		3.1361	3.0167	2.9018	2.7913	2.3897	2.0459
75		3.5125	3.4012	3.2935	3.1891	2.8038	2.4650
76		3.9335	3.8089	3.6882	3.5713	3.1398	2.7605
77		4.4040	4.2645	4.1294	3.9986	3.5155	3.0907
78		4.9297	4.7736	4.6223	4.4759	3.9351	3.4597
79		5.5167	5.3419	5.1727	5.0088	4.4036	3.8716
80		6.1715	5.9844	5.8029	5.6270	4.9750	4.3985
81		6.9015	6.6922	6.4893	6.2926	5.5634	4.9188
82		7.7145	7.4806	7.2538	7.0338	6.2188	5.4982
83		8.6190	8.3577	8.1043	7.8586	6.9480	6.1429
84		9.6243	9.3325	9.0496	8.7752	7.7584	6.8594
85		10.7401	10.4560	10.1794	9.9101	8.9023	7.9971
86		11.9767	11.6599	11.3514	11.0511	9.9274	8.9179
87		13.3451	12.9920	12.6483	12.3137	11.0616	9.9367
88		14.8564	14.4634	14.0808	13.7083	12.3143	11.0621
89		16.5223	16.0852	15.6597	15.2454	13.6951	12.3025
90		18.3542	17.9399	17.5349	17.1390	15.6429	14.2775
91		20.3637	19.9040	19.4546	19.0154	17.3556	15.8406
92		22.5615	22.0522	21.5543	21.0677	19.2287	17.5502
93		24.9574	24.3940	23.8433	23.3050	21.2707	19.4140
94		27.5599	26.9377	26.3295	25.7351	23.4887	21.4384
95		30.3750	29.8074	29.2505	28.7039	26.6179	24.6835
96		33.4063	32.7821	32.1695	31.5684	29.2743	27.1468
97		36.6534	35.9685	35.2965	34.6369	32.1198	29.7855
98		40.1117	39.3622	38.6267	37.9049	35.1503	32.5958
99		43.7708	42.9529	42.1503	41.3627	38.3568	35.569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각종 연금선택률 및 공제일시금 선택률

- 일반직 남녀, 교육직 남녀로 나누어 연도별, 연령별, 재직기간별로 산정하였으며, 산정구간은 교육직은 연령 36~65세와 재직기간 20~45년 그리고 일반직은 연령 36~60세와 재직기간 20~45년임.
- 산정방법은 퇴직률 산정방법과 유사하게 연령별 퇴직연금선택률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Jenkins 5차 점축보간법 및 Greville 3차 11항식법을 적용하여 보정작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퇴직연금선택률 상향추세를 추가 감안하기 위하여 최근 2005년 실적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유족연금선택률 및 공제일시금선택률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였음.
- 지면의 제약으로 추계 초기년도의 일반직 남자 퇴직연금선택률만 제시함.

바. 경제기초율(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가정과 기타가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수수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의 경제기초율 가정은 KDI 거시경제변수 전망자료(2006)에 기반을 두었으며, 그 외 가정치는 공단의 경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 경제기초율과 기타가정의 적용내역은 <표 2-5>와 <표 2-6>에 제시되어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2-4〉 일반직 공무원 남자 연금선택률

(단위 : %)

연령 재직기간	36	39	42	45	48	51	54	57	60
20	65.09	66.18	47.39	39.47	49.50	66.89	80.42	89.26	91.76
21	0.00	64.83	64.09	61.48	67.55	76.92	89.09	89.91	58.75
22	0.00	42.74	65.97	76.66	76.10	76.94	86.19	95.13	74.16
23	0.00	48.75	67.85	76.34	84.07	90.80	96.11	100.00	90.21
24	0.00	0.00	83.54	86.14	79.23	80.78	92.15	100.00	97.62
25	0.00	0.00	73.67	85.43	81.92	81.45	87.74	100.00	100.00
26	0.00	0.00	77.19	92.84	88.14	89.52	100.00	100.00	65.11
27	0.00	0.00	0.00	94.03	95.32	91.18	98.61	100.00	79.13
28	0.00	0.00	0.00	74.44	90.80	94.81	100.00	100.00	93.54
29	0.00	0.00	0.00	73.34	94.86	97.71	100.00	100.00	100.00
30	0.00	0.00	0.00	0.00	89.23	100.00	100.00	100.00	84.84
31	0.00	0.00	0.00	0.00	96.65	100.00	100.00	100.00	67.38
32	0.00	0.00	0.00	0.00	76.63	100.00	100.00	100.00	82.66
33	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0	100.00	98.56
34	0.00	0.00	0.00	0.00	0.00	89.23	100.00	100.00	100.00
35	0.00	0.00	0.00	0.00	0.00	90.59	100.00	100.00	88.36
36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0	69.05
37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100.00	86.56
38	0.00	0.00	0.00	0.00	0.00	0.00	92.66	100.00	100.00
3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92.23
4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2-5〉 경제기초율 가정

(단위 : %)

연 도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이 자 율
2006	3.2	2.9	7.5
2010	6.9	3.0	7.2
2015	6.8	3.0	6.7
2020	6.6	3.0	6.4
2025	6.3	3.0	6.2
2030	6.0	3.0	6.1
2035	5.9	3.0	6.1
2040	5.8	3.0	6.1
2045	5.7	3.0	6.1
2050	5.8	3.0	6.2
2055	5.8	3.0	6.2
2060	5.8	3.0	6.2
2065	5.8	3.0	6.2
2070	5.8	3.0	6.2

* 2006년은 실적치

〈표 2-6〉 기타 가정

◆ 부문별 기금수익률

(단위 : %)

년도	공공부문	증식부문	복지부문
2006	0.00	7.18	5.74
2007	0.00	6.92	5.53
2008	0.00	6.73	5.30
2009	0.00	6.58	5.26
2010~2019	0.00	6.43	5.14
2020~2029	0.00	4.80	3.84
2030~2074	0.00	4.00	3.20

◆ 기타 가정 일반

(단위 : %)

구 분		비 율
조기퇴직연금선택률	남자	0.33
	여자	0.33
기금부문율	공공부문율	0.00
	증식부문율	80.00
	복지부문율	20.00
일반기여금대비 연금부담금률		108.60
일반기여금대비 소급기여금률		1.80
일반기여금대비 합산반납금률		4.30
유족연금특별부가금율(퇴직연금일시금 대비)		3.60

◆ 행정관리비지출률(일반기여금대비)

연 도	행정관리비지출률
2006	1.20%
2007	1.31%
2008~2074	1.50%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2-6〉 계속

◆ 소득심사율

(단위 : %)

연 령	남 자	여 자	연 령	남 자	여 자
18~38	0.0	0.0	62	1.6	0.1
39	10.1	0.0	63	1.5	0.1
40	1.1	0.0	64	1.3	0.0
41	3.4	0.0	65	1.2	0.1
42	6.5	0.5	66	1.2	0.2
43	7.9	0.7	67	1.0	0.1
44	8.8	0.8	68	0.9	0.1
45	10.2	1.1	69	0.8	0.1
46	9.9	1.2	70	0.7	0.1
47	8.9	0.8	71	0.7	0.2
48	8.5	0.6	72	0.7	0.0
49	9.4	0.5	73	0.6	0.0
50	8.4	0.8	74	0.5	0.0
51	8.2	0.8	75	0.5	0.5
52	7.1	0.7	76	0.5	0.8
53	6.6	0.8	77	0.5	0.3
54	6.8	0.8	78	0.4	0.0
55	6.8	0.4	79	0.6	0.0
56	5.8	0.6	80	0.6	0.0
57	3.0	0.5	81	0.3	0.0
58	2.5	0.3	82	0.0	0.0
59	3.0	0.2	83	0.0	0.0
60	2.9	0.2	84	0.1	0.0
61	2.4	0.2			

* 그 외 가정은 제한된 지면의 이유로 생략

3.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재정분석

가. 인원전망 결과

- 재직자수는 2006년 1,009,723명에서 203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2030년 1,138,786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2030년 규모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퇴직자수는 2006년 24,243명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06년 퇴직자수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인 52,442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음 이 구간에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재직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재직자의 연령 및 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임.
- 이후, 노령화의 역전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는 퇴직자수가 45,077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노령화가 다시 전개되면서 경미한 증가 및 안정화 국면을 맞이하여 2070년에는 47,491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금수급자수는 추계 전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데 2050년대 초반까지는 급속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접어들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6년 227,552명에서 시작하여 2070년에는 2006년 연금수급자수의 4.5배를 상회하는 1,031,233명에 이르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3-1〉 인원전망 결과

연도	재직자	퇴직자	신 규 임용자	퇴직연금 수급자(A)	유족연금 수급자(B)	연금수급자 (A+B)	퇴직률	부양률
2006	1,009,723	24,243	47,626	205,759	21,793	227,552	2.5%	22.5%
2007	1,018,426	25,478	34,181	214,345	24,938	239,283	2.5%	23.5%
2008	1,026,933	27,249	35,756	223,868	28,324	252,192	2.7%	24.6%
2009	1,035,206	30,640	38,913	235,519	31,978	267,497	3.0%	25.8%
2010	1,043,452	31,093	39,339	246,888	35,927	282,815	3.0%	27.1%
2015	1,073,279	42,672	48,285	318,920	59,690	378,610	4.0%	35.3%
2020	1,098,008	46,455	51,403	401,054	89,349	490,403	4.2%	44.7%
2025	1,121,497	50,707	55,107	478,886	121,128	600,014	4.5%	53.5%
2030	1,138,786	52,442	55,201	557,947	150,565	708,512	4.6%	62.2%
2035	1,138,786	45,077	45,077	616,719	175,824	792,543	4.0%	69.6%
2040	1,138,786	46,154	46,154	665,669	196,566	862,235	4.1%	75.7%
2045	1,138,786	46,709	46,709	702,099	212,058	914,157	4.1%	80.3%
2050	1,138,786	49,173	49,173	733,361	218,019	951,380	4.3%	83.5%
2055	1,138,786	51,138	51,138	769,999	212,305	982,304	4.5%	86.3%
2060	1,138,786	51,452	51,452	806,481	197,197	1,003,678	4.5%	88.1%
2065	1,138,786	49,601	49,601	839,937	181,129	1,021,066	4.4%	89.7%
2070	1,138,786	47,491	47,491	856,853	171,485	1,028,338	4.2%	90.3%
2074	1,138,786	47,414	47,414	861,712	169,521	1,031,233	4.2%	90.6%

- 전반기의 급속한 증가추세는 퇴직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등으로 유입되는 수급자가 많은 반면 기대여명 연장, 상대적으로 젊은 수급자 구조 등으로 사망하는 수급자가 아직 적기 때문이나, 후반기에 접어들어 점차적으로 수급자 구조가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그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음.
- 재직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부양률의 경우, <표 3-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 22.5%에서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45년 80.3%%에 달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상승세가 완화된 2050년과 2060년 각 83.5%와 88.1% 그리고 2070년 초기연도 부양률의 네 배에 가까운 90% 가량에 이르고 있음.

- 유의할 점은 2060년 무렵에 접어들어서야 마침내 부양률이 안정화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여서, 이 시점에서야 수급자의 유입인원 못지않게 유출인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망하는 연금수급자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중기재정전망 결과

□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은 중기와 장기로 구분

- 중기재정전망에서는 10년을 추계구간으로 액수추계를 진행하며 장기재정전망에서는 70년을 구간으로 지표추계를 진행함.
- 중기재정전망의 액수추계결과를 명목가격(nominal price)과 불변가격(constant price)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함.
- 이는 용도에 따라 명목 또는 불변 가격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장래의 수지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변가격으로 표시한 추계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불변치 전환수단은 CPI).
- 지면 제약상 명목추계결과만을 언급하기로 하고 불변치 추계결과는 <표 3-2>를 참조하기 바람.⁷⁾

7) 이 보고서의 액수추계의 수입과 지출은 공무원연금의 연금회계수지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우선 공무원연금의 연금회계수입이 공무원의 기여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담금(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연금기금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보고서의 (연금)수입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의 연금회계지출이 연금급여, 퇴직수당급여, 적립금, 사무(관리)비, 수지차에 따른 결산잉여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보고서의 (연금)지출에는 연금급여(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와 관리비로 한정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2002: 김재경·김정록)』 pp. 188 참조

□ 중기재정전망 결과

- 명목연금지출액을 살펴보면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 5조 1,378억원 및 2007년 5조 6,174억원으로 증가를 거듭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6조 2,471억원에 달하여 추계 초기연도인 2006년에 비해 3.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명목연금수입액은 2006년 4조 3,782억원, 2007년 4조 5,941억원 및 2008년 4조 9,65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어 2015년 수입액은 8조 1,322억원에 머물러서 추계 초기연도인 2006년에 비해 1.9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2006년 수입액은 동년 지출액의 85.2%에 이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이 하락하여 2007년 81.8% 및 2008년 80.0%로 떨어지고 있으며 2015년에 접어들어서는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전액은 2006년 7,596억원에서 2007년 1조 23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그 이후 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어 2008년에 1조 3,520억원 그리고 2010년 2조 3,689억원에 달하고 있음.
- 중기재정추계의 최종연도인 2015년에는 8조 61,149억원을 나타내어 초기연도인 2006년에 비해 10.7배 그리고 2010년에 비해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연금기금의 경우 2006년 4조 1,185억원에서 단조 증가하여 2015년 7조 6,109억원으로 예측되었음.
- 성장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규모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연금지출 대비 연금기금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기금적립률은 2006년 80.2%에서 2015년 46.9%로 하락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2〉 중기재정전망 결과

◆ 명목치

(단위 : 억원)

연 도	지 출 (A)	수 입 (B)*	보전액(A-B)	적립기금
2006	51,378	43,782	7,596	41,185
2007	56,174	45,941	10,233	44,251
2008	62,856	49,656	13,200	47,499
2009	73,478	53,599	19,879	50,940
2010	81,450	57,761	23,689	54,588
2011	90,668	61,815	28,853	58,440
2012	106,628	66,182	40,446	62,507
2013	119,300	70,706	48,594	66,800
2014	135,192	75,855	59,337	71,330
2015	162,471	81,322	81,149	76,109

* 상기 수입액에는 기금수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불변치

(단위 : 억원)

연 도	지 출 (A)	수 입 (B)	정부추가부담(A-B)	적립기금
2006	51,378	43,782	7,596	41,185
2007	54,538	44,603	9,935	42,962
2008	59,248	46,806	12,442	44,772
2009	67,243	49,051	18,192	46,618
2010	72,367	51,320	21,047	48,500
2011	78,211	53,322	24,889	50,411
2012	89,299	55,426	33,873	52,349
2013	97,002	57,490	39,511	54,315
2014	106,722	59,881	46,841	56,309
2015	124,520	62,327	62,194	58,332

다. 장기재정전망 결과

□ 지표 위주의 장기재정전망

- 장기재정동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운영자 및 정책 입안가에게 연금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추계결과를 지표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70년을 추계구간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은 지표추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전망지표로 부양률,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추가부담률(보전율), 기금적립률 등을 채택하고 있음.
- 재직공무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부양률은 연금재정의 선행 지표로서 재정부담의 간접적인 척도 역할을 담당하며, 연금산정 보수총액 대비 연금재정수입액, 연금재정지출액 및 보전액으로 각각 정의되는 수입률, 지출률 및 보전율을 통해서 재정수지의 균형 여부 및 균형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족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재정추세(financial trend)를 진단할 수 있음.
- 연금재정지출 대비 연금재정수입의 비율로 정의되는 수지율은 연금재정수입의 규모를 지출에 대비하여 가늠하는 지표로서 추가부담률과 유사한 개념이며, 연금재정지출액 대비 연금기금의 비율로 정의되는 기금적립률은 연금기금만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최대화 연도 및 고갈시점을 알려줌.

〈표 3-3〉 장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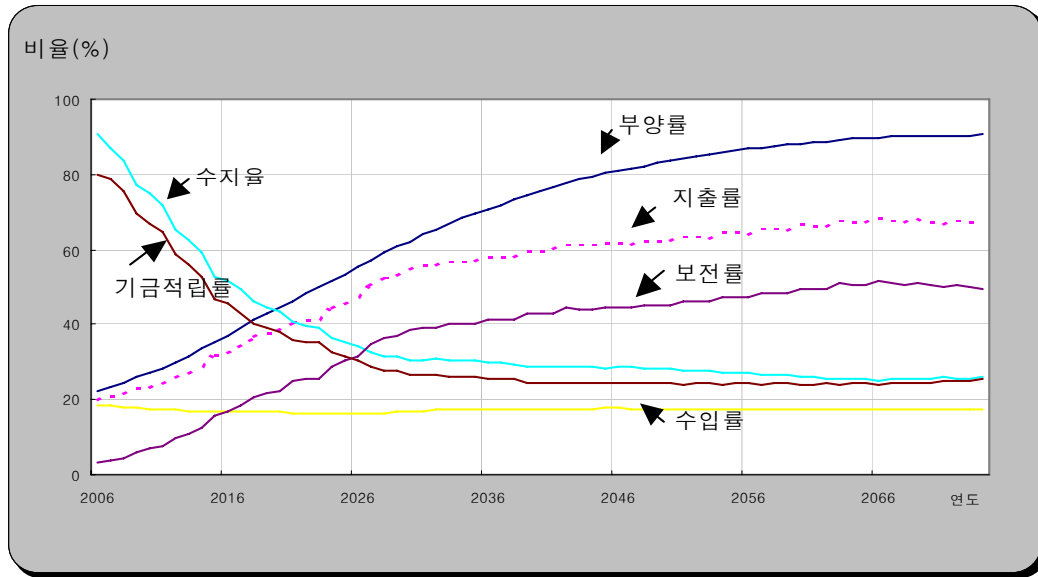
연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수지율	보전율 (GDP 대비 보전율)		기금적립률
2006	22.54	20.31	18.39	90.57	3.00	(0.09)	80.16
2007	23.50	20.99	18.23	86.84	3.82	(0.11)	78.77
2008	24.56	21.51	18.01	83.70	4.52	(0.13)	75.57
2009	25.84	23.10	17.82	77.14	6.25	(0.18)	69.33
2010	27.10	23.58	17.65	74.86	6.86	(0.20)	67.02
2015	35.28	32.00	16.88	52.75	15.98	(0.48)	46.85
2020	44.66	38.63	16.73	43.31	22.53	(0.67)	38.05
2025	53.50	45.89	16.14	35.17	30.33	(0.91)	31.56
2030	62.22	55.15	16.86	30.57	38.75	(1.18)	26.66
2035	69.60	56.88	17.33	30.47	39.97	(1.28)	26.01
2040	75.72	60.05	17.39	28.96	43.04	(1.48)	24.67
2045	80.27	62.04	17.68	28.50	44.71	(1.64)	24.19
2050	83.54	62.28	17.53	28.15	45.07	(1.77)	24.51
2055	86.26	64.44	17.41	27.01	47.33	(1.98)	24.21
2060	88.14	66.65	17.23	25.85	49.69	(2.21)	24.03
2065	89.66	67.29	17.18	25.53	50.36	(2.38)	24.39
2070	90.30	67.61	17.34	25.65	50.50	(2.55)	24.70
2074	90.56	66.59	17.31	25.99	49.50	(2.65)	25.33

* 상기 수입률에는 연금기금수입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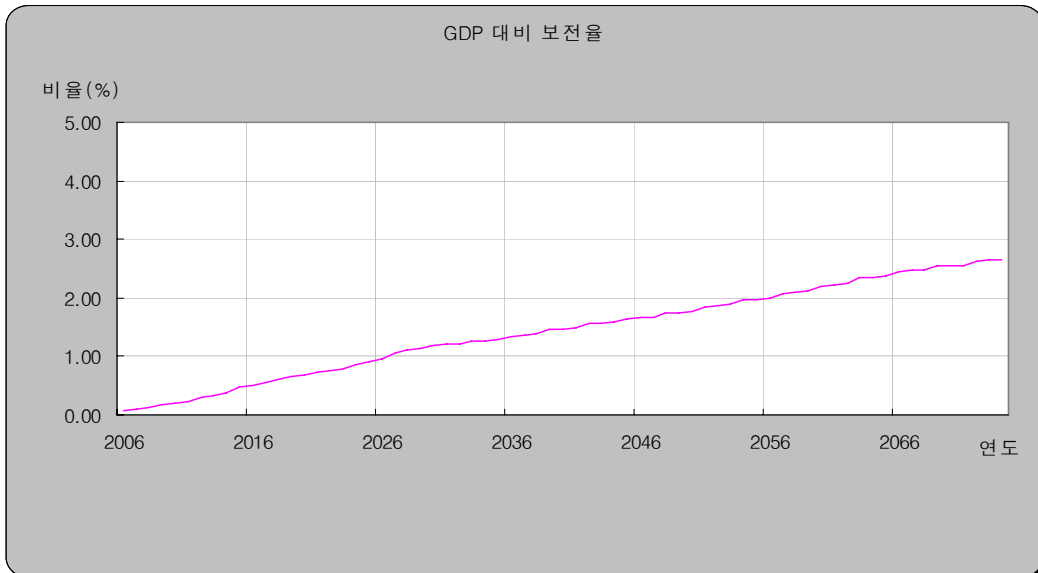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그림 3-1] 장기재정전망 결과

◆ 주요 지표



◆ GDP 대비 보전율



- 여기에서 보전을 추계결과야말로 장기재정추계의 최종 결과를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성 역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보전은 정부의 추가부담액을 시간에 걸쳐 평준화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진작시키거나 적립지향적인 재정방식으로 이행하는 정책실험(policy simulation)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에서는 부양률, 보전을 및 기금적립률 추계결과를 위주로 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부양률추계 결과

- 먼저 부양률의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추계 초기연도인 2006년 22.54%에 불과하지만 204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45년 80.27%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완화된 면모를 나타내어서 2074년의 경우 90.56%에 달하여서 초기연도 22.54%에 비해 4.0배 상승하고 있음.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세는, 앞서 인원전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자 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퇴직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수급자가 더 많이 유입되고 더 오래 사는 반면에 연금수급자 구조가 아직 유년상태라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후반기의 정체세는 연금수급자구조 역시 노령화되면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지기 때문임.⁸⁾

8)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의 노령화가 부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김재경 · 김정록(2002 : pp. 216~9) 참조

□ 보전율추계 결과

- 보전율은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점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표로서 공무원연금의 장·단기 재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예컨대 추가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방식이 균등부담원칙의 각 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 보전율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표 3-3>과 <그림 3-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추계 초기연도인 2006년 3.00%에서 시작하여 2007년 3.82% 및 2008년 4.52%로 경미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이후 상승패턴이 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어 2010년 6.86%, 2020년 22.53% 및 2030년 38.75%에 이르고 있음.
- 2030년대에 접어들어 상승추세가 둔화되어 2040년에는 43.0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4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안정화 국면으로 진입하여 2050년 45.07%, 2060년 49.69% 및 2070년 50.50%로서 30년 동안 7.46 pt 상승하고 있을 뿐임.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추세는 기본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재직자 분포구조의 고령화 및 장기재직화 현상에 따른 퇴직자의 양산으로 연금수급자 유입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연금수급자들이 더 오래 생존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후반기의 안정화 추세는 연금수급자 구조 역시 마침내 노령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망하는 연금수급자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 기간에 접어들어서는 연금수급자의 유입인원에 버금가는 유출인원이 발생하여 일종의 균형(equilibrium)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임.⁹⁾

9) 부양률 상승의 진정 추세는 2040년 중반 이후인 반면 추가부담률 상승의 둔화 추세는 2040년대 초반에 이미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보전율 추세가 부양률 추세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원수가 연금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실제, 거의 모든 공적연금제도에 있어, 출산율 및 사망률의 하락으로 초래되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불가피하게 부양률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학적 변화야말로 거의 모든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논리(인구구조 노령화 → 부양률 상승 → 연금재정 악화)를 직역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본 재정추계에 의하면 그와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임.

□ 기금적립률추계 결과

- 기금적립률은 추계 전 기간에 걸쳐 하락을 거듭하여서, 추계 초기연도인 2006년 80.16%에서 하락하여 2010년 67.02%, 2020년 38.05% 및 2030년 26.66%에 이르고 있음.
- 204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2070년의 경우 24.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 기간에 걸쳐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 초기연도에 연금지출의 3/4 정도이던 기금이 2070년에 들어서는 연금지출의 1/4을 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통해 연금기금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 기금 자체의 성장보다는 재정지출의 변동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임.

라. 2005년 공단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 동일한 재정추계모형 및 상이한 인구학적 · 경제 기초율

- 인구학적 기초율의 경우, 2005년 공단 재정전망에서는 2004년도 실적치 그러나 KDI 재정전망에서는 2005년도 실적치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선택률과 유족연금선택률에서는 KDI의 적용기준이 다소 높으며 공제일시금선택률에서는 다소 낮음.
- 경제기초율의 경우, 2005년 공단 재정전망에서는 2001년 KDI 경제전망치에 기반을 둔 반면 KDI 재정전망에서는 2006년 KDI 전망치(실질임금상승률 · 실질이자율)와 3.0% 물가상승률을 적용함
 - 2006년 KDI 경제전망이 이전에 비해 미래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명목임금상승률의 경우, 2005년 공단 재정추계에 비해서 KDI 적용치가 장기적으로 2% pt 정도 높음(2050년 이후, 3.7% vs 5.8).
- 재직자 성비의 경우, 2005년 공단 재정전망에서는 2004년 재직자 성비가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KDI 재정전망에서는 신규임용자 성비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가정함.

□ 보전율 경미 상승 및 보전액 상당 규모 증가(<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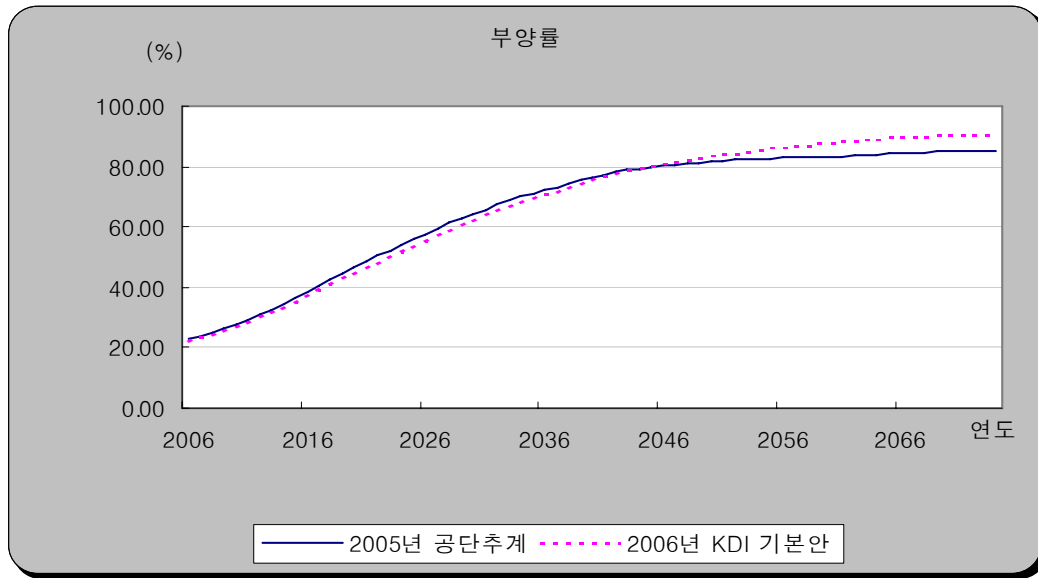
- 부양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KDI 전망이 다소 낮으나, 장기적으로 5% pt 정도 높아 2070년 90.30으로 전망함.
 - 단기적인 하락 이유로, 높은 연금선택률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 증가로 인한 퇴직자 감소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이유로 연금선택률 상승, 긴 여성 공무원 기대여명 등을 꼽을 수 있음.

- 보전율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KDI 전망이 낮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어서 2070년 5% pt 정도 낮은 49.50%로 전망함.
 - 부양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수 대비 정부 보전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보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직자보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임.
- 한편, 보전액의 경우, 낙관적인 경제전망, 연금보수의 범위 확장 등으로 2006년~2008년을 제외한 추계 전 기간에 걸쳐 보전액이 증가하여 2070년 공단에 비해 2.6배 증가하여 94조 2,034억원(2006년 불변가치)으로 전망함.
- 전체적으로 볼 때, KDI가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을 경미하게 더 우호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낙관적인 경제기초율 때문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표 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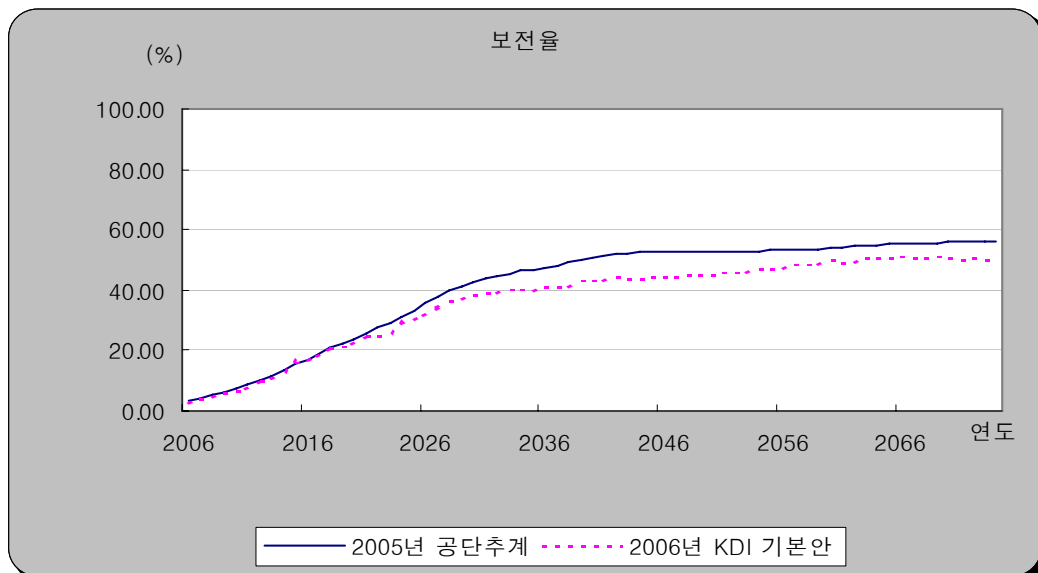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그림 3-2]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

◆ 부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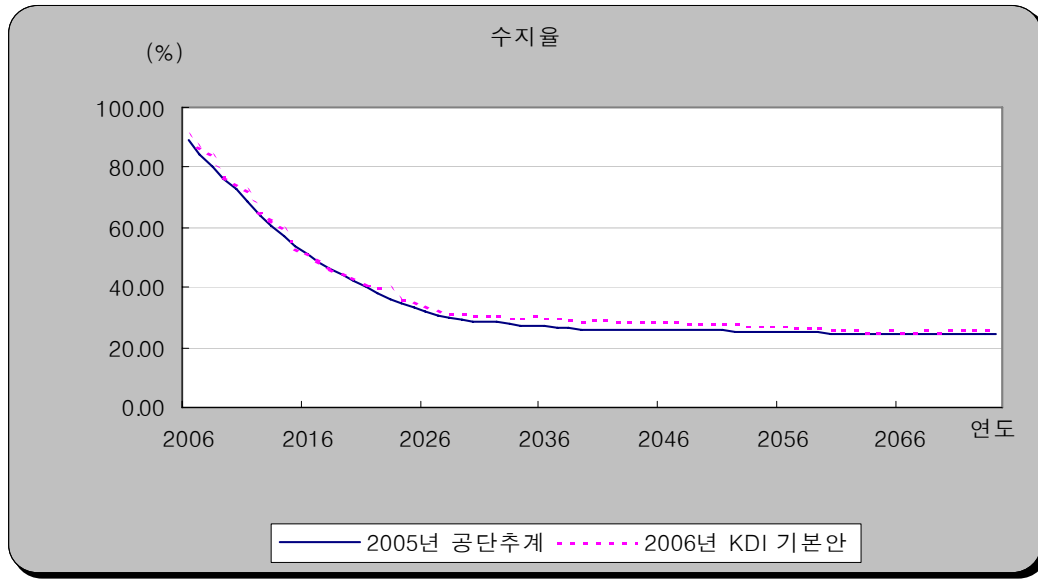


◆ 보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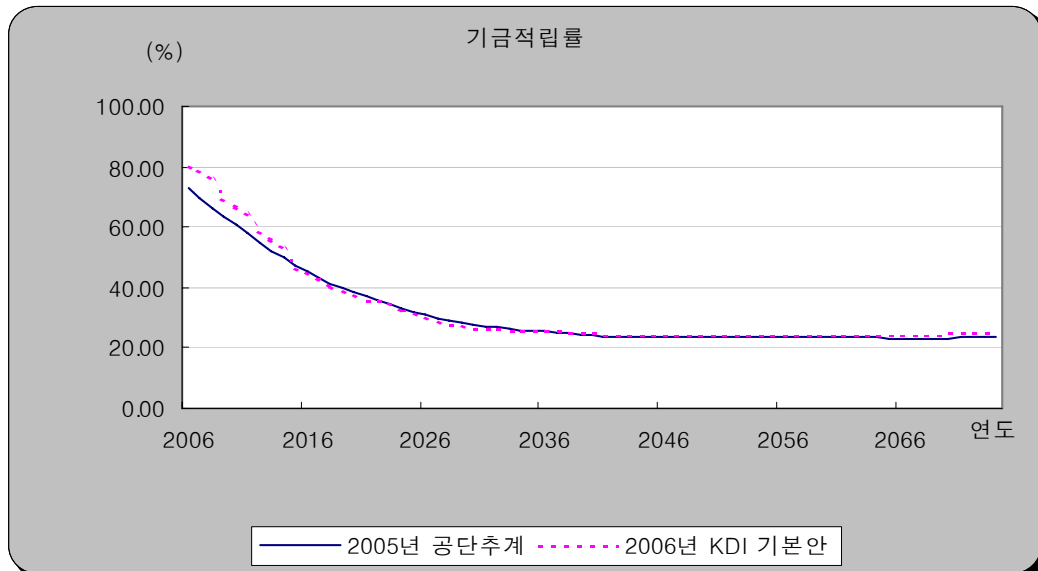


[그림 3-2] 계속

◆ 수지율



◆ 기금적립률



마. 평가

□ 21세기를 맞이한 세계의 많은 공적연금제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역시 지대한 규모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장기재정전망결과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까지 연금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접어들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규모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예컨대, 2070년의 경우 재정수입이 재정지출의 25%에 불과하며, 보전규모가 연금산정 기준보수총액의 1/2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률을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연금재원에 대한 무한책임(open-ended liability)을 지는 균형부담형(balance of cost scheme)으로 이행하는 경로를 밟게 될 것임.

□ 이는 결국 피고용자인 공무원에 비해 고용자인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정부에 비해 미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시켜 국민부담 관련 세대간 형평도를 왜곡시킬 것임.

- 또한, 사회전반의 고령화현상으로 복지지출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미래정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의 제반 형평성문제 및 미래 정부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연금급여를 감소하거나 보험료율을 상승시키는 방안

- 일반 세수 지원을 증대하고 체계화하는 방안
- 보다 적립지향적인 재정운영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
-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힌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도를 신·구 연금체제로 분리하고 신공무원연금 체계를 다층화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적 연금제도의 거의 대부분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도 외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의 노령화라는 경제적·인구학적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제도 내적으로 재정운영방식과 연금급여결정방식이 상호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는 어찌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예컨대,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던 20세기 초·중엽의 다수의 국가들은 재정운영 방식으로 부과방식(pay-as-you-go financing method) 그리고 연금결정방식으로 확정급여구조(defined benefit structure)를 취하여 급여를 약속하는 경우가 잦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 및 인구 노령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수준으로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속할 경우 재정 곤란 및 제도 불안정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1〉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액수)

□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 도	수 입		지 출		보 전 액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6	42,666	43,782	50,732	51,378	8,066	7,596
2007	44,256	44,603	55,218	54,538	10,962	9,935
2008	45,694	46,806	59,956	59,248	14,262	12,442
2009	47,071	49,051	65,038	67,243	17,967	18,192
2010	48,430	51,320	69,856	72,367	21,426	21,047
2011	49,479	53,322	75,438	78,211	25,959	24,889
2012	50,525	55,426	83,070	89,299	32,545	33,873
2013	51,518	57,490	89,371	97,002	37,853	39,511
2014	52,746	59,881	96,932	106,722	44,186	46,841
2015	54,010	62,327	106,282	124,520	52,272	62,194
2016	55,436	65,055	114,547	132,671	59,111	67,617
2017	56,802	67,721	124,086	144,711	67,284	76,990
2018	58,135	70,360	133,155	160,502	75,020	90,141
2019	59,537	73,161	142,134	171,747	82,597	98,585
2020	60,572	75,519	150,465	181,175	89,893	105,656
2021	60,892	77,484	158,954	197,710	98,062	120,226
2022	61,154	79,410	168,133	206,643	106,979	127,233
2023	61,405	81,268	176,290	215,518	114,885	134,250
2024	62,041	83,705	186,648	239,161	124,607	155,456
2025	62,878	86,426	197,686	254,871	134,808	168,445
2026	63,769	89,236	208,837	270,255	145,068	181,018
2027	65,117	92,766	220,943	296,949	155,826	204,183
2028	66,564	96,510	232,912	317,008	166,348	220,497
2029	67,914	100,095	241,855	328,443	173,941	228,347
2030	69,432	103,980	249,529	349,673	180,097	245,693
2031	70,634	107,644	256,733	362,458	186,099	254,814
2032	72,143	112,052	263,854	372,870	191,711	260,818
2033	73,162	115,838	271,933	393,567	198,771	277,729
2034	73,963	119,312	278,531	404,452	204,568	285,140
2035	75,025	123,344	284,293	414,892	209,268	291,548
2036	75,891	126,733	290,624	436,235	214,733	309,501
2037	76,746	130,393	298,157	450,732	221,411	320,338
2038	77,658	134,425	305,731	465,639	228,073	331,214
2039	79,142	138,835	314,265	491,896	235,123	353,061
2040	80,536	143,570	321,585	506,905	241,049	363,335

* 공단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그리고 KDI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임에 유의

KDI 기초율가정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와 재정분석

〈부표 1〉 계속

□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 도	수 입		지 출		보 전 액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41	81,924	148,483	327,846	522,934	245,922	374,451
2042	83,261	153,380	333,780	548,609	250,519	395,228
2043	84,519	158,134	339,150	562,071	254,631	403,937
2044	85,713	162,867	344,924	575,895	259,211	413,028
2045	86,884	167,691	349,677	600,238	262,793	432,547
2046	87,964	172,165	354,174	614,557	266,210	442,392
2047	89,020	176,662	358,240	629,519	269,220	452,857
2048	90,003	181,248	362,709	656,287	272,706	475,039
2049	90,943	185,781	367,215	672,544	276,272	486,763
2050	91,874	190,604	371,655	689,651	279,781	499,047
2051	92,733	195,405	376,100	721,560	283,367	526,156
2052	93,611	200,380	380,532	739,931	286,921	539,551
2053	94,494	205,469	384,908	759,046	290,414	553,578
2054	95,364	210,671	389,390	794,042	294,026	583,371
2055	96,214	215,986	393,572	813,435	297,358	597,449
2056	96,987	221,324	397,969	833,516	300,982	612,192
2057	97,732	226,731	402,360	871,160	304,628	644,429
2058	98,428	232,120	406,797	891,993	308,369	659,874
2059	99,042	237,492	411,238	913,677	312,196	676,185
2060	99,598	242,956	415,972	954,896	316,374	711,940
2061	100,158	248,593	421,057	978,267	320,899	729,674
2062	100,823	254,600	426,204	1,002,100	325,381	747,500
2063	101,606	261,081	431,568	1,047,046	329,962	785,966
2064	102,513	268,058	437,113	1,071,598	334,600	803,540
2065	103,673	275,762	442,857	1,096,212	339,184	820,450
2066	104,887	283,866	448,653	1,142,939	343,766	859,073
2067	106,136	292,285	454,097	1,166,437	347,961	874,153
2068	107,450	301,019	459,180	1,189,868	351,730	888,849
2069	108,741	310,003	464,186	1,237,640	355,445	927,637
2070	109,976	319,133	470,399	1,261,168	360,423	942,034
2071	111,167	328,348	474,419	1,285,195	363,252	956,847
2072	112,357	337,632	479,561	1,336,664	367,204	999,032
2073	113,449	347,025	484,972	1,362,847	371,523	1,015,822
2074	114,536	356,704	490,438	1,389,634	375,902	1,032,931

* 공단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그리고 KDI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임에 유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1〉 계속

□ 명목가격

(단위 : 억원)

연 도	수 입		지 출		보 전 액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6	43,862	43,782	52,153	51,378	8,292	7,596
2007	46,769	45,941	58,354	56,174	11,584	10,233
2008	49,641	49,656	65,134	62,856	15,493	13,200
2009	52,567	53,599	72,634	73,478	20,067	19,879
2010	55,600	57,761	80,198	81,450	24,598	23,689
2011	58,395	61,815	89,031	90,668	30,636	28,853
2012	61,299	66,182	100,781	106,628	39,483	40,446
2013	64,252	70,706	111,462	119,300	47,209	48,594
2014	67,625	75,855	124,276	135,192	56,650	59,337
2015	71,185	81,322	140,077	162,471	68,892	81,149
2016	75,109	87,428	155,198	178,299	80,089	90,871
2017	79,115	93,742	172,828	200,314	93,714	106,572
2018	83,237	100,317	190,653	228,837	107,415	128,520
2019	87,633	107,440	209,206	252,216	121,573	144,776
2020	91,652	114,229	227,669	274,043	136,017	159,814
2021	94,624	120,717	247,008	308,025	152,384	187,308
2022	97,596	127,429	268,324	331,601	170,729	204,172
2023	100,642	134,324	288,936	356,219	188,294	221,895
2024	104,430	142,502	314,171	407,156	209,742	264,654
2025	108,696	151,548	341,734	446,917	233,037	295,369
2026	113,212	161,171	370,758	488,110	257,546	326,939
2027	118,726	172,573	402,840	552,413	284,114	379,840
2028	124,642	184,924	436,127	607,420	311,485	422,496
2029	130,602	197,547	465,098	648,210	334,496	450,663
2030	137,126	211,370	492,811	710,814	355,685	499,444
2031	143,195	225,383	520,474	758,907	377,279	533,524
2032	150,131	241,650	549,084	804,128	398,953	562,478
2033	156,287	257,310	580,890	874,226	424,603	616,916
2034	162,184	272,978	610,750	925,358	448,566	652,380
2035	168,872	290,668	639,903	977,721	471,031	687,053
2036	175,347	307,615	671,483	1,058,856	496,136	751,241
2037	182,020	325,994	707,142	1,126,865	525,121	800,871
2038	189,064	346,155	744,320	1,199,059	555,257	852,904
2039	197,782	368,236	785,370	1,304,673	587,588	936,437
2040	206,599	392,219	824,958	1,384,816	618,360	992,597

〈부표 1〉 계속

□ 명목가액

(단위 : 억원)

연 도	수 입		지 출		보 전 액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41	215,729	417,811	863,307	1,471,465	647,578	1,053,654
2042	225,060	444,539	902,225	1,590,021	677,165	1,145,482
2043	234,513	472,066	941,035	1,677,909	706,522	1,205,843
2044	244,128	500,780	982,413	1,770,752	738,285	1,269,972
2045	254,021	531,082	1,022,339	1,900,969	768,318	1,369,887
2046	263,992	561,608	1,062,927	2,004,707	798,936	1,443,099
2047	274,242	593,567	1,103,621	2,115,120	829,379	1,521,553
2048	284,616	627,244	1,146,996	2,271,209	862,381	1,643,965
2049	295,212	662,221	1,192,015	2,397,295	896,804	1,735,074
2050	306,137	699,792	1,238,398	2,532,019	932,261	1,832,227
2051	317,188	738,942	1,286,421	2,728,650	969,234	1,989,708
2052	328,674	780,490	1,336,070	2,882,064	1,007,396	2,101,574
2053	340,566	824,319	1,387,248	3,045,214	1,046,682	2,220,895
2054	352,809	870,544	1,440,590	3,281,181	1,087,781	2,410,637
2055	365,385	919,282	1,494,643	3,462,158	1,129,258	2,542,876
2056	378,082	970,262	1,551,387	3,654,055	1,173,305	2,683,793
2057	391,080	1,023,785	1,610,067	3,933,655	1,218,987	2,909,870
2058	404,302	1,079,562	1,670,962	4,148,559	1,266,660	3,068,997
2059	417,605	1,137,684	1,733,965	4,376,888	1,316,360	3,239,204
2060	431,076	1,198,776	1,800,402	4,711,577	1,369,326	3,512,801
2061	444,989	1,263,388	1,870,703	4,971,698	1,425,714	3,708,310
2062	459,815	1,332,734	1,943,747	5,245,606	1,483,932	3,912,872
2063	475,664	1,407,656	2,020,367	5,645,309	1,544,702	4,237,653
2064	492,629	1,488,636	2,100,548	5,951,014	1,607,920	4,462,378
2065	511,401	1,577,360	2,184,546	6,270,336	1,673,144	4,692,976
2066	531,102	1,672,424	2,271,784	6,733,742	1,740,682	5,061,318
2067	551,666	1,773,687	2,360,279	7,078,352	1,808,613	5,304,665
2068	573,299	1,881,487	2,449,945	7,437,151	1,876,646	5,555,664
2069	595,562	1,995,773	2,542,288	7,967,818	1,946,726	5,972,045
2070	618,287	2,116,189	2,644,583	8,362,867	2,026,297	6,246,678
2071	641,543	2,242,612	2,737,861	8,777,860	2,096,318	6,535,248
2072	665,591	2,375,198	2,840,874	9,403,273	2,175,283	7,028,075
2073	689,873	2,514,516	2,949,060	9,875,090	2,259,187	7,360,574
2074	714,938	2,662,189	3,061,326	10,371,268	2,346,388	7,709,079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2〉 공단 2005년 장기재정전망과의 비교(주요 지표)

연 도	부 양 료		보 전 율		수 지 율		기금적립률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5년 공단추계	2006년 KDI 기본안
2006	22.73	22.54	3.23	3.00	88.81	90.57	72.97	80.16
2007	23.77	23.50	4.20	3.82	84.48	86.84	69.55	78.77
2008	24.99	24.56	5.25	4.52	80.23	83.70	66.32	75.57
2009	26.35	25.84	6.38	6.25	76.13	77.14	63.23	69.33
2010	27.69	27.10	7.34	6.86	72.86	74.86	60.80	67.02
2011	29.19	28.50	8.60	7.70	68.97	71.95	58.15	64.46
2012	30.93	30.11	10.45	9.97	63.99	65.48	54.54	58.62
2013	32.65	31.70	11.80	11.09	60.69	62.51	52.36	55.99
2014	34.52	33.44	13.39	12.56	57.31	59.16	49.86	52.76
2015	36.52	35.28	15.44	15.98	53.55	52.75	46.96	46.85
2016	38.63	37.19	17.05	16.70	51.01	51.65	45.01	45.51
2017	40.66	39.08	18.98	18.31	48.27	49.28	42.91	43.17
2018	42.86	41.07	20.73	20.66	46.06	46.15	41.30	40.24
2019	44.91	42.91	22.35	21.78	44.21	44.83	39.96	38.86
2020	46.76	44.66	23.82	22.53	41.95	43.31	38.41	38.05
2021	48.65	46.44	25.61	24.75	39.94	40.71	37.03	35.99
2022	50.54	48.26	27.54	25.29	37.94	39.91	35.66	35.53
2023	52.15	49.87	29.16	25.79	36.36	39.15	34.64	35.13
2024	54.01	51.72	31.19	28.87	34.71	36.32	33.33	32.64
2025	55.79	53.50	33.33	30.33	33.22	35.17	32.05	31.56
2026	57.63	55.33	35.50	31.65	31.90	34.23	30.91	30.67
2027	59.52	57.22	37.79	34.74	30.78	32.36	29.76	28.75
2028	61.41	59.10	40.03	36.56	29.85	31.51	28.75	27.73
2029	62.92	60.73	41.53	36.94	29.32	31.53	28.20	27.57
2030	64.29	62.22	42.58	38.75	28.85	30.57	27.64	26.66
2031	65.84	63.86	43.62	39.18	28.52	30.51	27.17	26.48
2032	67.33	65.43	44.47	39.05	28.33	30.85	26.75	26.51
2033	68.76	66.97	45.59	40.43	27.88	30.20	26.25	25.86
2034	70.02	68.41	46.36	40.31	27.51	30.25	25.93	25.91
2035	71.07	69.60	46.82	39.97	27.34	30.47	25.70	26.01
2036	72.10	70.74	47.43	41.16	27.05	29.76	25.43	25.47
2037	73.20	71.95	48.31	41.34	26.67	29.62	25.07	25.39
2038	74.26	73.18	49.17	41.51	26.32	29.55	24.74	25.31
2039	75.40	74.50	50.13	43.01	26.08	28.87	24.34	24.68
2040	76.42	75.72	50.87	43.04	25.93	28.96	24.07	24.67

참 고 문 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초연구』.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도별 『공무원연금 Annual Report』.
- 김재경 · 김정록. (200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 송인보 · 황정아. (2004).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2005). 『공무원연금제도 이원화방안 평가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문형표 외. (2002).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연금재정전망 및 적립재정방식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 김용하 외. (2004). 『공무원연금 기초율 추계 및 가입자전망』. 사회보험연구소.
- 한진희 · 최경수 · 임경묵 · 신석하. (2006).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06~2050』. 한국개발연구원.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KDI 개혁대안 정책효과 분석

2006. 10

1. 개혁대안별 정책효과 / 47

2. 개혁대안 정책효과 비교 / 67

3. 개혁대안 평가 / 76

표 차 례

<표 1> 개혁대안의 정부부담 종합비교	70
-----------------------------	----

그림 차례

[그림 1] 개혁대안 I 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49
[그림 2] 개혁대안 I 안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률(GDP 대비) 비교	52
[그림 3] 개혁대안 II 안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54
[그림 4] 개혁대안 II 안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률(GDP 대비) 비교	58
[그림 5] 개혁대안 III 안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60
[그림 6] 개혁대안 IV 안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64
[그림 7] 개혁대안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종합비교	70
[그림 8] 개혁대안의 민간 대비 생애소득증감률 종합비교	73

부표 차례

<부표 A-1-1> 개혁대안 I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79
<부표 A-1-2> 개혁대안 I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79
<부표 A-1-3> 개혁대안 I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80
<부표 A-1-4> 개혁대안 I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80
<부표 A-2-1> 개혁대안 II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81
<부표 A-2-2> 개혁대안 II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81
<부표 A-2-3> 개혁대안 II와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82
<부표 A-2-4> 개혁대안 II와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82
<부표 A-3-1> 개혁대안 III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83
<부표 A-3-2> 개혁대안 III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83
<부표 A-4-1> 개혁대안 IV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84
<부표 A-4-2> 개혁대안 IV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84
<부표 A-5> 개혁대안의 정부부담 종합비교	85
<부표 A-6> 공무원연금 수지전망(현행).....	85
<부표 A-7> 공무원연금 수지전망(I안).....	86
<부표 A-8> 공무원연금 수지전망(II안).....	86
<부표 A-9> 공무원연금 수지전망(III안).....	87
<부표 A-10> 공무원연금 수지전망(IV안).....	87
<부표 B-1> 개혁대안의 연금 감소율 종합비교	88
<부표 B-2> 개혁대안의 퇴직급여 증가율 종합비교	88
<부표 B-3> 개혁대안의 총급여 감소율 종합비교	89
<부표 B-4> 개혁대안의 민간대비 생애소득증감률 종합비교	89

KDI 개혁대안 정책효과 분석

1. 개혁대안별 정책효과

가. 정책분석 개요

- ☐ 재정효과 및 형평성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에 개선안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기반을 두어 개혁대안 정책효과를 종합·비교하고자 함.
- ☐ 재정효과는 현행제도와 개혁대안의 정부부담수준 비교 그리고 형평성효과는 현행제도와 대안의 공무원 항목별 편익수준 비교를 통해 파악될 것임.
- ☐ 한편, 재정분석의 정부부담이란 공무원 관련 제반비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보수급여, 연금보험료, 연금적자보전금, 퇴직급여 보험료 혹은 지출액, 그 외 저축계정부담금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표시방법과 지표로서 2006년 말 기준 불변가치, 현재가치 및 GDP 대비 정부총부담액의 비율인 정부총부담률을 적용함.
- ☐ 형평성분석을 위해 연금, 퇴직급여, 저축계정 등의 제 급여, 총급여(보수 제외),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생애소득증감률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요구된 제반 시뮬레이션은, 앞장의 형평성 실증분석과 별개로, 공무원연금 연구센터의 '형평성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음.

나. 개혁대안 I의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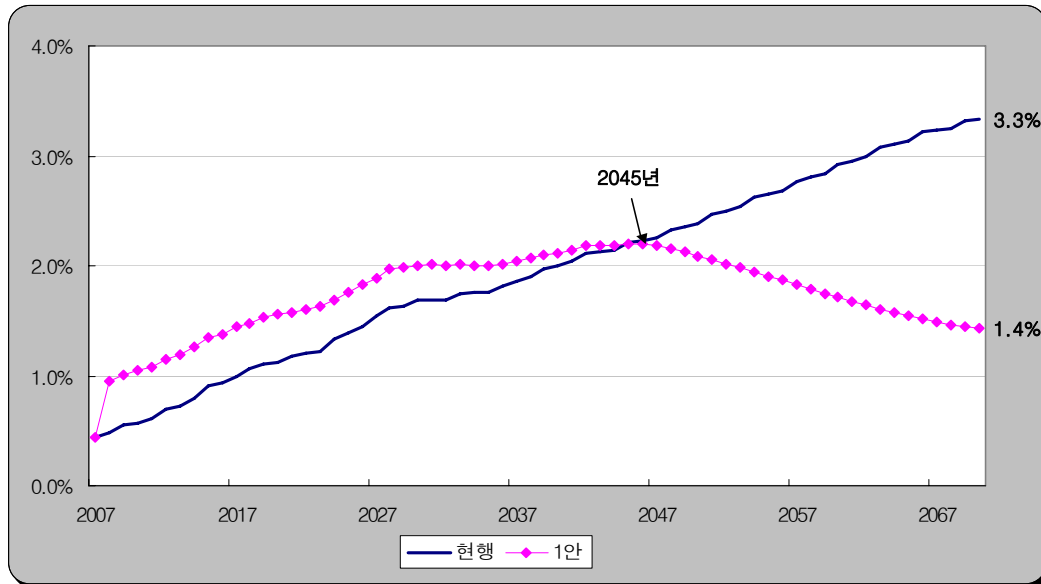
□ 대안 I 개요

- 다층구조화와 이원화(신규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및 재직공무원의 개정 공무원연금 가입) 위주
- 신규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1층), 법정퇴직금 수준 완전적립퇴직연금(2층) 및 저축계정(3층, 공무원 및 정부 2.5% 부담) 가입
- 재직자의 경우, 개정공무원연금(1층), 결합형 퇴직금제도(2층, 과거재직기간 퇴직수당 및 미래재직기간 법정퇴직금 수준 완전적립퇴직연금) 및 저축계정(3층, 공무원 및 정부 1.5% 부담) 가입

□ 대안 I 재정효과

- 퇴직연금 보험료, 저축계정 부담금, 신규임용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현 제도 유지시에 비해 정부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1층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 수준이 58%(2070년 기준) 정도 크게 감소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204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비해 0.5~0.1% pt 높은 수준, 2045년에 이르러 동일 수준 2.2% 그리고 그 이후 상당 폭 낮아져 2070년 현행 3.3%에 비해 1.9% pt 하락한 1.4%를 나타냄(<부표> 참조).

[그림 1] 개혁대안 I 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 불변치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개선안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2008년 4조 5천억원, 2020년 6조 7천억원 등 발생하며, 그 이후 감소하여 204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정부부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짐. 2040년대 이후부터 정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70년 단해 절약규모가 70조 4천억원에 달함(<부표> 참조).
- 하지만, 정부부담액 누적현재가치가 2067년에 이르러서야 현행제도에 비해 작아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에 따른 장기재정절약효과는 2060년대 말에나 가능하며, 2070년 기준 정부부담 누적현재가치가 현행제도 888조원에 비해 858조원으로 30조원 감소함(<부표> 참조).
 - 하지만, 그 이후 절약규모가 지대하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1) 2044년까지는 개선에 따른 정부부담액이 오히려 가중되어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3조원 및 누적치 109조 규모의 추가소요가 발생, 2) 그 이후 재정이 상당 폭 절감되기 시작하여 2067년에 이르러 장기재정절약이 가능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할 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 확대됨 3) 장기재정절약정도를, 현재가치로 볼 때, 2070년까지 30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로 볼 때, 2070년 단해 1.4%로 1.9% pt 하락함, 4) 결국, 개혁대안 I의 경제적 효율성은, 실질적인 재정 절약효과가 시뮬레이션 범위를 넘어 실현될 정도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초) 장기적인 측면에 놓여 있음.

- 물론, 대안에 따른 장기부담감소의 상당 부분이,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미래 국민연금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대안 I 형평성효과

- 재직공무원의 경우, 개정 공무원연금으로 연금액이 상당 폭 감소하는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 완전적립연금제도(미래재직기간)로 퇴직급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저축계정으로 인한 추가 급여가 발생.
- 대안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급여변화를 임용연도별 재직기간별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금액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대비 1960년 임용 20년(33년) 재직 공무원 1.7%(3.6%), 1980년 15.2%(21.9%), 2000년 30.4%(34.3%) 및 개혁전년도인 2007년 42.6%(40.9%) 감소
 - 반면, 퇴직급여의 경우, 임용시점이 뒤로 갈수록 증가의 폭이 확대되어, 현행 퇴직수당 대비 개혁전년도인 2007년 임용 20년 재직기간 공무원 144.4% 및 33년 재직기간 공무원 149.1% 증가
 - 연금급여,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의 합계인 총급여의 경우, 현행 총급여(연금+퇴직수당) 대비 1960년 임용 20년(33년) 재직공무원 1.7%(3.2%), 1980년 14.1%(20.4%), 2000년 19.3%(18.9%) 및 개혁전년도인 2007년 23.5%(20.7%) 감소하여 연금액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퇴직급여와 저축계정 급여가 연금액 감소를 보전하기 때문임.

- 한편, 민간과의 형평성 비교차원에서 민간 생애소득(보수+국민연금+퇴직금) 대비 2007년 임용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부표> 참조).
 - 20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9.2%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7% 많음.
 - 25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9.8%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7% 많음.
 - 30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8.2%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1% 많음.
 - 33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4%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3% 많음.
- 신규임용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연금 연금급여(1층) 및 법정퇴직금 상당 퇴직급여(2층)에 추가하여 저축계정급여(3층)로 구성되며, 결국, 민간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볼 때, 저축계정급여(과세대상보수 대비 공무원과 정부 각 2.5% 부담)가 공무원에게 추가로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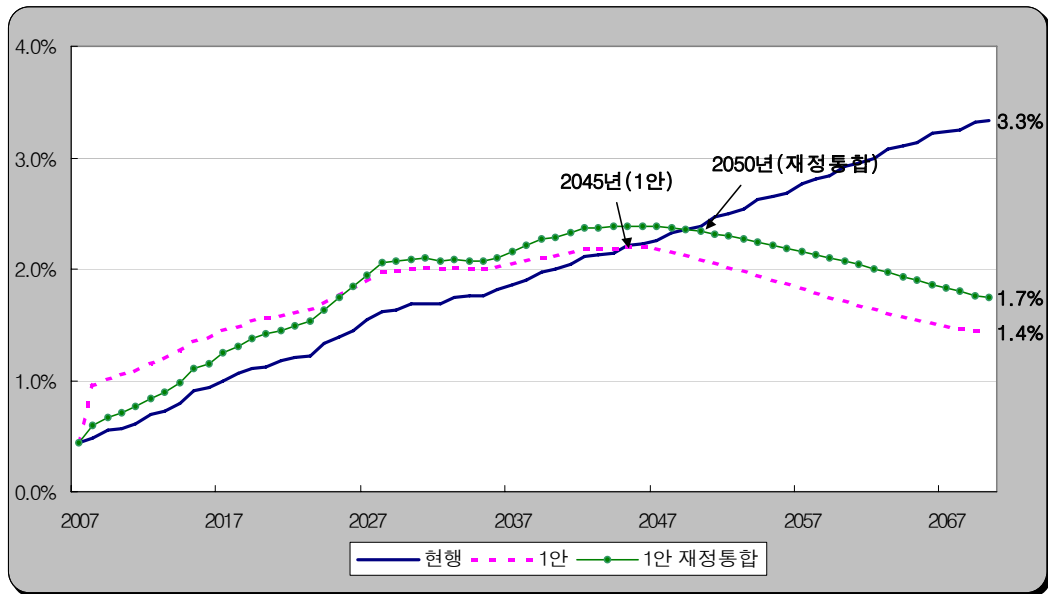
□ 대안 I 종합효과

- 재정적으로 볼 때, 2040년대 중반까지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3조원 및 누적치 109조 규모 추가부담 발생하나, 그 이후 재정부담 감소하여 20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장기정부부담이 현행제도에 비해 유사해짐.
- 2070년까지 누적절약액 규모는 30조원에 불과하지만 GDP 대비 정부총부담율이 2070년 단해 현행제도 3.3%에서 1.4%로 크게 하락하는 등 정부부담 감소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일로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
- 형평성적으로 볼 때, 2000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30~35% 감소함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연금급여+퇴직급여} 20% 감소하여, 현행제도 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2~9.8% 많던 것이 대안 적용 시 1.7~3.8% 많아짐.

[그림 2] 개혁대안 I 안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률(GDP 대비) 비교



- 한편,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금급여와 퇴직급여가 민간과 동일한 체계에 기반을 두어 제공되므로, 저축계정(과세대상보수 공무원과 정부 각 2.5% 부담)에 따른 추가 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초·중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과도한 반면 장기적으로 재정절감효과가 지대함, 둘째, 재직공무원의 경우,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경미한 반면 미래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확대됨, 셋째, 신규임용자의 경우, 민간 연금급여와 퇴직급여 체계에 저축계정이 추가 제공되고 있음.

□ {대안 I+재정통합안} 효과

- 개요 : 대안 I에서 퇴직연금 보험료(8.3%)를 별도 적립하는 대신 이를 적자충당에 사용하고, 퇴직연금은 사후정산하는(부과재정방식 운영)하는 방안
- 공무원 편익 및 민간과의 형평성결과는 개혁대안 I과 동일하나, 정부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개혁대안 I 대비, 202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반면,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늘어나게 됨.
- 결국, 개혁대안 I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초기 정부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점, 퇴직금제도가 적립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 퇴직급여제도는 부과재정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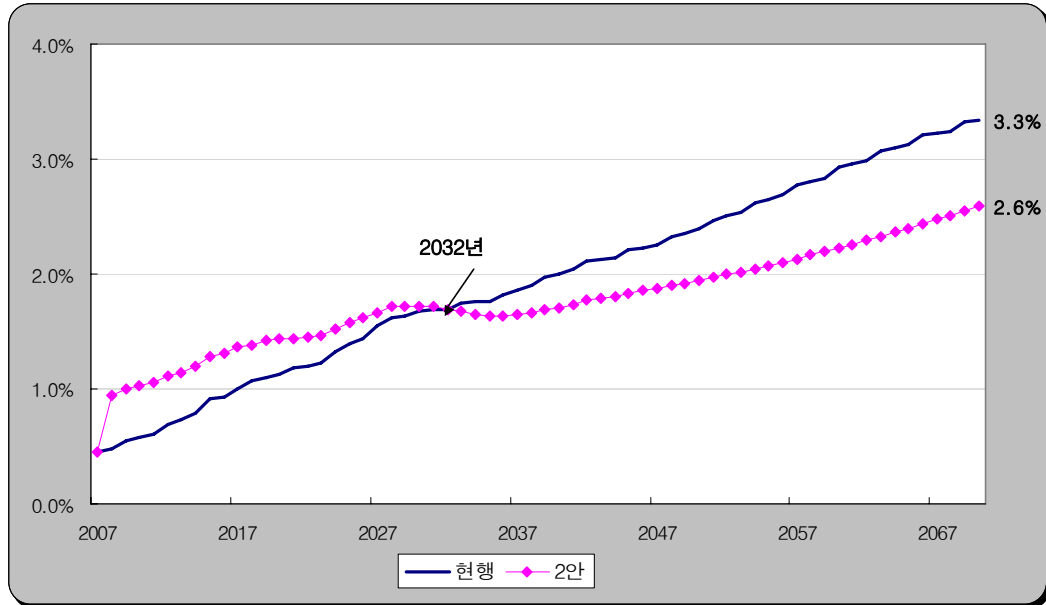
다. 개혁대안 II의 정책효과

□ 대안 II 개요

- 다층구조화 위주
- 신규임용자 역시 대안 I의 재직자 연금체계 그대로 적용
- 1층 공적연금제도 재정통합방식¹⁰⁾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정록·김재경(2005) 참조

[그림 3] 개혁대안Ⅱ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 대안 II 재정효과

- 퇴직연금 보험료 및 저축계정 부담금으로 인해 초기에는 현 제도 유지 시에 비해 정부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개정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산식) 적용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규모가 20%(2070년 기준) 정도 감소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2030년대 초반까지는 현행 제도에 비해 0.5~0.1% pt 높은 수준, 2032년에 이르러 동일 수준 1.7% 그리고 그 이후 상당 폭 낮아져 2070년 현행 3.3%에 비해 0.7% pt 하락한 2.6%를 나타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제공됨에도 후반기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한편으로는 수급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기능이 없기 때문임<부표> 참조).
- 불변치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현행제도 대비 개선안에 따른 정부 추가부담액은 2008년 4조 5천억원, 2020년 5조원 등 발생하며 그 이후 감소하여 2030년대 초

반에 접어들어 정부부담의 차이가 거의 없어짐. 2032년부터, 정부부담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70년 단해 절약규모가 27조 7천억원에 달함(<부표> 참조).

- 하지만, 정부부담액 누적현재가치가 2057년에 이르러서야 현행제도에 비해 적어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에 따른 장기재정절약효과는 2050년대 말에 가능함. 2070년 기준 정부부담 누적현재가치가 현행제도 888조원에 비해 834조원으로 54조원 감소에 그치지만, 그 이후 절약규모가 지대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부표> 참조).
- 전체적으로 볼 때, 1) 2031년까지는 개선에 따른 정부부담액이 가중되어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2.6조원 및 누적치 62조원 규모의 추가소요가 발생, 2) 하지만, 그 이후 재정이 상당 폭 절감되기 시작하여 2057년에 이르러 장기재정절약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점차 절약 폭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3) 장기재정절약정도를 현재가치로 볼 때, 2070년까지 54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로 볼 때, 2070년 단해 2.6%로 0.7% pt 하락함, 4) 결국, 개혁 대안 II의 재정적 효율성은 1층 공적연금 재정통합으로 대안 I의 지대한 초·중기 경제적 부담을 줄임에 놓여 있으나, 그 대신 장기 재정부담이 대안 I에 비해 상당히 가중되는 상충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즉, 대안 II에 따른 장기부담감소폭이 대안 I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으며, 이는 한편으로 신규임용자가 여전히 공무원연금에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노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공무원연금이 그대로 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게 되기 때문임.

□ 대안 II 형평성효과

- 앞서의 대안 I과 마찬가지로, 개정 공무원연금으로 연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 완전적립연금제도(미래재직기간)로 퇴직급여 증가 및 저축계정 가입으로 추가 급여를 경험하게 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대안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급여변화는 앞서의 개혁대안 I과 동일하며, 신규임용 공무원의 편익변화는 임용연도별 재직기간별 항목별로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금액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대비 2010년 임용 20년(33년) 재직 공무원 45.3%(40.5%), 2020년 46.1%(39.7%) 및 2030년 46.5%(40.1%) 감소
 - 반면, 퇴직급여의 경우, 임용연도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156.4% 증가
 - 연금급여,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의 합계인 총급여의 경우, 현행 총급여(연금+퇴직수당) 대비 2010년 임용 20년(33년) 재직공무원 24.6%(19.8%), 2020년 24.8%(18.7%) 및 2030년 25.3%(19.2%) 감소하여 앞서와 동일하게 연금액 감소 폭보다는 상당히 적음.
- 한편, 재직공무원의 민간과의 형평성은 개혁대안 I과 동일하며,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민간 생애소득(보수+국민연금+퇴직금) 대비 2030년 임용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부표> 참조),
 - 20년 재직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8.4%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4% 많음.
 - 25년 재직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9.0%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0% 많음.
 - 30년 재직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7%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4% 많음.
 - 33년 재직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0%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7% 많음.

□ 대안 II 종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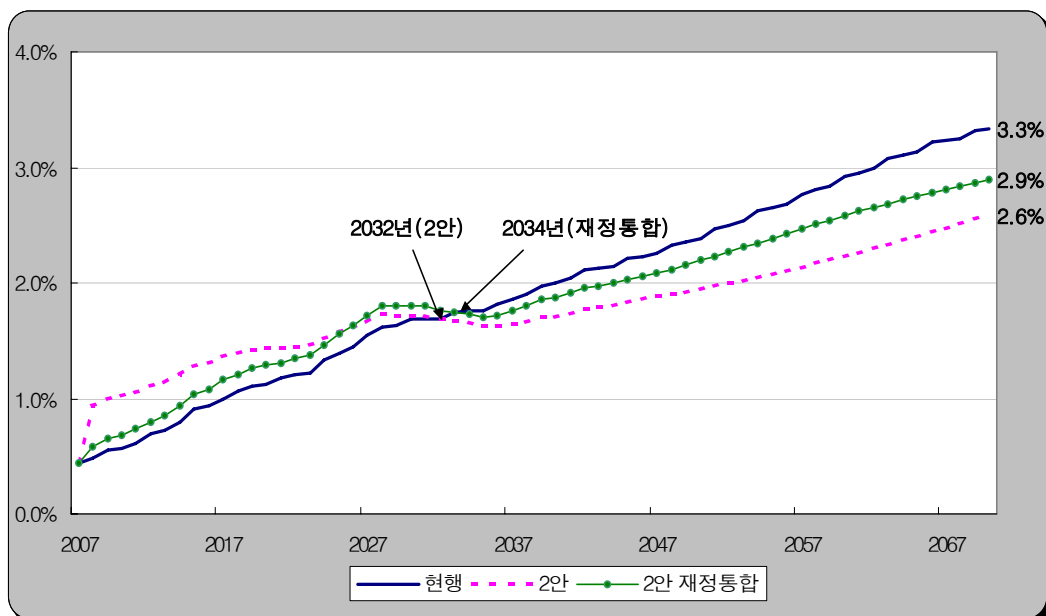
- 재정적으로 볼 때, 2030년대 초반까지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2.6조원 및 누적치 62조 규모 추가부담 발생하나, 그 이후 재정부담 감소하여 20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장기정부부담이 현행제도에 비해 동일

- 2070년까지 누적절약액 규모는 5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70년 현행제도 정부 부담액의 비율이 GDP 대비 3.3%에서 2.6%로 하락하는 등, 정부부담 절약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긴 하나 개혁대안 I에 비해 상당히 적음. 이는 한편으로 공무원연금에서 노령화효과를 그대로 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임.
- 형평성적으로 볼 때, 200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30~35% 감소함에도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 20% 정도 감소하여,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2~9.8% 많던 것이 대안 적용 시 1.7~3.8% 많게 됨.
- 한편,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40~47% 감소함에도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 19~26% 감소하여,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0~9.0% 많던 것이 대안 적용 시 0.4~1.7% 많게 됨.
 -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공무원연금 급여제공 및 저축계정 축소에도 불구하고 개혁대안 I의 경우보다 공무원 편익이 더 양호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보수를 상회하는 보수의 공무원(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공무원 평균보수자를 기준으로 하였음)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재분배로 인한 급여차감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추가 소요되나 장기적으로 재정절감효과가 존재함, 둘째, 하지만 단기추가부담규모가 개혁대안 I에 비해 상당히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재정절약규모 역시 개혁대안 I에 비해 비슷하게 적으며, 이는 신규임용자가 공무원연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셋째,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개혁대안 I과 동일하게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경미한 반면 미래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확대됨, 넷째, 신규임용자 편익의 경우, 민간 생애소득(보수급여+연금급여+퇴직급여)을 경미하게 증가하고 있음.

□ {대안 II + 재정통합안} 효과

- 개요 : 대안 II에서 퇴직연금 보험료(8.3%)를 별도 적립하는 대신 이를 적자충당에 사용하고, 퇴직연금은 사후정산하는(부과재정방식)하는 방안
- 공무원 편익 및 민간과의 형평성결과는 개혁대안 II와 동일하나, 정부부담과 관련하여, 202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개혁대안 I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늘어나게 됨.
- 결국, 개혁대안 I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초기 정부부담의 과도성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점, 퇴직금제도가 적립화되는 추세에서 공무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는 부과재정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음.

[그림 4] 개혁대안II 안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률(GDP 대비) 비교



라. 개혁대안 III의 정책효과

□ 대안 III 개요

- 수급구조 조정 및 퇴직급여제도 이원화 위주
- 수급구조 조정의 경우, 과거재직기간에는 과거 공무원연금 산식 그리고 미래재직기간에는 전가입기간, 보수월액 범위 확장(과세대상 보수 대비 현행 65%에서 90%), 2.0% 연금지급률 등의 산식 적용
- 퇴직급여의 경우, 결합형 퇴직금제도(과거재직기간 퇴직수당 및 미래재직기간 법정퇴직금 수준 완전직역연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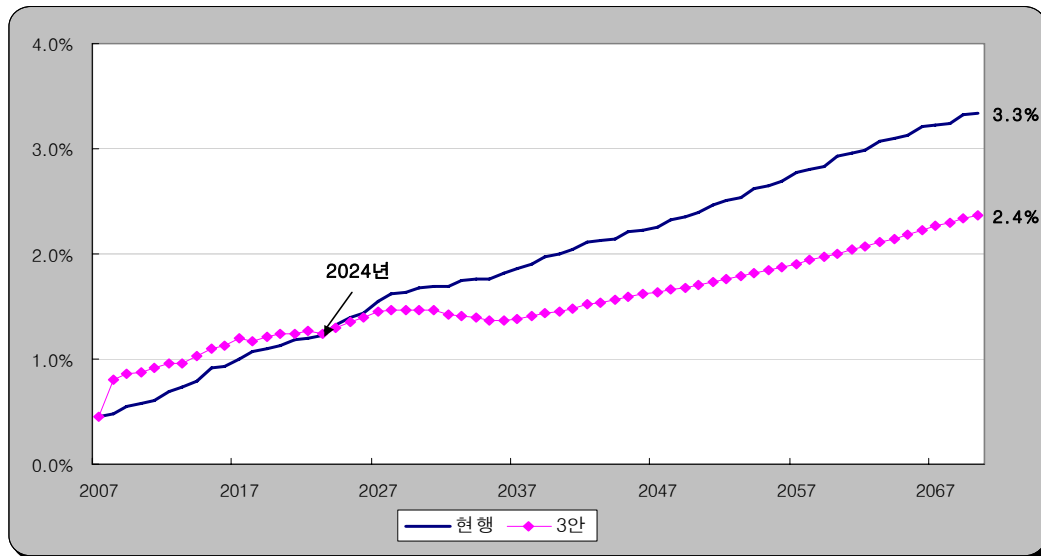
□ 대안 III 재정효과

- 퇴직연금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해 초기에는 현 제도 유지시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경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27% (2070년 기준) 정도 감소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경미하게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락폭이 커져 2070년 현행 3.3%에 비해 0.9% pt 하락한 2.4%를 나타냄(<부표> 참조).
- 불변치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현행제도 대비 개혁대안에 따른 정부 추가부담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 2010년 3조 2천억원, 2020년 1조 8천억원 등 증가하나, 그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 재정부담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 4조 5천억원, 2040년 13조 6천원 절약되며 2070년 단해 절약규모가 35조 6천억원에 달함(<부표> 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결국, 정부부담액 누적현재가치 역시 2020년 이후 기간에 걸쳐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2070년 기준 정부부담 누적현재가치는 현행제도 888조원에 비해 727조원으로 161조원 감소함(<부표> 참조).
- 2070년까지의 재정절감 누적현재가치액이 다른 개혁대안에 비높고, 둘째, 저축계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임.

[그림 5] 개혁대안 III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 전체적으로 볼 때, 1) 추계 전반부를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 정부부담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됨, 3) 장기재정절약정도를 현재가치로 볼 때, 2070년까지 161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로 볼 때, 2070년 단해 2.4%로 0.9% pt 하락함.

□ 대안 III 형평성효과

- 개정 공무원연금으로 연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법정퇴직금 수준 완전적립연금제도(미래재직기간)로 퇴직급여가 증가하나, 전체적으로는 급여감소를 경험함.

- 대안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급여변화는 임용연도별 재직기간별 항목별로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금액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대비 1990년 임용 20년(33년) 재직 공무원 20.5%(12.6%), 2000년 23.6%(25.2%), 2010년 34.3%(28.7%) 및 2030년 35.8%(28.1%) 감소
 - 반면, 퇴직급여의 경우, 임용연도가 뒤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개혁 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156.4% 증가
 - 연금급여,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의 합계인 총급여의 경우, 현행 총급여(연금+퇴직수당) 대비 1990년 임용 20년(33년) 재직공무원 19.0%(6.2%), 2000년 15.0%(13.3%), 2010년 17.5%(12.2%) 및 2030년 18.6%(11.6%) 감소
- 한편, 재직공무원의 민간과의 형평성을 33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 생애소득(보수+국민연금+퇴직금) 대비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임용연도별로 다음과 같음(<부표> 참조).
 - 199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3.5%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9% 많음.
 - 200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2%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1.3% 많음.
 - 201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4%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9% 많음.
 -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0%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1% 많음.

□ 대안 III 종합효과

- 재정적으로 볼 때, 2020년대 초반까지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1.7조원 및 누적치 27.5조 규모 추가부담 발생하나, 그 이후 재정부담 감소하여 20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장기정부부담이 현행제도에 비해 동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2070년까지 누적절약액 규모가 161조원으로 대안 중 가장 많은 반면, 2070년 현행제도 정부부담액의 비율이 GDP 대비 3.3%에서 2.4%로 하락하는 것에 그치는 등, 정부부담의 장기절약수준은 개혁대안 I에 비해 상당히 낮음.
- 형평성적으로 볼 때, 200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20~25% 감소함에도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 13~15% 정도 감소하여,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2~9.8% 많던 것이 대안 적용 시 1.3~4.2% 많게 됨.
- 한편, 203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25~37% 감소함에도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 11~19% 감소하여,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0~9.0% 많던 것이 대안 적용 시 평균적으로 민간 생애소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앞서의 안과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추가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절감효과가 존재함, 둘째, 여기에서 단기추가부담규모는 I안과 II안에 비해 작으나, 장기절약규모는 I안에 비해 상당히 적고 II안에 비해 경미하게 많아 장기재정절감효과가 미약함, 셋째,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개혁대안 I과 동일하게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경미한 반면 미래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확대됨¹¹⁾, 넷째, 신규임용자 편익의 경우 민간 편익(보수급여+연금급여+퇴직급여)과 평균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11) 한편, 연금보수의 범위가 현행 과세대상보수 65%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일시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혁 직후 몇 년에 걸쳐 퇴직하는 공무원, 특히 장기재직자의 경우, 연금총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첫연금액이 현행제도 시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범위 확장에 있어 이행기간을 둔다거나 수급구조 조정 방법을 달리 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지급개시연령제에 따라 거치기간을 거친 후 연금수급이 가능한 대부분의 단기재직자의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마. 개혁대안 IV의 정책효과

□ 대안 IV 개요

- 재직공무원 개혁대안 III 적용
- 신규임용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등 개혁대안 I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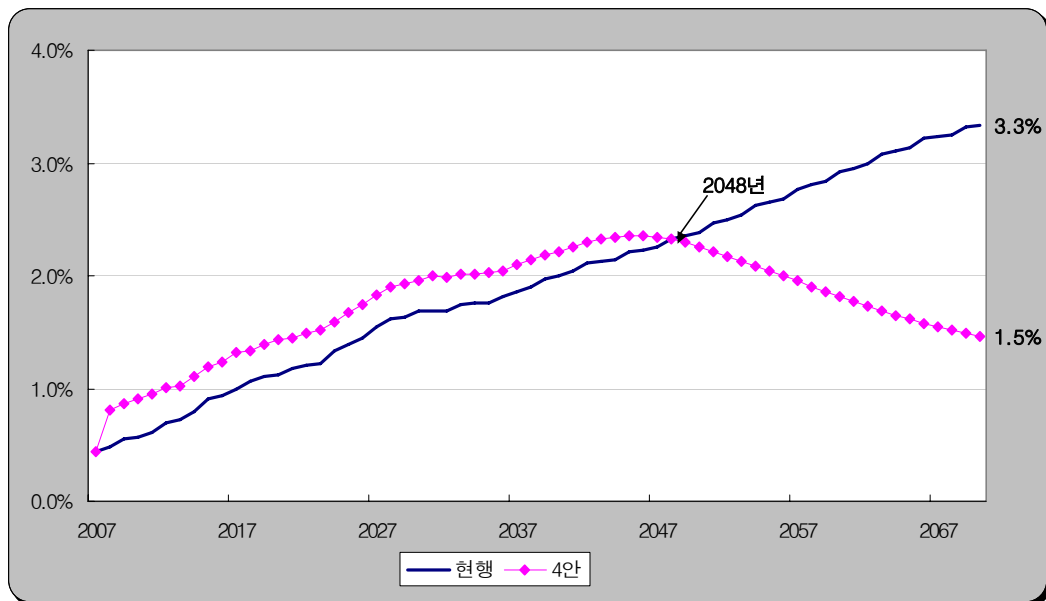
□ 대안 IV 재정효과

- 퇴직연금 보험료 추가부담, 신규임용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현 제도 유지시에 비해 정부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1층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부부담 규모가 54% (2070년 기준) 정도 크게 감소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2040년대 후반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락폭이 커져 2070년 현행 3.3%에 비해 1.8% pt 하락한 1.5%를 나타냄(<부표> 참조).
- 불변치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현행제도 대비 개선안에 따른 정부 추가부담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 2010년 3조 8천억원, 2020년 4조 8천억원, 2030년 5조 9천억원 등 증가하나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며, 2048년 재정부담이 현행제도에 비해 줄어들어 2060년 35조 7천억원 절약되며 2070년 단해 절약규모가 69조원에 달함(<부표> 참조).
- 결국, 정부부담액 누적현재가치 역시 추계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현행제도를 능가하고 있으며, 2067년에 가서야 적어지고 있음. 2070년 기준 정부부담 누적현재가치는 현행제도 888조원에 비해 859조원으로 29조원 감소에 그침(<부표> 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체적으로 볼 때, 1) 2047년까지는 개선에 따른 정부부담액이 오히려 가중되어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2.3조원 및 누적치 94조 규모의 추가소요가 발생, 2) 그 이후 재정이 상당 폭 절감되기 시작하여 2067년에 이르러 장기재정절약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3) 장기재정절약정도를 현재가치로 볼 때, 2070년까지 29조원 감소하며, 정부부담률로 볼 때, 2070년 단해 1.5%로 1.8% pt 하락함, 4) 결국, 개혁대안 IV의 경제적 효율성은, 개혁대안 I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초)장기적인 측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단기부담이 개혁대안 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6] 개혁대안 IV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비교



- 물론, 앞서 개혁대안 I과 마찬가지로, 대안에 따른 장기부담감소의 상당 부분이,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신규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70년 정부총부담률이 개혁대안 I에 비해 0.1% pt 높은 것은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개혁대안 I의 보전액이 더 많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이므로 개혁대안 I과 개혁대안 IV의 정부총부담률은 장기적으로 동일해질 것임.

□ 대안 IV 형평성효과

- 재직공무원의 편익효과는 개혁대안 III과 동일하므로 앞부분 참조하길 바람.
-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민간편익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저축계정이 제공되고 있음.

□ 대안 IV 종합효과

- 재정적으로 볼 때, 2040년대 후반까지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2.3조원 및 누적치 94조 규모 추가부담 발생하나, 그 이후 재정부담 감소하여 20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장기정부부담이 현행제도에 비해 동일
- 2070년까지 누적절약액 규모는 29조에 불과하나, 2070년 현행제도 정부부담액의 비율이 GDP 대비 3.3%에서 1.5%로 하락하는 등 정부부담 절약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확대됨(물론, 그 확대정도는 개혁대안 I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형평성적으로 볼 때, 개혁대안 III과 동일하게, 2000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20~25% 감소함에도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 13~15% 정도 감소하여,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 대비 7.2~9.8% 많던 것이 대안 적용시 1.3~4.2% 많게 됨.
- 한편,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민간편익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저축계정이 추가 제공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체적으로 볼 때, 첫째, 앞서의 안과 동일하게, 장기적으로 재정절감효과가 존재한 반면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추가 소요됨, 둘째, 단기추가부담규모는 I안에 비해서는 적고 II안과 III안에 비해 큰 반면, 장기절약규모는 I안과 거의 동일하게 지대하고 II안과 III안에 비해 월등히 큼, 셋째,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개혁대안 III과 동일하게 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경미한 반면 미래재직기간이 많을수록 급여 감소 폭이 확대됨¹²⁾, 넷째, 신규임용자 편익의 경우, 대안 I안과 동일하게, 민간편익체계(연금급여+퇴직급여)에 저축계정이 추가됨.

12) 한편, 연금보수의 범위가 현행 과세대상보수 65%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일시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혁 직후 몇 년에 걸쳐 퇴직하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총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첫연금액이 현행제도 시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범위 확장에 있어 이행기간을 둔다거나 수급구조 조정 방법을 달리 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 삽입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지급개시연령제에 따라 거치기간을 거친 후 연금수급이 가능한 대부분의 단기재직자의 경우, 이러한 역전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개혁대안 정책효과 비교

가. 개혁대안 구조 비교

- 다층구조화(3층)와 이원화를 통한 국민연금 부분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대안 I에 비해 개혁대안 II는 다층구조화만을 지향하여 1층부문을 재정통합시킴.
 - 다층구조화를 지향하는 개혁대안 II에 비해 개혁대안 III은 상이한 수급구조 조정과 퇴직연금제도의 2층구조를 지향
 - 개혁대안 IV는 2층구조의 개혁대안 III에 비해, 신규임용자의 경우, 이원화를 통한 국민연금 부분통합 및 저축계정을 추가 지향
 - 개혁대안 I과 II의 재정통합안은 다층구조의 2층 퇴직연금제도에서 완전적립재정방식이 아니라 부과재정방식을 지향
- 전체적으로 볼 때, 대안 I과 대안 II는 대안 III과 대안 IV¹³⁾에 비해 완전적립제도의 저축계정이 존재함으로 다층구조화의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근본구조변화로 인한 제도적용성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
 - 대안 II 대비 대안 I 혹은 대안 III 대비 대안 IV는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민간과의 형평성 유지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초·중기 재정부담이 지대해지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따라 공무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대안 I에 비해 다양해지는 단점을 지님.
 - 대안 I과 대안 II 대비 각 재정통합안은 퇴직수당을 완전적립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부과재정방식의 퇴직금제도로 바꾸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13) 신규임용자의 경우, 저축계정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 퇴직금의 완전적립 퇴직연금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함.

□ 개혁대안 비교시 주요 기준

- 대안 I과 II : 신규임용자의 국민연금 가입
- 대안 III과 IV : 신규임용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저축계정
- 대안 I과 IV 혹은 대안 II와 III : 다층화(저축계정 유무) 및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방식
- 대안 I과 III 혹은 대안 II와 IV : 국민연금 부분통합, 다층화(저축계정 유무) 및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방식
- 대안과 {대안+재정통합안} : 퇴직연금의 재정방식

나. 개혁대안 재정효과 비교

□ 상기 검토한 5개 개혁대안이 공통적으로 현행제도 시보다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추가 소요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절감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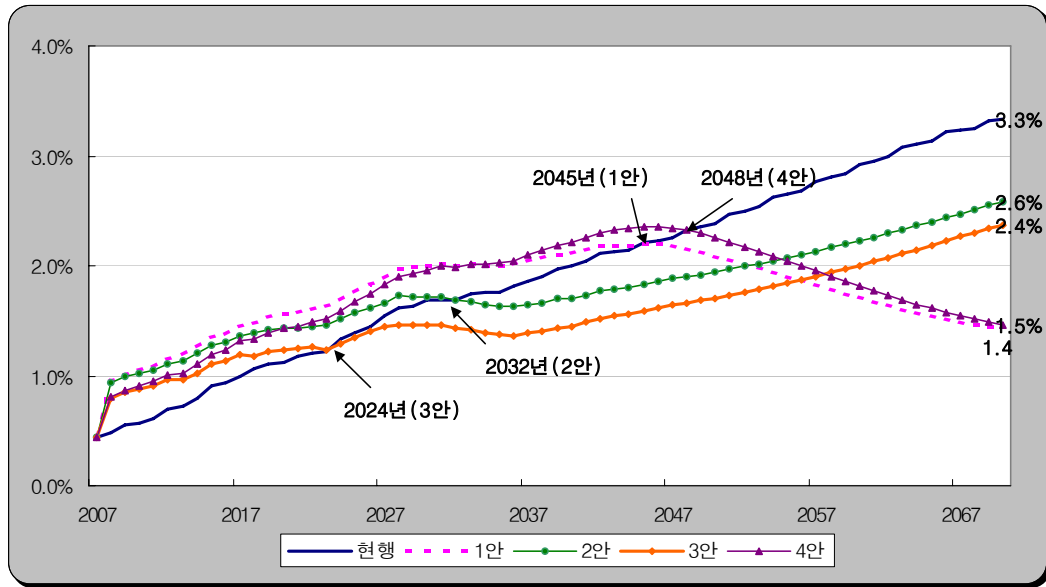
- 하지만, 장·단기 추가부담·절감규모, 추가부담에서 절감으로의 전환시점, 장기 재정균형시점 등에서 상당히 다른 면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층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수급구조 조정 정도, 2층 퇴직금제도 완전적립 여부 및 3층 저축계정 존재 유무에 따라 재정부담이 시간에 걸쳐 상이해지기기 때문임.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제도 시보다 개혁대안 I에서는 개혁 적용 이후 2044년까지 34년 동안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3.0조원 및 누적액 109조원을 추가부담하는 반면, 그 이후 감소하여 2068년에 이르러 장기재정균형상태에 도달하며, 2070년까지 총재정절감액 30.4조 및 2070년 정부총부담률 1.4%에 달하게 됨.

- 개혁대안 II에서는 2031년까지 24년 동안 연평균 2.6조원 및 누적액 62조 추가 부담하는 반면, 2057년 장기재정균형상태에 도달하며, 2070년까지 총재정절감액 53.9조원 및 2070년 정부총부담률 2.6%에 달함.
 - 개혁대안 III에서는 2023년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1.7조원 및 누적액 28조 추가 부담하는 반면, 2037년 장기재정균형상태에 도달하며, 2070년까지 총재정절감액 161.4조원 및 2070년 정부총부담률 2.4%에 달함.
 - 개혁대안 IV에서는 2047년까지 40년 동안 연평균 2.4조원 및 누적액 94조 추가 부담하는 반면, 2067년 장기재정균형상태에 도달하며, 2070년까지 총재정절감액 29.5조원 및 2070년 정부총부담률 1.5%에 달함.
- 2070년까지 절감액은 대안 III, 대안 II, 대안 I, 대안 IV의 순이지만, 2070년 정부총부담률이 대안 I, 대안 IV, 대안 III, 대안 II의 순임을 감안할 때, 장기재정안정성 기준에서는 대안 I, 대안 IV, 대안 III, 대안 II의 순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안 II 대비 대안 I 혹은 대안 III 대비 대안 IV의 장기재정절약정도가 큰 것은 대안 I과 대안 VI에서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이 미래 국민연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그림 7] 개혁대안의 정부총부담률(GDP 대비) 종합비교



〈표 1〉 개혁대안의 정부부담 종합비교

개선안		추가부담시기 (평균액)	재정절약 반전연도	장기재정 균형연도	장기재정 절약규모	2070년 정부총부담률
I 안		2044년(2.95조)	2045년	2067년	30.4조	1.4%
	재정통합	2049년(2.28조)	2050년	2070년	0.5조	1.7%
II 안		2031년(2.58조)	2032년	2057년	53.9조	2.6%
	재정통합	2033년(2.27조)	2034년	2059년	24.0조	2.9%
III 안		2023년(1.72조)	2024년	2037년	161.4조	2.4%
IV 안		2047년(2.35조)	2048년	2067년	29.5조	1.5%

- 하지만, 대안 I과 대안 IV가 고령화위험에 따른 재정적 취약성을 거의 해소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과대한 초·중기 정부재정부담으로 인한 현실적용성의 문제 및 미래부담 국민연금 이전이라는 단점을 보유하며, 이러한 장·단점은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초래되고 있음.

- 대안 IV의 경우, 2070년 현재, 재직공무원 관련 보전액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 I의 정부부담률보다 높게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초·중기적으로는 대안 III, 대안 II, 대안 IV, 대안 I의 순으로 정부부담이 적게 들어 장기적 측면과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신규임용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 때문이며 저축계정 존재 여부 및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정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대안 II와 대안 III은 장기적으로 고령화위험에 따른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초·중기적으로는 정부재정부담을 완화시켜 대안 중에서 현실적용성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음.

□ 그 외, {대안 I+재정통합안}과 {대안 II+재정통합안}은 각 원안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더 적게 소요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소요가 발생하며 (2070년 정부총부담율을 0.3% pt 상승시킴), 이러한 장·단점은 2층부문인 퇴직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에 의해 초래되고 있음.

- 또한, 대안 II 대비 대안 III은 추계 전 기간에 걸쳐 정부재정부담을 감소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층화 여부(저축계정) 및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방식의 차이로 초래되고 있음.

- 반대로, 대안 I 대비 대안 IV는 추계 전 기간에 걸쳐 정부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방식의 차이로 초래되고 있음.¹⁴⁾

14) 대안 IV의 공무원연금 수급구조가 대안 I에 비해 취약함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안 IV의 수급구조가 대안 I의 수급구조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 재정안정성 및 국민부담 관련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는 대안 I과 대안 IV의 순으로 우월하고 중기 재정안정성 및 대안 현실 적용성 차원에서는 대안 III과 대안 II의 순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 재정안정성: 대안 I ≒ 대안 IV > 대안 III > 대안 II¹⁵⁾
- 초·중기 재정안정성: 대안 III > 대안 II > 대안 IV > 대안 I

다. 개혁대안 형평성효과 비교

□ 재직공무원 형평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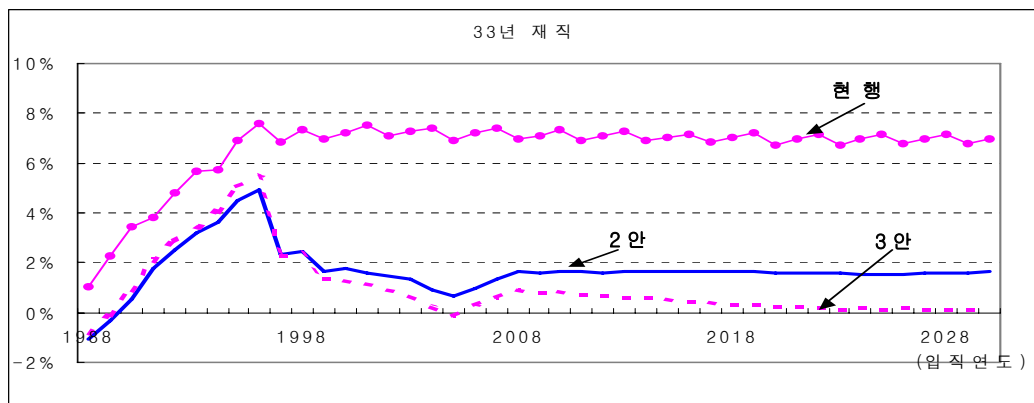
- 결합형 퇴직금제도가 제공됨에 있어 안별로 공통적이거나, 대안 I과 대안 II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 개정 공무원연금과 저축계정이 제공되는 반면, 대안 III과 대안 IV의 경우, 수급구조 조정된 개정 공무원연금이 적용됨.
- 이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는, 33년 재직 1960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3.6% 감소로 동일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1980년 각 21.6% 및 20.3% 감소, 2000년 각 34.3% 및 25.2% 감소 그리고 2007년 40.9% 및 29.6%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안 I과 대안 II의 연금액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개혁 I과 개혁 II의 경우 저축계정이 추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연금액+퇴직급여액+저축계정액}의 합계인 총급여액의 변화는, 앞서와 동일하게 33년 재직 1960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3.2% 감소로 동일하나 시간이 지날수

15) 대안 IV의 2070년 정부총부담률이 대안 I에 비해 0.1% pt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직공무원 관련 보전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전액이 소진되면서 대안 I의 부담률과 동일해질 것임.

록 확대되어 1980년 각 17.4% 및 16.6% 감소, 2000년 각 18.9% 및 13.3% 감소 그리고 2007년 20.7% 및 13.6%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안 I과 대안 II의 연금액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대안 III과 대안 IV의 보험료가 대안 I과 대안 II에 비해 두배를 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총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민간과의 형평성 비교차원에서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비교하는 생애소득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안 적용에 따라 33년 재직 2000년 임용 33년 재직공무원의 경우, 현행 7.5% 많은 것에 비해 대안 I과 대안 II의 1.6% 및 대안 III과 대안 IV의 1.1%

[그림 8] 개혁대안의 민간 대비 생애소득증감률 종합비교



많으며, 2007년 현행제도 7.4%에 비해 대안 I과 대안 II 1.3% 및 대안 III과 대안 IV 0.6%로서, 생애소득차원에서 민간에 비해 경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하는 정도는 대안 I과 대안 II에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¹⁶⁾

16) 공무원과 민간의 형평성을 논의함에 있어 민관보수접근률 가정, 개정 국민연금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형평성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형평성분석이 실자원적인 비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직업의 안정성, 각 그룹의 특수성 등의 비자원적인 면을 추가 감안할 경우, 상기결과가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본 시뮬레이션의 환경이란 상당히 제약된 가정하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시뮬레이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체적으로 볼 때, 대안 I과 대안 II의 연금감소액이 대안 III과 대안 IV에 비해 상당히 크지만 안별 추가급여의 존재 여부 및 보험료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보다 총체적인 기준인 생애소득 차원에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임용 33년 재직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시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4% 많던 것이 각 1.3% 및 0.6% 많아져 민간과의 형평성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대안 I과 대안 II의 편익 감소 폭이 대안 III과 대안 IV에 비해 경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규임용공무원 형평성 비교

- 결합형 퇴직금제도가 제공됨에 있어 안별로 공통적이거나, 대안 I과 대안 IV에는 국민연금과 저축계정(2.5%), 대안 II에는 국민연금 수준의 개정 공무원연금과 저축계정(1.5%) 그리고 대안 III에는 수급구조 조정된 개정 공무원연금이 각각 적용됨.
- 이에 따른 공무원 편익의 변화를 총체적 차원에서 생애소득증감율을 통해 살펴보면, 대안 적용에 따라 33년 재직 2008년 임용공무원의 경우, 현행 7.0% 많은 것에 비해 대안 II의 0.6% 및 대안 III의 0.9% 많으며, 2030년 현행제도 7.0%에 비해 대안 II 1.7% 및 대안 III 0.1%로서, 생애소득차원에서 민간과의 형평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⁷⁾ 물론 대안 II의 편익 감소 폭이 대안 III에 비해 경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7) 공무원과 민간의 형평성을 논의함에 있어 민관보수접근률 가정, 개정 국민연금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형평성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형평성분석이 실자원적인 비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직업의 안정성, 각 그룹의 특수성 등의 비자원적인 면을 추가 감안할 경우, 상기결과가 충분히 변화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본 시뮬레이션의 환경이란 상당히 제약된 가정하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시뮬레이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대안 I과 대안 IV 신규임용자의 경우, 민간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과세대상보수 대비 2.5% 정부부담의 저축계정이므로 민관보수접근률이 95%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생애소득증감률이 음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애소득 차원에서 볼 때, 대안 I과 대안 IV에 비해서 대안 III이 우월하며, 이는 주로 낮은 수준의 저축계정을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소득재분배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임. 한편, 대안 II가 대안 III에 비해 경미하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연금급여의 감소 폭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축계정과 낮은 수준의 연금 보험료 때문임.

□ 개혁대안 형평성 비교

- 재직공무원의 경우, 대안 I과 대안 II의 편익 감소 폭이 대안 III과 대안 IV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민간 생애소득을 경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음.¹⁸⁾
 - 재직 공무원 편익 : 대안 I = 대안 II > 대안 III = 대안 IV
-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대안 II의 편익 감소 폭이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대안 I 그리고 대안 I과 대안 IV가 동일하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규임용 공무원 편익 : 대안 II > 대안 III > 대안 I = 대안 IV
- 결국, 대안 중 대안 IV는 재직공무원과 신규임용 공무원 편익, 대안 III은 신규임용 공무원편익 그리고 대안 I은 재직 공무원편익에서 가장 열등한 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안 II의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에서는 가장 우월하고 재직공무원에서는 두 번째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8) 하지만 1990년 중반 이전 임용 재직공무원의 경우, 그 결과가 역전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한편, 민관과의 형평성 비교차원에서 볼 때, 생애소득 기준에서 대안 I과 대안 IV의 신규임용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민간 생애소득을 경미하게 초과하고 있으며, 대안 I과 대안 IV 신규임용자의 경우, 민간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체계에 더하여 저축계정을 추가로 제공받으나 보수차이를 보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3. 개혁대안 평가

가. 요약

□ 개혁대안 재정효과 평가

- 장기 재정안정성 : 대안 I = 대안 IV > 대안 III > 대안 II¹⁹⁾
- 초·중기 재정안정성 : 대안 III > 대안 II > 대안 IV > 대안 I

□ 개혁대안 형평성효과 평가

- 재직 공무원 편익 : 대안 I = 대안 II > 대안 III = 대안 IV
- 신규임용 공무원 편익 : 대안 II > 대안 III > 대안 I = 대안 IV

19) 대안 IV의 2070년 정부총부담률이 대안 I에 비해 0.1% pt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직공무원 관련 보전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전액이 소진되면서 대안 I의 부담률과 동일해질 것임.

나. 개혁대안 평가

- 대안 I은 연금체계의 다층화, 장기재정 안정성, 재직공무원 편익 차원에서 상당히 우월하나, 지대한 초·중기 정부부담으로 인한 현실적용성과 신규공무원 편익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대안 II는 초·중기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재직공무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의 편익에서 가장 우월한 대신 장기재정 안정성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안 I에 대비할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존재함으로 재정적으로는 초·중기 재정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키며 형평성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경제적 편익을 경험할 수 있음.
 - 이러한 면에서, 대안 I이 재원조달의 문제, 공무원 편익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현실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중도 이행안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II의 장점이 존재함.
- 대안 III은 개혁으로 인한 초·중기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안이나 장기재정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동시에 재직공무원 편익 관련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공무원연금의 급여가 가장 적게 줄여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상당히 높고, 다른 대안에서 제공되는 저축계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임.
 - 한편, 대안 IV의 초·중기 재정부담 및 신규임용자 편익의 과도한 변화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중도 이행안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III의 장점이 존재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마지막으로, 대안 IV는 공무원편익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기 재정 안정성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반면, 장기 재정 안정성 차원에서 가장 우월한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편익의 열세는, 재직공무원의 경우, 급여구조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높고 저축계정이 제공되지 않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임. 한편 초·중기 재정부담의 가중현상은 기본적으로 신규임용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이며, 신규임용자에게 제공되는 저축계정이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장·단기 재정부담, 공무원 그룹별 수급권 안정성, 제도 개혁의 용이성, 세대간 형평성 등에 있어 대안별 장·단점이 고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결국, 연금개혁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각각의 기준들에 대안별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중·장기 재정안정성, 공무원 소득보장성, 민간과의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이행용이성 등의 제 기준 간 선호관계 및 각 기준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부표 A-1-1〉 개혁대안 I 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				
	연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39,377	44,797	6,395	90,568	0.9%
2010	46,552	13,385	59,937	0.6%	50,869	51,077	7,304	109,250	1.0%
2015	93,366	25,074	118,441	0.9%	97,346	67,788	9,865	174,999	1.3%
2020	143,646	32,879	176,525	1.1%	154,977	77,828	12,860	245,665	1.6%
2025	211,991	44,496	256,487	1.4%	222,130	86,434	16,547	325,112	1.8%
2030	298,118	50,644	348,762	1.7%	303,070	91,363	20,771	415,204	2.0%
2035	353,767	46,462	400,229	1.8%	331,997	96,512	25,779	454,287	2.0%
2040	435,784	56,971	492,755	2.0%	380,941	109,023	31,397	521,361	2.1%
2045	517,196	63,885	581,082	2.2%	418,321	123,637	36,978	578,937	2.2%
2050	595,286	77,662	672,948	2.4%	405,586	141,398	42,586	589,570	2.1%
2055	706,527	93,468	799,994	2.7%	365,157	161,191	48,552	574,900	1.9%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307,041	182,924	55,098	545,063	1.7%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262,194	207,982	62,645	532,822	1.5%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217,663	238,158	71,734	527,556	1.4%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1-2〉 개혁대안 I 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				
	연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36,222	41,208	5,882	83,312	122,255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43,196	43,373	6,203	92,772	304,392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68,731	47,862	6,965	123,559	849,840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92,601	46,503	7,684	146,788	1,540,517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113,728	44,253	8,472	166,453	2,320,900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133,892	40,363	9,176	183,432	3,219,570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126,711	36,835	9,839	173,385	4,111,017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125,478	35,911	10,342	171,730	4,973,176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118,666	35,072	10,490	164,229	5,815,309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98,818	34,450	10,376	143,644	6,579,712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76,361	33,708	10,153	120,222	7,226,798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56,512	32,832	9,889	99,234	7,763,715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40,392	32,040	9,651	82,083	8,206,707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28,780	31,490	9,485	69,756	8,578,128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A-1-3〉 개혁대안 I 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 과 재정통합				
	연 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39,377	10,699	6,395	56,470	0.6%
2010	46,552	13,385	59,937	0.6%	50,869	15,871	7,304	74,044	0.7%
2015	93,366	25,074	118,441	0.9%	97,346	36,047	9,865	143,257	1.1%
2020	143,646	32,879	176,525	1.1%	154,977	55,019	12,860	222,856	1.4%
2025	211,991	44,496	256,487	1.4%	222,130	83,190	16,547	321,867	1.7%
2030	298,118	50,644	348,762	1.7%	303,070	108,614	20,771	432,455	2.1%
2035	353,767	46,462	400,229	1.8%	331,997	112,889	25,779	470,664	2.1%
2040	435,784	56,971	492,755	2.0%	380,941	149,878	31,397	562,216	2.3%
2045	517,196	63,885	581,082	2.2%	418,321	173,582	36,978	628,882	2.4%
2050	595,286	77,662	672,948	2.4%	405,586	211,339	42,586	659,511	2.3%
2055	706,527	93,468	799,994	2.7%	365,157	255,126	48,552	668,834	2.2%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307,041	297,464	55,098	659,603	2.1%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262,194	330,274	62,645	655,113	1.9%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217,663	353,433	71,734	642,830	1.7%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1-4〉 개혁대안 I 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 과 재정통합				
	연 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 금	퇴직금	저축계 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36,222	9,842	5,882	51,946	90,889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43,196	13,477	6,203	62,876	212,535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68,731	25,451	6,965	101,148	627,589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92,601	32,874	7,684	133,159	1,233,875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113,728	42,592	8,472	164,792	1,975,996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133,892	47,984	9,176	191,053	2,903,657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126,711	43,085	9,839	179,635	3,828,192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125,478	49,368	10,342	185,188	4,745,703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118,666	49,241	10,490	178,397	5,659,665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98,818	51,491	10,376	160,685	6,501,474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76,361	53,351	10,153	139,866	7,242,180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56,512	53,391	9,889	119,792	7,881,023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40,392	50,880	9,651	100,922	8,422,630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28,780	46,732	9,485	84,998	8,877,303

〈부표 A-2-1〉 개혁대안 II 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I				
	연 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39,005	44,797	6,355	90,156	0.9%
2010	46,552	13,385	59,937	0.6%	48,879	51,077	7,082	107,038	1.0%
2015	93,366	25,074	118,441	0.9%	90,003	67,788	8,977	166,768	1.3%
2020	143,646	32,879	176,525	1.1%	137,745	77,828	10,821	226,393	1.4%
2025	211,991	44,496	256,487	1.4%	190,145	86,434	12,813	289,392	1.6%
2030	298,118	50,644	348,762	1.7%	250,485	91,363	14,628	356,476	1.7%
2035	353,767	46,462	400,229	1.8%	257,108	96,512	16,830	370,450	1.6%
2040	435,784	56,971	492,755	2.0%	291,898	109,023	19,479	420,400	1.7%
2045	517,196	63,885	581,082	2.2%	337,129	123,637	22,328	483,093	1.8%
2050	595,286	77,662	672,948	2.4%	380,953	141,398	25,554	547,904	1.9%
2055	706,527	93,468	799,994	2.7%	435,279	161,191	29,131	625,601	2.1%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502,073	182,924	33,059	718,056	2.2%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582,386	207,982	37,587	827,956	2.4%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673,370	238,158	43,041	954,568	2.6%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2-2〉 개혁대안 II 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II				
	연 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35,880	41,208	5,846	82,933	121,876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41,507	43,373	6,014	90,894	301,000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63,547	47,862	6,338	117,748	825,791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82,304	46,503	6,465	135,273	1,470,916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97,352	44,253	6,560	148,166	2,173,865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110,661	40,363	6,463	157,487	2,958,148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98,128	36,835	6,424	141,387	3,700,560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96,148	35,911	6,416	138,475	4,396,192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95,634	35,072	6,334	137,040	5,086,301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92,816	34,450	6,226	133,493	5,761,482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91,025	33,708	6,092	130,825	6,420,491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90,115	32,832	5,934	128,881	7,068,688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89,719	32,040	5,790	127,549	7,708,640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89,036	31,490	5,691	126,217	8,342,878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A-2-3〉 개혁대안Ⅱ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Ⅱ과 재정통합				
	연 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39,005	10,699	6,355	56,059	0.6%
2010	46,552	13,385	59,937	0.6%	48,879	15,871	7,082	71,832	0.7%
2015	93,366	25,074	118,441	0.9%	90,003	36,047	8,977	135,027	1.0%
2020	143,646	32,879	176,525	1.1%	137,745	55,019	10,821	203,585	1.3%
2025	211,991	44,496	256,487	1.4%	190,145	83,190	12,813	286,147	1.6%
2030	298,118	50,644	348,762	1.7%	250,485	108,614	14,628	373,727	1.8%
2035	353,767	46,462	400,229	1.8%	257,108	112,889	16,830	386,827	1.7%
2040	435,784	56,971	492,755	2.0%	291,898	149,878	19,479	461,255	1.9%
2045	517,196	63,885	581,082	2.2%	337,129	173,582	22,328	533,039	2.0%
2050	595,286	77,662	672,948	2.4%	380,953	211,339	25,554	617,846	2.2%
2055	706,527	93,468	799,994	2.7%	435,279	255,126	29,131	719,535	2.4%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502,073	297,464	33,059	832,596	2.6%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582,386	330,274	37,587	950,247	2.8%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673,370	353,433	43,041	1,069,843	2.9%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2-4〉 개혁대안Ⅱ과 재정통합안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Ⅱ과 재정통합				
	연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35,880	9,842	5,846	51,567	90,510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41,507	13,477	6,014	60,998	209,143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63,547	25,451	6,338	95,336	603,539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82,304	32,874	6,465	121,644	1,164,274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97,352	42,592	6,560	146,504	1,828,960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110,661	47,984	6,463	165,108	2,642,236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98,128	43,085	6,424	147,637	3,417,735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96,148	49,368	6,416	151,932	4,168,719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95,634	49,241	6,334	151,209	4,930,657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92,816	51,491	6,226	150,533	5,683,243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91,025	53,351	6,092	150,468	6,435,872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90,115	53,391	5,934	149,440	7,185,997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89,719	50,880	5,790	146,389	7,924,562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89,036	46,732	5,691	141,459	8,642,053

〈부표 A-3-1〉 개혁대안Ⅲ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행				개혁대안Ⅲ				
	연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26,457	44,797	5,234	76,488	0.8%
2010	46,552	13,385	59,937	0.6%	29,080	51,077	11,765	91,922	0.9%
2015	93,366	25,074	118,441	0.9%	40,619	67,788	35,213	143,621	1.1%
2020	143,646	32,879	176,525	1.1%	55,692	77,828	60,954	194,474	1.2%
2025	211,991	44,496	256,487	1.4%	72,951	86,434	89,360	248,745	1.4%
2030	298,118	50,644	348,762	1.7%	97,558	91,363	114,989	303,910	1.5%
2035	353,767	46,462	400,229	1.8%	116,831	96,512	98,247	311,590	1.4%
2040	435,784	56,971	492,755	2.0%	137,343	109,023	110,831	357,197	1.5%
2045	517,196	63,885	581,082	2.2%	159,363	123,637	135,907	418,907	1.6%
2050	595,286	77,662	672,948	2.4%	182,620	141,398	156,618	480,636	1.7%
2055	706,527	93,468	799,994	2.7%	208,109	161,191	186,448	555,749	1.8%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236,124	182,924	227,561	646,609	2.0%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268,350	207,982	277,533	753,865	2.2%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307,258	238,158	330,584	876,000	2.4%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3-2〉 개혁대안Ⅲ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행				개혁대안Ⅲ				
	연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24,337	41,208	4,815	70,360	109,303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24,694	43,373	9,991	78,058	262,864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28,680	47,862	24,862	101,404	712,935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33,276	46,503	36,421	116,200	1,267,707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37,350	44,253	45,751	127,355	1,870,911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43,100	40,363	50,800	134,264	2,544,231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44,590	36,835	37,497	118,922	3,172,948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45,239	35,911	36,506	117,657	3,760,416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45,207	35,072	38,553	118,832	4,354,479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44,494	34,450	38,159	117,103	4,944,507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43,519	33,708	38,990	116,217	5,526,869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42,381	32,832	40,844	116,058	6,107,541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41,340	32,040	42,755	116,136	6,687,695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40,627	31,490	43,711	115,828	7,268,31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A-4-1〉 개혁대안Ⅳ의 정부부담 비교(불변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Ⅳ				
	연 금	퇴직수당	계	비율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비율
2008	35,647	10,033	45,680	0.5%	32,138	44,797	98	77,033	0.8%
2010	46,552	13,385	59,937	0.6%	43,266	51,077	554	94,897	0.9%
2015	93,366	25,074	118,441	0.9%	85,798	67,788	2,218	155,804	1.2%
2020	143,646	32,879	176,525	1.1%	141,784	77,828	5,098	224,709	1.4%
2025	211,991	44,496	256,487	1.4%	212,305	86,434	9,336	308,075	1.7%
2030	298,118	50,644	348,762	1.7%	300,614	91,363	15,357	407,334	2.0%
2035	353,767	46,462	400,229	1.8%	341,625	96,512	22,370	460,507	2.0%
2040	435,784	56,971	492,755	2.0%	406,069	109,023	29,796	544,888	2.2%
2045	517,196	63,885	581,082	2.2%	459,250	123,637	36,627	619,514	2.4%
2050	595,286	77,662	672,948	2.4%	450,592	141,398	42,581	634,571	2.3%
2055	706,527	93,468	799,994	2.7%	405,765	161,191	48,552	615,508	2.0%
2060	834,659	108,740	943,399	2.9%	348,476	182,924	55,098	586,498	1.8%
2065	959,762	119,666	1,079,428	3.1%	286,617	207,982	62,645	557,245	1.6%
2070	1,103,284	128,371	1,231,655	3.3%	232,071	238,158	71,734	541,963	1.5%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비율 : GDP대비 정부총부담률

〈부표 A-4-2〉 개혁대안Ⅳ의 정부부담 비교(현재가치)

(단위 : 억원, 2006년 현재가치)

연도	현 행				개혁대안 Ⅳ				
	연 금	퇴직수당	계	누적 현재가치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	누적 현재가치
2008	32,791	9,229	42,020	80,962	29,563	41,208	90	70,861	109,804
2010	39,531	11,366	50,897	180,571	36,741	43,373	471	80,585	267,408
2015	65,922	17,704	83,626	518,275	60,578	47,862	1,566	110,006	747,307
2020	85,830	19,645	105,476	1,005,730	84,717	46,503	3,046	134,266	1,372,325
2025	108,537	22,781	131,318	1,603,457	108,698	44,253	4,780	157,731	2,101,671
2030	131,705	22,374	154,079	2,340,113	132,807	40,363	6,784	179,955	2,972,254
2035	135,020	17,733	152,753	3,107,921	130,386	36,835	8,538	175,759	3,864,358
2040	143,542	18,766	162,308	3,904,412	133,755	35,911	9,814	179,480	4,754,318
2045	146,715	18,123	164,837	4,724,310	130,277	35,072	10,390	175,739	5,647,853
2050	145,037	18,922	163,959	5,544,543	109,783	34,450	10,375	154,608	6,470,013
2055	147,748	19,546	167,294	6,378,374	84,853	33,708	10,153	128,714	7,164,512
2060	149,810	19,517	169,327	7,217,982	62,547	32,832	9,889	105,268	7,736,484
2065	147,855	18,435	166,290	8,056,768	44,154	32,040	9,651	85,845	8,202,722
2070	145,881	16,974	162,855	8,882,262	30,685	31,490	9,485	71,661	8,587,169

〈부표 A-5〉 개혁대안의 정부부담 종합비교

개 선 안	추가부담시기 (평균액)	재정절약 반전연도	장기재정 균형연도	장기재정 절약규모	2070년 정부총부담률
I 안	2044년(2.95조)	2045년	2067년	30.4조	1.4%
재정통합	2049년(2.28조)	2050년	2070년	0.5조	1.7%
II 안	2031년(2.58조)	2032년	2057년	53.9조	2.6%
재정통합	2033년(2.27조)	2034년	2059년	24.0조	2.9%
III안	2023년(1.72조)	2024년	2037년	161.4조	2.4%
IV안	2047년(2.35조)	2048년	2067년	29.5조	1.5%

〈부표 A-6〉 공무원연금 수지전망(현행)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수 입	지 출	수지(보전액)	퇴직수당
2008	46,806	59,248	12,442	10,033
2010	51,320	72,367	21,047	13,385
2015	62,327	124,520	62,193	25,074
2020	75,519	181,175	105,656	32,879
2025	86,426	254,871	168,445	44,496
2030	103,980	349,673	245,693	50,644
2035	123,344	414,892	291,548	46,462
2040	143,570	506,905	363,335	56,971
2045	167,691	600,238	432,547	63,885
2050	190,604	689,651	499,047	77,662
2055	215,986	813,435	597,449	93,468
2060	242,956	954,896	711,940	108,740
2065	275,762	1,096,212	820,450	119,666
2070	319,133	1,261,168	942,035	128,37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A-7〉 공무원연금 수지전망(Ⅰ안)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37,915	58,393	20,478	4.8%	1.9%
2010	51,320	72,367	21,047	4.5%	39,819	69,918	30,098	6.4%	1.9%
2015	62,327	124,520	62,193	10.4%	42,313	114,274	71,961	12.0%	1.6%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41,867	165,911	124,044	17.2%	2.6%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36,352	222,015	185,663	21.7%	2.0%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28,638	287,373	258,735	26.5%	1.3%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8,860	297,759	278,898	24.9%	-1.1%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8,614	327,124	318,511	24.5%	-3.5%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2,022	347,895	345,873	23.2%	-5.9%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0	322,908	322,567	18.9%	-10.4%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0	270,897	270,555	13.9%	-16.9%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0	207,870	207,527	9.4%	-22.9%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0	140,572	140,228	5.6%	-27.1%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0	78,358	78,012	2.7%	-30.1%

〈부표 A-8〉 공무원연금 수지전망(Ⅱ안)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38,293	58,399	20,106	4.7%	1.8%
2010	51,320	72,367	21,047	4.5%	41,961	70,071	28,109	6.0%	1.5%
2015	62,327	124,520	62,193	10.4%	50,883	115,502	64,619	10.8%	0.4%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61,568	168,379	106,812	14.8%	0.2%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72,430	226,109	153,678	18.0%	-1.7%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87,986	294,136	206,150	21.1%	-4.1%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05,313	309,322	204,009	18.2%	-7.8%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23,763	353,230	229,468	17.7%	-10.3%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43,570	408,250	264,680	17.8%	-11.3%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64,468	462,402	297,933	17.5%	-11.8%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187,369	528,046	340,677	17.5%	-13.3%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12,531	607,275	394,744	17.9%	-14.4%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41,470	701,889	460,420	18.4%	-14.3%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276,434	810,152	533,718	18.6%	-14.2%

〈부표 A-9〉 공무원연금 수지전망(Ⅲ 안)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5,882	58,470	5,234	1.2%	-1.7%
2010	51,320	72,367	21,047	4.5%	61,296	70,153	11,765	2.5%	-2.0%
2015	62,327	124,520	62,193	10.4%	85,065	116,216	35,213	5.9%	-4.5%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16,083	171,468	60,954	8.4%	-6.2%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151,892	233,956	89,360	10.5%	-9.2%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203,039	308,272	114,989	11.8%	-13.4%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243,068	329,632	98,247	8.8%	-17.2%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285,672	382,769	110,831	8.5%	-19.5%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331,409	451,380	135,907	9.1%	-20.0%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379,714	518,071	156,618	9.2%	-20.1%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432,657	598,294	186,448	9.6%	-21.2%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490,845	694,793	227,561	10.3%	-22.0%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557,778	808,477	277,533	11.1%	-21.6%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638,591	938,449	330,584	11.5%	-21.3%

〈부표 A-10〉 공무원연금 수지전망(Ⅳ 안)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2,706	58,464	5,757	1.4%	-1.5%
2010	51,320	72,367	21,047	4.5%	55,386	70,007	14,622	3.1%	-1.4%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7,278	115,063	47,785	8.0%	-2.4%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028	169,105	94,077	13.0%	-1.6%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72,401	230,024	157,623	18.4%	-1.3%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62,671	301,773	239,102	24.5%	-0.7%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41,161	318,446	277,285	24.7%	-1.3%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8,618	357,234	338,616	26.1%	-1.9%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4,116	389,896	385,781	25.9%	-3.2%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0	367,990	367,573	21.6%	-7.7%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0	311,581	311,163	16.0%	-14.8%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0	241,567	241,147	10.9%	-21.4%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0	165,072	164,651	6.6%	-26.1%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0	92,842	92,419	3.2%	-29.6%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B-1〉 개혁대안의 연금감소율 종합비교

임용 연도	Ⅱ 안				Ⅲ 안			
	20년	25년	30년	33년	20년	25년	30년	33년
1960	-1.7%	-2.3%	-3.0%	-3.6%	-1.7%	-2.3%	-3.0%	-3.6%
1970	-6.8%	-8.8%	-11.3%	-13.0%	-6.8%	-8.8%	-11.3%	-13.0%
1980	-15.2%	-18.4%	-23.2%	-21.9%	-15.2%	-18.4%	-22.8%	-20.3%
1990	-21.2%	-23.2%	-21.7%	-18.8%	-20.5%	-20.2%	-16.7%	-12.6%
2000	-30.4%	-31.8%	-34.1%	-34.3%	-23.6%	-24.0%	-25.5%	-25.2%
2010	-45.3%	-47.4%	-43.1%	-40.5%	-34.3%	-36.9%	-31.7%	-28.7%
2020	-46.1%	-46.6%	-42.2%	-39.7%	-35.4%	-35.9%	-30.7%	-27.6%
2030	-46.5%	-47.0%	-42.6%	-40.1%	-35.8%	-36.4%	-31.2%	-28.1%

〈부표 B-2〉 개혁대안의 퇴직급여 증가율 종합비교

임용 연도	Ⅱ 안				Ⅲ 안			
	20년	25년	30년	33년	20년	25년	30년	33년
1960	0.0%	0.0%	0.0%	0.0%	0.0%	0.0%	0.0%	0.0%
1970	0.0%	0.0%	0.0%	0.0%	0.0%	0.0%	0.0%	0.0%
1980	0.0%	0.0%	10.4%	23.7%	0.0%	0.0%	10.4%	23.7%
1990	0.6%	31.8%	52.6%	62.0%	0.6%	31.8%	52.6%	62.0%
2000	77.2%	93.0%	103.6%	108.4%	77.2%	93.0%	103.6%	108.4%
2010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2020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2030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156.4%

〈부표 B-3〉 개혁대안의 총급여 감소율 종합비교

임용 연도	Ⅱ 안				Ⅲ 안			
	20년	25년	30년	33년	20년	25년	30년	33년
1960	-1.7%	-2.3%	-3.0%	-3.2%	-1.7%	-2.3%	-3.0%	-3.2%
1970	-6.8%	-7.9%	-10.3%	-11.8%	-6.8%	-7.9%	-10.3%	-11.8%
1980	-14.1%	-17.0%	-20.4%	-17.4%	-14.1%	-17.0%	-20.2%	-16.6%
1990	-19.2%	-18.0%	-14.5%	-10.2%	-19.0%	-16.2%	-11.3%	-6.2%
2000	-19.3%	-18.7%	-19.4%	-18.9%	-15.0%	-13.7%	-14.1%	-13.3%
2010	-24.6%	-26.3%	-22.2%	-19.8%	-17.5%	-19.6%	-15.0%	-12.2%
2020	-24.8%	-25.1%	-21.2%	-18.7%	-18.0%	-18.4%	-13.9%	-11.0%
2030	-25.3%	-25.7%	-21.6%	-19.2%	-18.6%	-19.0%	-14.4%	-11.6%

〈부표 B-4〉 개혁대안의 민간대비 생애소득증감률 종합비교

임용 연도	현 행				Ⅱ 안				Ⅲ 안			
	20년	25년	30년	33년	20년	25년	30년	33년	20년	25년	30년	33년
1988	0.5%	3.9%	3.2%	1.0%	-4.6%	-2.5%	-0.5%	-1.1%	-4.4%	-2.3%	-0.2%	-0.8%
1990	2.9%	6.4%	6.1%	3.5%	-3.8%	0.3%	1.5%	0.6%	-3.8%	0.4%	1.8%	0.9%
2000	9.2%	9.8%	8.2%	7.2%	2.9%	3.7%	2.3%	1.7%	3.4%	4.2%	2.1%	1.3%
2010	8.9%	9.6%	8.1%	7.4%	1.0%	1.0%	1.4%	1.6%	1.0%	0.5%	0.7%	0.9%
2020	8.1%	8.9%	7.6%	6.7%	0.4%	1.0%	1.4%	1.6%	-0.9%	-0.3%	0.0%	0.2%
2030	8.4%	9.0%	7.7%	7.0%	0.4%	1.0%	1.4%	1.7%	-1.2%	-0.6%	-0.2%	0.1%

참 고 문 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초연구』.
- 김재경 · 김정록. (200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 송인보 · 황정아. (2004).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2005). 『공무원연금제도 이원화방안 평가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개선안 정책효과 분석

2007. 1

1. 정책효과분석의 개요 / 95

2. 제도개선안의 연금재정 영향분석 / 96

3. 제도개선안의 개인편익 영향분석 / 107

4. 제도개선안의 선진화효과 / 118

5. 요 약 / 120

부록1 : 개선안 각 항목에 따른 재정추계 / 123

부록2 : 개선안에 따른 임용연도별 공무원편익의 변화 / 135

부록3 : 신규자 퇴직연금의 완전적립에 따른 정책효과 / 137

표 차 례

<표 1>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96
<표 2>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계.....	98
<표 3>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 전망.....	102
<표 4>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내역) 전망.....	103
<표 5>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 개인편익의 변화.....	107
<표 6> 예시 1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공무원 개인편익.....	112
<표 7> 예시 2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기간 25년 공무원 개인편익.....	114
<표 8> 제도개선안 내역.....	119

그림 차례

[그림 1]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이 : 과세대상보수.....	98
[그림 2]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GDP 대비.....	105
[그림 3]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과세대상보수 대비.....	106
[그림 4] 제도개선안 체계도.....	118

부표 차례

<부표 1> 연금보수의 확대와 전기간평균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123
<부표 2> 연금보수의 확대와 전기간평균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24
<부표 3> 비용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25
<부표 4> 비용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25
<부표 5>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26
<부표 6>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27
<부표 7>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28
<부표 8>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29
<부표 9> 연금연동률 변경 내역.....	130
<부표 10>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31
<부표 11>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32
<부표 12>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33
<부표 13>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134
<부표 14>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137
<부표 15>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계.....	139
<부표 16>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 전망.....	143
<부표 17>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내역) 전망.....	144
[부도 1] 연금보수의 변경과 전기간평균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124
[부도 2]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127
[부도 3]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129

[부도 4]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132
[부도 5]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134
[부도 6] 제도개선안에 따른 연금 감소율 추이	135
[부도 7] 제도개선안에 따른 총급여 감소율 추이	135
[부도 8] 제도개선안에 따른 민간 대비 생애소득 증감률 추이	136
[부도 9]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이: 과세대상보수	139
[부도 10]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GDP 대비	146
[부도 11]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과세대상보수 대비	147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개선안 정책효과 분석

1. 정책효과분석의 개요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정추계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이어 제도개선안의 재정효과, 형평성효과 및 선진화효과를 위주로 하여 개선안에 따른 정책효과를 종합·분석하고자 함.
- 개선안에 따른 재정추계결과 및 재정효과는 현행제도와 제도개선안의 연금재정 비교 및 정부부담규모 비교를 통해서 진행되며 개선안에 따른 공무원 편익결과와 형평성효과는 현행제도와 제도개선안의 공무원 항목별 편익수준 비교를 통해 파악됨.
- 한편, 재정분석의 정부부담이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관련 제반비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연금부담금, 연금적자보전금, 퇴직급여 보험료 혹은 지출액, 그 외 저축계정부담금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표시방법과 지표로서 2006년 말 기준 불변가치 및 GDP 대비 정부총부담액의 비율인 정부부담률을 주로 사용함.
- 형평성분석을 위해서는 연금, 퇴직급여, 저축계정 등의 각 급여, 총급여(보수 제외),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생애소득증감률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요구된 제반 시뮬레이션은 공무원연금연구센터의 ‘형평성평가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선진화효과는 국민연금과의 부분통합, 퇴직연금 및 보충연금제도 제공 등의 기능별 재구조화 그리고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연금제도로의 모색과정을 위주로 하여 평가함.

2. 제도개선안의 연금재정 영향분석

□ 수지규모 개선효과

〈표 1〉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5,164	58,897	3,734	0.9%	-2.1%
2010	51,320	72,367	21,047	4.5%	63,281	71,590	8,309	1.8%	-2.7%
2015	62,327	124,520	62,193	10.4%	85,091	120,316	35,225	5.9%	-4.5%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07,016	177,926	70,910	9.8%	-4.8%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120,133	243,457	123,324	14.4%	-5.3%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49,529	328,323	178,794	18.3%	-6.9%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64,949	347,627	182,678	16.3%	-9.7%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83,734	395,356	211,622	16.3%	-11.7%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206,405	452,302	245,898	16.5%	-12.5%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235,590	494,010	258,420	15.2%	-14.1%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68,414	535,082	266,669	13.7%	-17.0%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304,480	583,584	279,104	12.7%	-19.6%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345,957	642,985	297,028	11.9%	-20.9%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96,072	714,465	318,393	11.1%	-21.7%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 연금지출액은 2008년 5조 8,897억원, 2010년 7조 1,590억원, 2015년 12조 316억원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에는 71조 4,465억원에 달하여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에 비해 12.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제도개선안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02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지출액이 경미하게 감소하나, 그 이후 점차적으로 절약규모가 커져서,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43% 감소하였음.

- 반면, 연금수입액은 2008년 5조 5,164억원, 2010년 6조 3,281억원, 2015년 8조 5,09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2070년에는 39조 6,072억원에 머물러서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에 비해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보험료를 상향조정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에 말미암아, 이행기간인 초반부를 제외하면, 일정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2008년 수입액은 동년 지출액의 93.7%에 이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이 하락하여 2010년 88.4% 및 2015년 70.7%로 떨어지고 있으며, 2070년에 접어들어서는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전액은 2008년 3,734억원에서 2010년 8,309억원 및 2015년 3조 5,2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그 이후 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어 2030년에 17조 8,794억원 그리고 2070년 31조 8,393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2020년대 후반부까지는 연금수입의 증가로 보전액이 경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66%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연금지출은 2020년대 후반 이후 상당 규모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입은 전 기간에 걸쳐 경미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보전액은 202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여, 2070년의 경우, 개혁 전 보전액의 1/3 규모에 이르게 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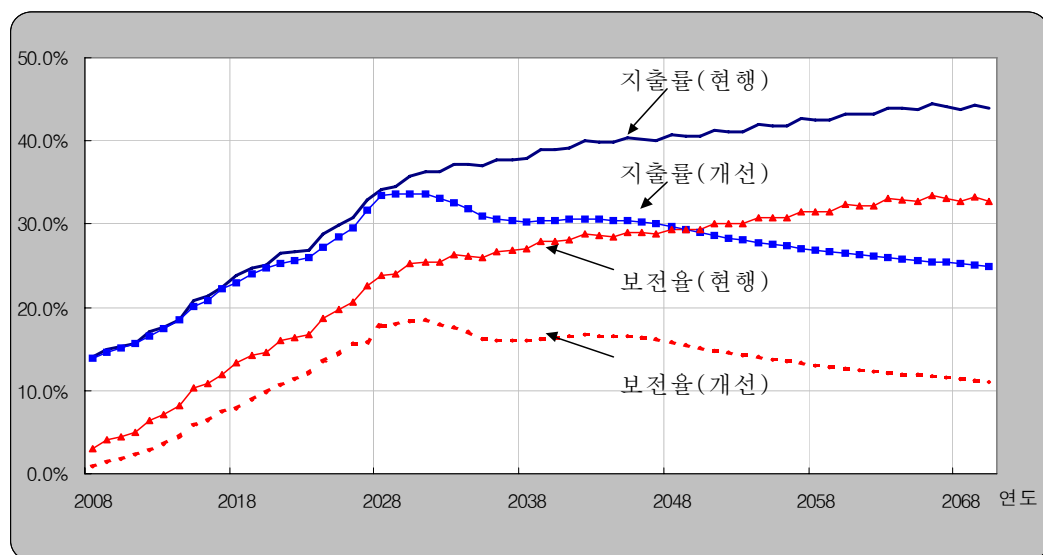
□ 재정지표 개선효과

〈표 2〉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계

(단위 : %)

연 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보전율
2008	24.6%	13.9%	13.0%	0.9%
2010	27.3%	15.2%	13.4%	1.8%
2015	35.8%	20.1%	14.2%	5.9%
2020	45.5%	24.7%	14.8%	9.8%
2025	54.7%	28.5%	14.1%	14.4%
2030	62.1%	33.7%	15.3%	18.3%
2035	64.8%	31.0%	14.7%	16.3%
2040	68.8%	30.4%	14.1%	16.3%
2045	73.7%	30.4%	13.9%	16.5%
2050	76.3%	29.0%	13.8%	15.2%
2055	78.4%	27.6%	13.8%	13.7%
2060	80.4%	26.5%	13.8%	12.7%
2065	82.3%	25.7%	13.8%	11.9%
2070	84.4%	24.9%	13.8%	11.1%

[그림 1]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이 : 과세대상보수



- 장기재정동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연금정보를 제도 운영자 및 정책 입안가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추계결과를 지표화할 필요가 있음.
 - 전망지표로 부양률,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추가부담률(보전율), 기금적립률 등이 존재함.
 - 재직공무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부양률은 연금재정의 선행지표로서 재정부담의 간접적인 척도 역할을 담당하며, 과세대상보수총액 대비 연금재정수입액, 연금재정지출액 및 보전액으로 각각 정의되는 수입률, 지출률 및 보전율을 통해서 재정수지의 균형 여부 및 균형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족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재정추세(financial trend)를 진단할 수 있음.
 - 한편, 연금재정지출 대비 연금재정수입의 비율로 정의되는 수지율은 연금재정수입의 규모를 지출에 대비하여 가늠하는 지표로서 보전율과 유사한 개념이며, 연금재정지출액 대비 연금기금의 비율로 정의되는 기금적립률은 연금기금만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최대화 연도 및 고갈시점을 알려줌.
 - 이 중에서, 보전율이야말로 장기재정추계의 최종 결과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성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정부의 부담을 시간에 걸쳐 평준화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진작시키거나 적립지향적인 재정방식으로 이행하는 정책실험(policy simulation)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지출률 및 보전율 추계결과를 위주로 하여 제도 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지출률추계 결과
 -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 13.9%에 불과하지만 202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30년 33.7% 정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면모를 나타내어, 2070년의 경우, 24.9%에 달하여 초기연도 13.9%에 비해 1.8배 상승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세는, 한편으로는, 퇴직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더 오래 사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연금수급자 구조가 아직 유년상태라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이행기간의 적용으로 제도개선효과가 분명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중반기부터의 완만한 하락세는, 한편으로 연금수급자구조 역시 노령화되면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연금지급률 인하, 전 기간평균보수 적용, 지급개시연령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금재정지출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임.
- 제도개선효과로는, 1) 제도개선사항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 물가와 보수의 조합에 의한 연금연동, 최저가입기간 하향조정 등의 지출증가요인이 겹치는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지출률 하락이 상당히 저조하지만, 2)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출률 하락이 확대되어, 2070년의 경우, 44.0%에서 19.1% pt 하락하여 24.9%에 머물게 됨.

○ 보전율추계 결과

- 보전율은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점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표로서 공무원연금의 장·단기 재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재정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예컨대, 보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방식이 균등부담원칙의 각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 보전율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 0.9%에서 시작하여 2010년 1.8% 및 2015년 5.9%로 경미하게 상승, 점차 급속하게 진행되어 2030년 18.3% 정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면모를 나타내어, 2070년의 경우, 11.1%에 불과해짐.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세는, 앞서의 지출률 추세와 흡사하게, 한편으로는, 퇴직

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연수급자가 더 많이 유입되고 더 오래 사는 반면에 연금수급자 구조가 아직 유년상태라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이행기간의 적용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발휘되지 않기 때문임.

- 중반기부터의 완만한 하락세는, 앞서의 지출률 추세와 흡사하게, 한편으로 연금수급자구조 역시 노령화되면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연금지급률 인하, 전기간평균보수 적용, 지급개시연령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연금재정지출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임.
- 제도개선효과로는, 1) 제도개선사항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 물가와 보수의 조합에 의한 연금연동, 최저가입기간 하향조정 등의 지출증가요인이 겹치는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보전을 하락이 다소 경미하지만, 2)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보전을 하락이 확대되어, 2070년의 경우, 32.8%에서 21.7% pt 하락하여 11.1%에 머물게 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지출률의 경우, 제도 개선 후 20년까지는 하락폭이 미미하나, 203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개선되어 2070년 경 4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보전율의 경우, 제도 개선 직후부터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030년대 초반 이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음. 2070년 경 33% 수준에서 11%로 하락하여 개혁 전의 1/3에 머무르고 있음.

□ 정부부담 개선효과

- 제도개선안은,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조정하는 반면 과세대상소득으로의 연금산정 기준보수 확대, 법정퇴직금수준으로의 퇴직수당 상향조정, 신규임용자 저축계정 제공 등과 같은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따라서, 제도개선안의 재정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 재정효과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즉, 퇴직연금·저축계정 부담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연금보수 범위 확대에 의한 정부재정의 증가규모와 공무원연금 수급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감소규모를 비교하는 가운데 제도개선안의 재정효과를 검토하여야 함.
-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의 경우, 2008년 3조 1,166억원, 2010년 3조 9,864억원에서 2030년 25조 4,25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51조 8,560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3〉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1,166	10,699	39	41,903	91.7%
2010	46,552	13,385	59,937	39,864	15,871	222	55,957	93.4%
2015	93,366	25,074	118,441	77,913	36,047	887	114,847	97.0%
2020	143,646	32,879	176,525	124,832	55,019	2,039	181,890	103.0%
2025	211,991	44,496	256,487	183,919	83,190	3,734	270,843	105.6%
2030	298,118	50,644	348,762	254,258	108,614	6,143	369,015	105.8%
2035	353,767	46,462	400,229	265,941	112,889	8,948	387,778	96.9%
2040	435,784	56,971	492,755	304,388	149,878	11,918	466,184	94.6%
2045	517,196	63,885	581,082	350,130	173,582	14,651	538,363	92.6%
2050	595,286	77,662	672,948	377,414	211,339	17,032	605,785	90.0%
2055	706,527	93,468	799,994	402,265	255,126	19,421	676,811	84.6%
2060	834,659	108,740	943,399	432,943	297,464	22,039	752,445	79.8%
2065	959,762	119,666	1,079,428	471,846	330,274	25,058	827,178	76.6%
2070	1,103,284	128,371	1,231,655	518,560	353,433	28,694	900,687	73.1%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표 4〉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내역)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개선							
	정부 부담금	퇴직 수당	정부 보전액	계(a)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보충연 금 (신규 공무원)	계(b)
					정부부담금		정부보전액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2008	23,205	10,033	12,442	45,680	27,241	191	4,106	-372	10,699	0	39	41,903
2010	25,505	13,385	21,047	59,937	30,378	1,177	10,483	-2,174	15,759	112	222	55,957
2015	31,172	25,074	62,194	118,441	37,037	5,651	45,168	-9,943	35,185	862	887	114,847
2020	37,990	32,879	105,656	176,525	39,639	14,283	96,680	-25,770	53,181	1,838	2,039	181,890
2025	43,546	44,496	168,445	256,487	34,438	26,157	170,972	-47,649	79,469	3,720	3,734	270,843
2030	52,425	50,644	245,693	348,762	32,437	43,028	257,209	-78,415	100,038	8,576	6,143	369,015
2035	62,219	46,462	291,548	400,229	20,585	62,679	295,390	-112,712	88,556	24,333	8,948	387,778
2040	72,449	56,971	363,335	492,755	9,281	83,485	351,745	-140,122	77,287	72,591	11,918	466,184
2045	84,650	63,885	432,547	581,082	1,608	102,624	392,713	-146,815	35,735	137,847	14,651	538,363
2050	96,239	77,662	499,047	672,948	0	118,994	368,537	-110,117	1,597	209,742	17,032	605,785
2055	109,077	93,468	597,449	799,994	0	135,596	309,581	-42,912	0	255,126	19,421	676,811
2060	122,719	108,740	711,940	943,399	0	153,839	237,680	41,424	0	297,464	22,039	752,445
2065	139,312	119,666	820,450	1,079,428	0	174,818	160,434	136,595	0	330,274	25,058	827,178
2070	161,250	128,371	942,034	1,231,655	0	200,167	89,044	229,350	0	353,433	28,694	900,687

- 제도개선효과로는,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의 경우, 정부보험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전액이 개혁 전에 비해 점차 크게 절약되어,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은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경미하게 감소하나, 그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의 경우, 52조억원에 이르러 개혁 전의 50%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반면, 퇴직급여 관련 정부부담의 경우, 2008년 1조 699억원, 2010년 1조 5,871억원에서 2030년 10조 8,61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35조 3,433억원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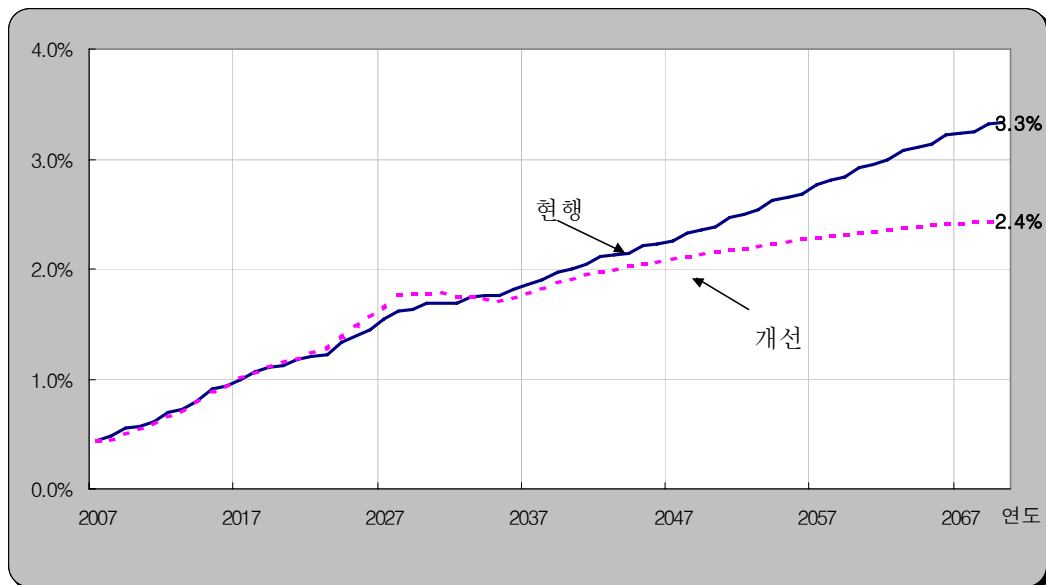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제도개선효과로는,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재직자의 미래기간 및 신규자에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 2070년의 경우, 개혁 전에 비해 175.3%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신규자 저축계정의 신설로 말미암아 정부부담이 2008년 39억원, 2010년 222억원 규모에서 2030년 6,14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2조 8,694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제도개선안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2008년 4조 1,903억원, 2010년 5조 5,957억원 규모에서, 2020년 18조 1,890억원, 2030년 36조 9,0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90조 687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로는, 1)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특히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정부부담이 감소하지만, 2) 그 이후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는, 제도개선안의 장기적인 이행기간, 법정퇴직금 수준으로의 퇴직급여 상향조정, 신규자 저축계정 제공 등으로 인해 개선 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경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3) 203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압도하면서 감소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함.
- 2070년의 경우, 개혁 전 정부부담 123조억원의 73% 수준인 90조억원이 되어 단해절약규모가 33조억원에 달하게 됨.
- 물론,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부과식이 아니라 완전적립식으로 할 경우, 부과식에 비해 추계 초·중반 기간에 걸쳐 정부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신 후반기의 재정절감 정도 역시 경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누적정부부담액이 204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현행제도에 비해 작아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에 따른 장기재정절감효과는 2040년대 초반에 가능해짐.
- 이를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3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2043년에 이르러 누적정부부담액이 개혁 전과 일치하는 장기재정균형연도에 도달됨.

□ 정부부담지표 개선효과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초기를 제외한 2020년대 후반까지는 현행 제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반면 2020년대 중반부터는 경미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대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70년 현행 3.3%에 비해 0.9% pt 하락한 2.4%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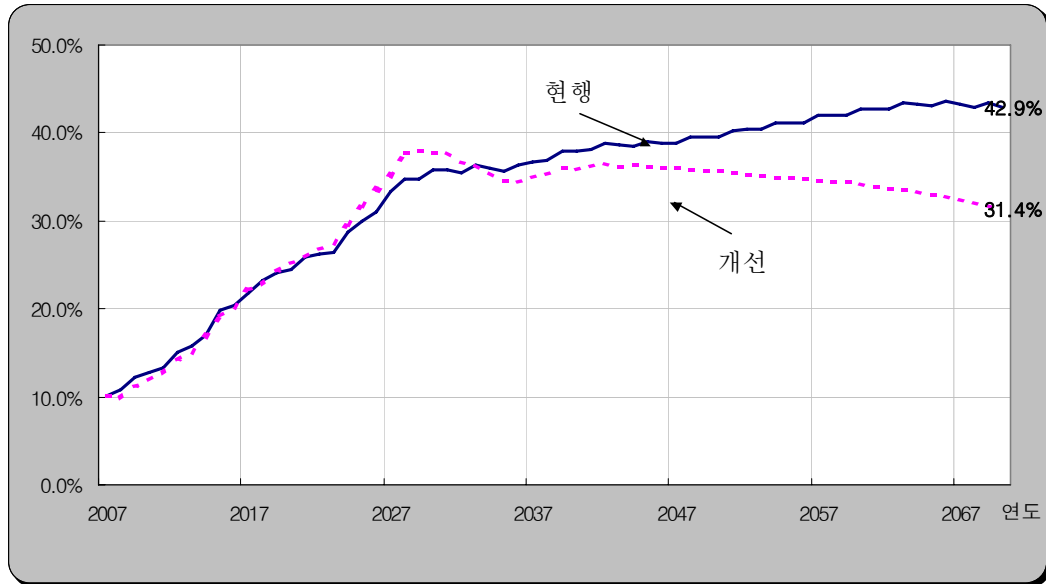
[그림 2] 제도개선안에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GDP 대비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특히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정부부담률이 하락하지만,
- 그 이후부터 2030년대 후반까지는, 제도개선안의 장기적인 이행기간, 법정퇴직금 수준으로의 퇴직급여 상향조정, 신규자 저축계정 제공 등으로 인해 정부부담률이 개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3) 203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압도하면서 정부부담률이 다시 확대·하락하기 시작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그림 3] 제도개선안에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과세대상보수 대비



- 과세대상 보수총액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초기를 제외한 2020년대 이전까지는 현행 제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반면, 2020년대에는 경미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33년에 이르러 동일 수준인 36.3% 그리고 그 이후 상당 폭 낮아져 2070년 현행 42.9%에 비해 11.5% pt 하락한 31.4%에 머물게 됨.

□ 제도개선안의 전반적 재정 영향

-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때, 1) 연금재정에서는 수급구조 조정으로 정부담이 감소하나, 2) 퇴직급여재정 및 저축계정재정에서는 정부부담이 증가하여, 3) 정부총부담은,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개혁 전과 유사하거나 경미하게 많은 반면, 그 이후에 접어들어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조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부담감소현상이 확대·진행됨.

- 연금재정의 경우, 1) 제도 개선안의 장기적 이행기간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를 통해 202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절감효과가 경미하며, 2) 그 이후 접어들어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에 이르러, 보전액이 개혁 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짐.
- 정부총부담의 경우, 1) 초반을 제외한 2033년까지는 연평균 0.3조원(현재가치 기준) 규모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나, 2) 2030년대 중반부터 재정이 확대·절감되기 시작하여 2043년에 이르러 장기재정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 확대되며, 3) 전체적으로 볼 때, 2070년까지 76.8조원 감소가 가능하며, 2070년 단해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2.4%로 0.9% pt 하락하고 있음.
- 결국, 제도개선안의 재정절약효과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초)장기적인 측면에 찾아볼 수 있음.
 - 물론,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부과식이 아니라 완전적립식으로 할 경우, 후반기의 재정절감 규모가 경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제도개선안의 개인편익 영향분석

〈표 5〉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 개인편익의 변화

연 도	20년			25년		
	연금액변화	급여총액	생애소득	연금액변화	급여총액	생애소득
1960	-0.6%	-0.6%		-0.8%	-0.8%	
1970	-2.8%	-2.8%		-3.7%	-3.3%	
1980	-7.1%	-6.6%		-8.6%	-7.9%	
1990	-11.4%	-10.5%	-0.8%	-14.0%	-10.5%	2.5%
2000	-24.3%	-15.7%	2.8%	-25.9%	-15.5%	3.2%
2010	-54.4%	-33.9%	-3.9%	-56.2%	-35.3%	-3.8%
2020	-55.1%	-34.0%	-4.5%	-55.5%	-34.2%	-4.0%
2030	-55.4%	-34.4%	-4.4%	-55.8%	-34.7%	-4.0%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공무원 연금급여 및 생애소득의 변화

- 개정공무원연금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고 연금액이 상당 폭 감소하는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미래재직기간)으로 퇴직급여가 증가함.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급여변화를 임용연도별 재직기간별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금액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대비 1960년 임용 20년(25년) 재직 공무원 0.6%(0.8%), 1980년 7.1%(8.6%), 2000년 24.3%(25.9%) 및 개혁전년도인 2007년 38.3%(42.3%) 감소함.
 - 반면, 퇴직급여의 경우, 임용시점이 뒤로 갈수록 증가의 폭이 확대되어, 현행 퇴직수당 대비 개혁전년도인 2007년 임용 20년 재직기간 공무원 144.4% 및 25년 재직기간 공무원 146.8% 증가함.
 - 연금급여 및 퇴직급여의 합계인 총급여의 경우, 현행 총급여(연금+퇴직수당) 대비 1960년 임용 20년(25년) 재직공무원 0.6%(0.8%), 1980년 6.6%(7.9%), 2000년 15.7%(15.5%) 및 개혁전년도인 2007년 22.4%(25.4%) 감소하여 연금액 감소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퇴직급여 증가가 연금액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때문임.
- 한편, 민간과의 형평성 비교차원에서 민간 생애소득(보수+국민연금+퇴직금) 대비 2007년 임용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10.1% 많았으나 제도개선안 적용에 따라 0.6% 적어짐.
 - 25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10.8% 많았으나 제도개선안 적용에 따라 1.2% 적어짐.
 - 30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8.9%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6% 적어짐.

- 33년 재직 2007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8.0%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0.4% 적어짐.

□ 제도개선안에 따른 신규임용공무원 연금급여 및 생애소득의 변화

- 개정공무원연금의 급여는 (개정)국민연금 수준으로 감소하고 보험료는 동일해지는 반면, 법정퇴직금 상당 퇴직급여(2층)과 저축계정급여(3층)가 제공됨.
- 대안에 따른 재직공무원의 급여변화를 임용연도별 재직기간별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연금액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 급여 대비 2010년 임용 20년(25년) 재직 신규자 54.4%(56.2%), 2030년 55.4%(55.8%) 감소함.
 - 반면, 퇴직급여의 경우, 현행 퇴직수당 대비 20년과 25년 재직기간 공무원 모두 156.4% 증가함.
 - 연금급여,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의 합계인 총급여의 경우, 현행 총급여(연금+퇴직수당) 대비 2010년 임용 20년(25년) 재직 신규자 33.9%(35.3%), 2030년 34.4%(34.7%) 감소하여 연금액 감소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 증가가 연금액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때문임.
- 한편, 민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생애소득(보수+국민연금+퇴직금) 대비 2010년 임용 공무원 생애소득의 많고 적은 정도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년 재직 2010년 임용 신규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9.8% 많았으나 제도개선안 적용에 따라 3.9% 적어짐.
 - 25년 재직 2010년 임용 신규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10.6% 많았으나 제도개선안 적용에 따라 3.8% 적어짐.
 - 30년 재직 2010년 임용 신규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8.9%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3.5% 적어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33년 재직 2010년 임용 신규자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7.9% 많았으나 대안 적용에 따라 3.3% 적어짐.

□ 예시 1 : 재직기간 20년의 임용연도별 공무원 개인편익

- 분석대상은 1989년, 1993년, 1998년, 2008년에 임용되어 각각 20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분석가정으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은 장기 재정전망 가정치를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보험료와 급여액은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지급산식 등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금액을 구한 후 2006년 현재가치로 할인하였음.
- 장기재정추계 할인율의 특성 상, 항목별 현재가치가,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더 적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989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1년인 20년 재직 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7,201만원에서 7,289만원으로 1.2%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3억 6,023만원에서 3억 1,695만원으로 12.0% 감소, 퇴직금은 현행 2,805만원에서 2,580만원으로 8.0% 감소하여²⁰⁾,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3억 8,828만원에서 3억 4,275만원으로 11.7%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350만원에서 1,331만원으로 1.5% 감소, 수익비는 현행 5.0에서 4.3으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9.3%에서 10.6%로 상승함.

20) 개혁 후 미래 재직기간에 대해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에도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은 20년 이상과 20년 미만에 적용되는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즉, 미래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증가하지만, 과거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하향조정되는 과정에서 퇴직수당급여가 감소하게 되며, 상기의 경우, 감소폭이 증가폭을 압도하고 있음.

- 1993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5년인 20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7,008만원에서 7,582만원으로 8.2%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3억 4,330만원에서 2억 9,012만원으로 15.5% 감소, 퇴직금은 현행 2,790만원에서 3,532만원으로 26.6%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3억 7,120만원에서 3억 2,551만원으로 12.3%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366만원에서 1,275만원으로 6.6% 감소, 수익비는 현행 4.9에서 3.8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9.4%에서 11.6%로 상승함.
- 1998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10년인 20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6,928만원에서 8,379만원으로 21.0%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3억 878만원에서 2억 4,210만원으로 21.6% 감소, 퇴직금은 현행 2,803만원에서 4,644만원으로 65.7%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는 현행 3억 3,608만원에서 2억 8,854만원으로 14.3%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376만원에서 1,183만원으로 14.0% 감소, 수익비는 현행 4.5에서 2.9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10.3%에서 14.5%로 상승함.
- 2008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20년인 신규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6,910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9.6%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2억 8,531만원에서 1억 3,908만원으로 52.5% 감소, 퇴직금은 현행 2,853만원에서 7,940만원으로 178.3%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는 현행 3억 2,128만원에서 2억 1,849만원으로 32.0%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341만원에서 761만원으로 43.2% 감소, 수익비는 현행 4.2에서 1.8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10.8%에서 17.3%로 상승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6〉 예시 1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공무원 개인편익

(단위 : 천원, 2006년 현가)

개혁후 재직기간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1년	보험료(a)		72,008	72,892	1.2%
	퇴직소득 (d)	연금(b)	360,227	316,947	-12.0%
		퇴직금(c)	28,052	25,804	-8.0%
		계	388,279	342,751	-11.7%
	첫 연금연액		13,503	13,306	-1.5%
	수익비(b/a)		5.0	4.3	
	본인부담비율(a/2÷d)		9.3%	10.6%	
5년	보험료(a)		70,081	75,817	8.2%
	퇴직소득 (d)	연금(b)	343,302	290,192	-15.5%
		퇴직금(c)	27,895	35,315	26.6%
		계	371,197	325,507	-12.3%
	첫 연금연액		13,656	12,748	-6.6%
	수익비(b/a)		4.9	3.8	
	본인부담비율(a/2÷d)		9.4%	11.6%	
10년	보험료(a)		69,275	83,791	21.0%
	퇴직소득 (d)	연금(b)	308,782	242,104	-21.6%
		퇴직금(c)	28,026	46,439	65.7%
		계	336,808	288,543	-14.3%
	첫 연금연액		13,759	11,832	-14.0%
	수익비(b/a)		4.5	2.9	
	본인부담비율(a/2÷d)		10.3%	14.5%	
20년	보험료(a)		69,103	75,725	9.6%
	퇴직소득 (d)	연금(b)	292,748	139,078	-52.5%
		퇴직금(c)	28,531	79,407	178.3%
		계	321,279	218,485	-32.0%
	첫 연금연액		13,412	7,612	-43.2%
	수익비(b/a)		4.2	1.8	
	본인부담비율(a/2÷d)		10.8%	17.3%	

- 20년 재직자의 경우, 제도개선 퇴직소득(연금수급액+퇴직급여+저축계정)이 1989년 임용자(개혁 직전 퇴직자) 11.7% 감소, 1993년 임용자(개혁 후 5년 재직자) 12.3% 감소, 1998년 임용자(개혁 후 10년 재직자) 14.3% 감소, 2008년 임용자(개혁 후 20년 재직신규임용자) 32.0% 감소하여,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감소 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됨.
- 한편, 수익비는, 1989년 임용자(개혁 직전 퇴직자) 4.3, 1993년 임용자(개혁 후 5년 재직자) 3.8, 1998년 임용자(개혁 후 10년 재직자) 2.9, 2008년 임용자(개혁 후 20년 재직신규임용자) 1.8로,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점차적으로 하락함.

□ 예시 2 : 재직기간 25년의 임용연도별 공무원 개인편익

- 분석대상은 1984년, 1988년, 1993년, 2003년, 2008에 임용되어 각각 20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분석가정으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은 장기재정전망 가정치를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보험료와 급여액은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지급산식 등을 적용하여 각 연도의 금액을 구한 후 2006년 현재가치로 할인하였음.
- 장기재정추계 할인율의 특성 상, 항목별 현재가치가,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더 적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984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1년인 25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1억 365만원에서 1억 466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5억 1,389만원에서 4억 6,300만원으로 9.9% 감소, 퇴직금은 현행 4,003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6.3%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5억 5,392만원에서 5억 554만원으로 8.7%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885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0.4% 감소, 수익비는 현행 5.0에서 4.4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9.4%에서 10.4%로 상승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표 7〉 예시 2 :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직기간 25년 공무원 개인편익

(단위 : 천원, 2006년 현가)

개혁후 재직기간	구 분		현 행	개 선	증감률
1년	보험료(a)		103,652	104,661	1.0%
	퇴직소득 (d)	연금(b)	513,890	463,000	-9.9%
		퇴직금(c)	40,032	42,536	6.3%
		계	553,922	505,536	-8.7%
	첫 연금연액		18,851	18,782	-0.4%
	수익비(b/a)		5.0	4.4	
	본인부담비율(a/2÷d)		9.4%	10.4%	
5년	보험료(a)		98,693	105,380	6.8%
	퇴직소득 (d)	연금(b)	490,608	427,182	-12.9%
		퇴직금(c)	39,808	52,260	31.3%
		계	530,416	479,442	-9.6%
	첫 연금연액		18,816	18,592	-1.2%
	수익비(b/a)		5.0	4.1	
	본인부담비율(a/2÷d)		9.3%	11.0%	
10년	보험료(a)		96,042	113,055	17.7%
	퇴직소득 (d)	연금(b)	445,854	378,627	-15.1%
		퇴직금(c)	39,995	61,016	52.6%
		계	485,849	439,643	-9.5%
	첫 연금연액		19,101	17,759	-7.0%
	수익비(b/a)		4.6	3.3	
	본인부담비율(a/2÷d)		9.9%	12.9%	
20년	보험료(a)		95,842	134,245	40.1%
	퇴직소득 (d)	연금(b)	418,182	275,272	-34.2%
		퇴직금(c)	40,716	88,266	116.8%
		계	458,898	363,538	-20.8%
	첫 연금연액		18,940	14,594	-22.9%
	수익비(b/a)		4.4	2.1	
	본인부담비율(a/2÷d)		10.4%	18.5%	
25년	보험료(a)		95,574	106,626	11.6%
	퇴직소득 (d)	연금(b)	407,190	180,175	-55.8%
		퇴직금(c)	40,562	112,651	177.7%
		계	447,752	292,826	-34.6%
	첫 연금연액		18,656	10,396	-44.3%
	수익비(b/a)		4.3	1.7	
	본인부담비율(a/2÷d)		10.7%	18.2%	

- 1988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5년인 25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9,869만원에서 1억 538만원으로 6.8%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4억 9,061만원에서 4억 2,718만원으로 12.9% 감소, 퇴직금은 현행 3,981만원에서 5,226만원으로 31.3%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5억 3,042만원에서 4억 7,944만원으로 9.6%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882만원에서 1,859만원으로 1.2% 감소, 수익비는 현행 5.0에서 4.1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9.3%에서 11.0%로 상승함.
- 1993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10년인 25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9,604만원에서 1억 1,306만원으로 17.7%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4억 4,585만원에서 3억 7,863만원으로 15.1% 감소, 퇴직금은 현행 4,000만원에서 6,102만원으로 52.6%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4억 8,585만원에서 4억 3,964만원으로 9.5%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910만원에서 1,776만원으로 7.0% 감소, 수익비는 현행 4.6에서 3.3으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9.9%에서 12.9%로 상승함.
- 2003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20년인 25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9,584만원에서 1억 3,425만원으로 40.1%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4억 1,818만원에서 2억 7,527만원으로 34.2% 감소, 퇴직금은 현행 4,072만원에서 8,827만원으로 116.8%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4억 5,890만원에서 3억 6,354만원으로 22.9%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894만원에서 1,459만원으로 22.9% 감소, 수익비는 현행 4.4에서 2.1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10.4%에서 18.5%로 상승함.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2008년 임용, 개혁 후 재직기간이 25년인 25년 재직공무원 편익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9,557만원에서 1억 663만원으로 11.6% 증가한 반면, 연금은 현행 4억 719만원에서 1억 8,018만원으로 55.8% 감소, 퇴직금은 현행 4,056만원에서 1억 1,265만원으로 177.7% 증가하여, {연금+퇴직금} 합계액은 현행 4억 4,775만원에서 2억 9,283만원으로 44.3% 감소함.
- 한편, 첫연금연액은 현행 1,866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44.3% 감소, 수익비는 현행 4.3에서 1.7로 하락 그리고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10.7%에서 18.2%로 상승함.
- 25년 재직자의 경우, 제도개선 퇴직소득(연금수급액+퇴직급여+저축계정)이 1984년 임용자(개혁 직전 퇴직자) 8.7% 감소, 1988년 임용자(개혁 후 5년 재직자) 9.6% 감소, 1993년 임용자(개혁 후 10년 재직자) 9.5% 감소, 2003년 임용자(개혁 후 20년 재직자) 20.8% 감소, 2008년 임용자(개혁 후 25년 재직 신규임용자) 34.6% 감소하여,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감소 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됨.
- 한편, 수익비는, 1984년 임용자(개혁 직전 퇴직자) 4.4, 1988년 임용자(개혁 후 5년 재직자) 4.1, 1993년 임용자(개혁 후 10년 재직자) 3.3, 2003년 임용자(개혁 후 20년 재직자) 2.1, 2008년 임용자(개혁 후 25년 재직 신규임용자) 1.7로서,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점차적으로 하락함.

□ 제도개선안의 전반적 형평성 영향

-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때, 1) 연금급여는 감소하고, 2)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신규자의 경우)가 증가하는 반면, 3) 연금급여 감소효과가 기타급여 증가효과를 압도하여, 총급여는 전체적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수익비,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생애소득증감율 등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하향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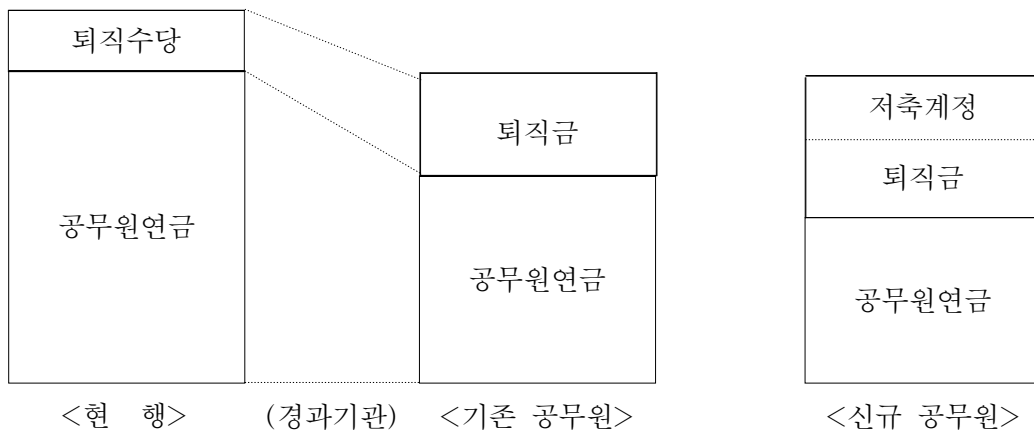
- 한편, 재직기간 및 편익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신규자의 편익 감소 폭이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감소(혹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2000년 임용 재직자의 경우, 연금급여가 24~27% 정도 감소하는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의 퇴직급여로 인해 총급여는 15~16%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생애소득은 민간 생애소득에 대비할 때, 현행제도의 경우, 7~10% 많은 반면, 개선안 적용 시 0~3% 많게 됨.
 - 2030년 임용 신규자의 경우, 연금급여가 50~55% 감소하는 반면, 법정 퇴직금 수준의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으로 인해 총급여는 29~34% 감소하여, 생애소득은 민간 생애소득에 대비할 때, 현행제도의 경우, 7~9% 많은 반면, 개선안 적용 시 3~4% 오히려 적어짐.
 - 급여 감소와 관련하여,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그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제도의 정책조정 연동방식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며, 수익비, 균형보험료율 등과 같은 편익지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공무원 개인편익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1) 연금급여 하향조정, 퇴직급여 상향조정 및 저축계정 제공(신규자)을 통해 총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신규자에 비해 재직자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한편, 재직자의 경우,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개선안에 따른 편익 감소 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개선안 적용에 따라 임용연도별 공무원의 형평성이 손상되지 않고 있음.

4. 제도개선안의 선진화효과

□ 보장체계의 다층구조화

- 제도개선안은 연금체계의 이원화에 기반을 둔 다층구조화(신규임용 공무원의 3층 구조 및 재직공무원의 2층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재직자의 경우, 개정공무원연금(1층), 결합형 퇴직금제도(2층, 과거재직기간 퇴직수당 및 미래재직기간 법정퇴직금 수준 부과식 퇴직연금)에 가입함.

[그림 4] 제도개선안 체계도



- 신규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의 개정공무원연금(1층), 법정퇴직금 수준 부과식 퇴직연금(2층) 및 보충연금으로서의 저축계정(3층, 공무원 및 정부 1.0% 부담)에 가입함.
- 결국, 다층구조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성숙에 따른 노령화 및 정부 미래 부담 증가에 따른 제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와 보충연금제도(저축계정)를 신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에 완충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연금제도의 합리화

-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 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신설 등으로 종래의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보충연금제도 등의 다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제공함.

〈표 8〉 제도개선안 내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공 무 원 연 금	연금보수 (이행기간)	보수월액 ※ 과세소득 65%	과세소득 (20년) ²¹⁾	과세소득
	급여산정기초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	제도개선 이후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비용부담률	공무원 8.5% 정 부 8.5%	공무원, 정부 5.525→6.55(08)→8.5%(18) ※ '09년부터 매년마다 0.195%씩 ↑ (현행 8.5%⇒ 13.1%)	공무원, 정부 4.5%→6.45%(18) ※ '09년부터 매년마다 0.195%씩 ↑ (현행 6.9%→10.62%)
	급여산식 (33년 기준)	(재직기간×2%)+10% (76%)	재직기간×1.7% (56.1%)	재직기간×1.25% (41.25%)
	재직기간 상한	33년	40년	상한없음
	지급개시연령	60세 (52→60세)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연금액 조정	CPI+정책조정 (매 3년) + 직급간 역전보전	'08 ~ '17 : CPI×70% + 보수인상률×30% '18 ~ '27 : CPI×80% + 보수인상률×20% '28 ~ '37 : CPI×90% + 보수인상률×10% '38 ~ : CPI×100% ※ 직급간 역전보전 폐지	CPI(소비자물가변동률)
	연금수급요건	재직기간 20년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폐 지>	10년 미만 퇴직자 가칭 “반환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산식	공무원연금×70%	공무원연금×70%	공무원연금×60%
	장애(유족)연금 (비공무상)	<신 설>	비공무상 장애·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 장애연금 : 1~3급, 4급은 일시금 - 유족연금 : 10년 미만 재직 사망	
	소득대체율(a)	45.5%	35.7%(△9.8%)	26.25%(△19.25%)
퇴 직 금		퇴직수당 ※ 퇴직금의 30~40% 수준	평균임금 30일분×재직기간(매년 평균임금 연액의 8.3% 적립) ※ 55세이후 지급, 일시금 또는 연금(5년, 10년, 15년, 종신 등 선택)	
소득대체율(b)		5.85%	15.0%(+9.15%)	
저 축 계 정		<신 설>	공무원, 정부 : 각 1%	
소득대체율(c)			3.614%	
종합 소득대체율(a+b+c)		51.35%	50.7%(△0.8%)	44.864%(△6.486%)

21) 80% → 100%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또한, 연금수급권 확보 용이성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과 반환일시금 신설은 직업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공적연금 간 및 퇴직연금 간 연계제도의 신설은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개선안에서 제외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요약

□ 제도개선안의 재정 영향

- 연금재정의 경우, 1) 개선안의 장기적 이행기간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를 통해 202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절감효과가 경미한 반면, 2) 그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에 이르러, 보전액이 개혁 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짐.
- 정부총부담의 경우, 1) 연금재정에서는 크게 감소하나(특히 장기에 그러함) 퇴직급여재정 및 저축계정재정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며, 3) 전체적으로는,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변화가 없거나 경미하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한편, 4) 그 이후,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조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부담감소현상이 확대·진행됨.
 - 즉, 초반을 제외한 2032년까지는 연평균 0.3조원(현재가치 기준) 추가소요가 발생하나, 2) 2033년부터 재정이 확대·절감되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2070년까지) 83.8조원(현재가치 기준) 감소하며, 3) 2070년 단해의 경우,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이 2.4%로 0.9% pt 하락하여 개혁 전의 70% 수준에 이르게 됨.
 - 물론,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부과식이 아니라 완전적립식으로 할 경우, 부과식에 비해 추계 초·중반 기간에 걸쳐 정부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신 후반기의 재정절감 정도 역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안의 형평성 영향

- 급여항목 차원에서 볼 때, 1) 연금급여는 감소하고, 2)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신규자의 경우)가 증가하는 반면, 3) 연금급여 감소효과가 기타급여 증가효과를 압도하여, 공무원의 총급여는 전반적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수익비,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생애소득증감율 등에 있어서도 점진적 하향현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재직기간 및 지표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1) 신규자의 편익 감소 폭이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재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어 공무원의 세대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음.²²⁾

□ 제도개선안의 선진화 영향

- 연금체계의 이원화에 기반을 둔 다층구조화(신규임용 공무원의 3층 구조 및 재직공무원의 2층 구조)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성숙에 따른 노령화 및 정부 미래부담 증가의 제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2) 퇴직연금제도와 보충연금제도(저축계정)를 신규임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에 완충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 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신설 등으로 단기 재직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종래의 인사·정책적

22) 급여 감소와 관련하여,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그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제도의 정책조정 연동방식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며, 수익비, 균형보험료율 등과 같은 편익지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공무원 개인편익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차원 연금운영에서 탈피하여 직업 간 이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개선안의 적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 결과가 가능해짐.

- 첫째, 초·중기적으로 재정부담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경미하게 증가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보전액이 상당한 규모로 감소하는 등, 장기 재정절감효과가 지대하여, 정부부담 관련 국민 세대간 형평성이 크게 증진됨.
- 둘째, 공무원 편익이 감소됨에 따라 민·관 편익 격차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편익 감소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으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음.
- 셋째, 다층구조화를 통해 노령화에 따른 위험대처가 용이해지고 있으며, 단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됨.

부 록 1 : 제도개선안 각 항목에 따른 재정추계

□ 연금보수의 확대와 전기간평균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부표 1〉 연금보수의 확대와 전기간평균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46,806	61,717	14,911	3.5%	0.6%
2010	51,320	72,367	21,047	4.5%	51,320	77,581	26,261	5.6%	1.1%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2,327	141,299	78,972	13.2%	2.8%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519	212,701	137,182	19.0%	4.4%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86,426	305,771	219,345	25.7%	6.0%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03,980	424,613	320,633	32.9%	7.7%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23,344	496,392	373,048	33.2%	7.2%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3,570	597,955	454,385	35.0%	7.0%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67,691	696,679	528,988	35.5%	6.4%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90,604	788,633	598,029	35.1%	5.8%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15,986	914,580	698,594	36.0%	5.2%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42,956	1,056,634	813,678	36.9%	4.6%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75,762	1,198,107	922,345	36.8%	4.1%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19,133	1,367,568	1,048,435	36.5%	3.7%

- 현행 보전율에 비해 더 높아지되, 적용 이후부터 20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70년 현행 보전율 33%에 비해 4% pt 정도 높은 37%에서 안정화됨.
- 즉,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에 의한 연금 증가 폭이 전기간평균제로 인한 연금감소 폭을 능가하여 연금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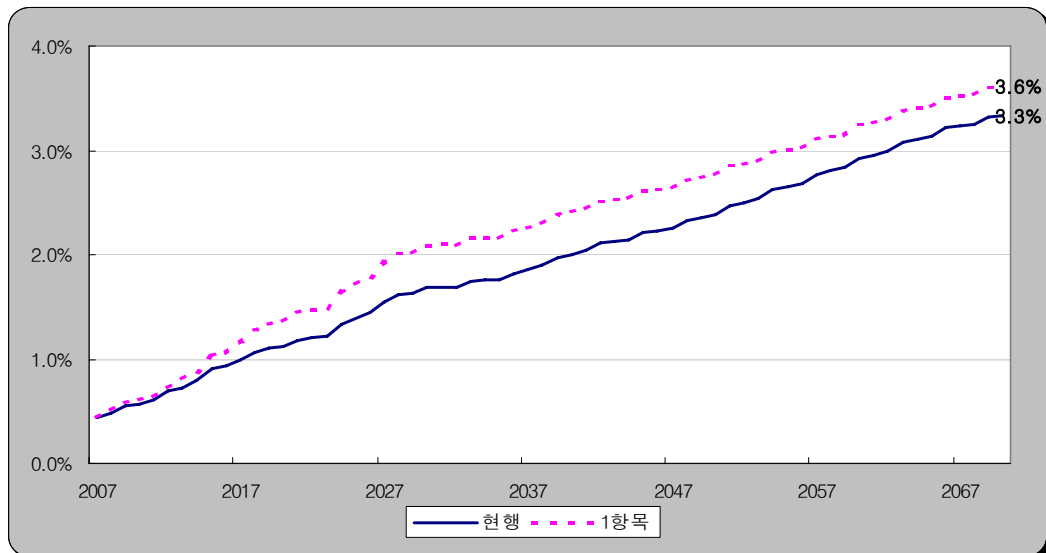
〈부표 2〉 연금보수의 변경과 전기간평균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8,117	10,033	48,149	105.4%
2010	46,552	13,385	59,937	51,766	13,385	65,151	108.7%
2015	93,366	25,074	118,441	110,145	25,074	135,219	114.2%
2020	143,646	32,879	176,525	175,172	32,879	208,051	117.9%
2025	211,991	44,496	256,487	262,891	44,496	307,387	119.8%
2030	298,118	50,644	348,762	373,057	50,644	423,702	121.5%
2035	353,767	46,462	400,229	435,267	46,462	481,729	120.4%
2040	435,784	56,971	492,755	526,834	56,971	583,805	118.5%
2045	517,196	63,885	581,082	613,637	63,885	677,523	116.6%
2050	595,286	77,662	672,948	694,268	77,662	771,930	114.7%
2055	706,527	93,468	799,994	807,671	93,468	901,139	112.6%
2060	834,659	108,740	943,399	936,397	108,740	1,045,137	110.8%
2065	959,762	119,666	1,079,428	1,061,657	119,666	1,181,323	109.4%
2070	1,103,284	128,371	1,231,655	1,209,684	128,371	1,338,055	108.6%

※ 정부부담액 = 연금부담금 + 보전액 + 퇴직급여부담금

[부도 1] 연금보수의 변경과 전기간평균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비용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부표 3〉 비용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5,138	59,248	4,110	1.0%	-1.9%
2010	51,320	72,367	21,047	4.5%	63,249	72,367	9,118	1.9%	-2.6%
2015	62,327	124,520	62,193	10.4%	85,061	124,520	39,459	6.6%	-3.8%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06,952	181,175	74,223	10.3%	-4.3%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116,301	254,871	138,570	16.2%	-3.5%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32,702	349,673	216,971	22.2%	-3.0%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50,157	414,892	264,735	23.6%	-2.4%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68,231	506,905	338,674	26.1%	-1.9%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95,680	600,238	404,558	27.2%	-1.9%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222,407	689,651	467,244	27.4%	-1.9%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52,025	813,435	561,410	28.9%	-1.9%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83,463	954,896	671,433	30.5%	-1.8%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321,736	1,096,212	774,476	30.9%	-1.8%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72,383	1,261,168	888,785	31.0%	-1.8%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부표 4〉 비용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1,529	10,033	41,561	91.0%
2010	46,552	13,385	59,937	40,657	13,385	54,042	90.2%
2015	93,366	25,074	118,441	82,131	25,074	107,206	90.5%
2020	143,646	32,879	176,525	128,113	32,879	160,992	91.2%
2025	211,991	44,496	256,487	197,227	44,496	241,723	94.2%
2030	298,118	50,644	348,762	283,925	50,644	334,569	95.9%
2035	353,767	46,462	400,229	340,517	46,462	386,979	96.7%
2040	435,784	56,971	492,755	423,597	56,971	480,568	97.5%
2045	517,196	63,885	581,082	503,365	63,885	567,251	97.6%
2050	595,286	77,662	672,948	579,569	77,662	657,232	97.7%
2055	706,527	93,468	799,994	688,716	93,468	782,184	97.8%
2060	834,659	108,740	943,399	814,641	108,740	923,381	97.9%
2065	959,762	119,666	1,079,428	937,043	119,666	1,056,709	97.9%
2070	1,103,284	128,371	1,231,655	1,076,969	128,371	1,205,340	97.9%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재정전망

〈부표 5〉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46,806	59,417	12,611	3.0%	0.1%
2010	51,320	72,367	21,047	4.5%	51,320	72,843	21,523	4.6%	0.1%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2,327	126,137	63,810	10.7%	0.3%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519	184,503	108,984	15.1%	0.5%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86,426	258,512	172,086	20.1%	0.4%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03,980	361,418	257,438	26.4%	1.2%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23,344	411,780	288,436	25.7%	-0.3%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3,570	477,369	333,799	25.7%	-2.3%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67,691	512,804	345,113	23.2%	-5.9%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90,604	533,342	342,738	20.1%	-9.2%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15,986	581,911	365,925	18.8%	-12.0%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42,956	636,698	393,742	17.9%	-14.4%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75,762	690,311	414,549	16.5%	-16.2%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19,133	771,382	452,249	15.8%	-17.0%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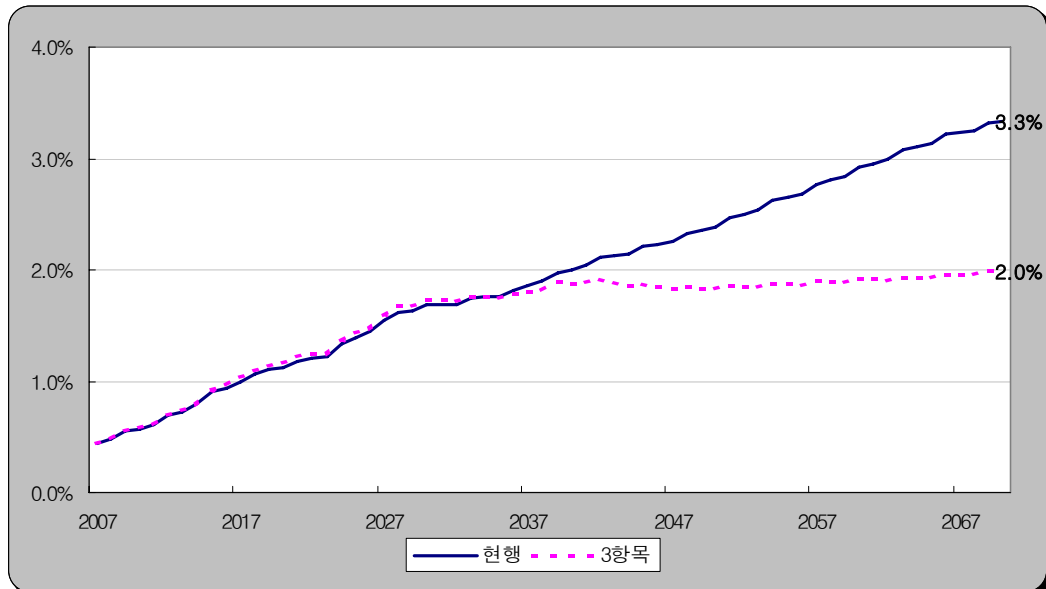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보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전기간평균제로 이행할 경우, 전 기간에 걸쳐, 연금재정이 악화됨.
- 이에 덧붙여서, 발전위원회 개선안의 연금지급율(신·구 공무원의 연금지급률이 이원화됨에 유의)을 적용할 경우, 2030년 중반까지는 경미하게 재정이 악화되나,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이 크게 개선됨.

〈부표 6〉 {연금보수의 변경+전기간평균+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5,817	10,033	45,849	100.4%
2010	46,552	13,385	59,937	47,029	13,385	60,414	100.8%
2015	93,366	25,074	118,441	94,983	25,074	120,057	101.4%
2020	143,646	32,879	176,525	146,974	32,879	179,853	101.9%
2025	211,991	44,496	256,487	215,632	44,496	260,128	101.4%
2030	298,118	50,644	348,762	309,863	50,644	360,507	103.4%
2035	353,767	46,462	400,229	350,655	46,462	397,117	99.2%
2040	435,784	56,971	492,755	406,249	56,971	463,220	94.0%
2045	517,196	63,885	581,082	429,762	63,885	493,648	85.0%
2050	595,286	77,662	672,948	438,977	77,662	516,639	76.8%
2055	706,527	93,468	799,994	475,002	93,468	568,470	71.1%
2060	834,659	108,740	943,399	516,461	108,740	625,200	66.3%
2065	959,762	119,666	1,079,428	553,861	119,666	673,527	62.4%
2070	1,103,284	128,371	1,231,655	613,499	128,371	741,869	60.2%

[부도 2]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부표 7〉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개선				보전율 차이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수입	지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46,806	59,806	13,000	3.1%	0.2%
2010	51,320	72,367	21,047	4.5%	51,320	72,166	20,846	4.4%	-0.1%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2,327	119,133	56,806	9.5%	-0.9%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519	173,982	98,463	13.6%	-1.0%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86,426	237,156	150,730	17.6%	-2.1%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03,980	318,658	214,678	22.0%	-3.2%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23,344	379,857	256,513	22.9%	-3.1%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3,570	446,543	302,973	23.3%	-4.7%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67,691	486,881	319,190	21.4%	-7.7%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90,604	543,096	352,492	20.7%	-8.6%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15,986	646,907	430,921	22.2%	-8.6%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42,956	778,850	535,894	24.3%	-8.0%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75,762	929,437	653,675	26.1%	-6.6%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19,133	1,113,202	794,069	27.7%	-5.1%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 초기 몇 년을 제외한다면, 보전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현행과의 차이가 204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정해지고 있음.
- 2070년 보전율의 경우, 현행 33%에 비해 5% pt 낮은 수준인 28%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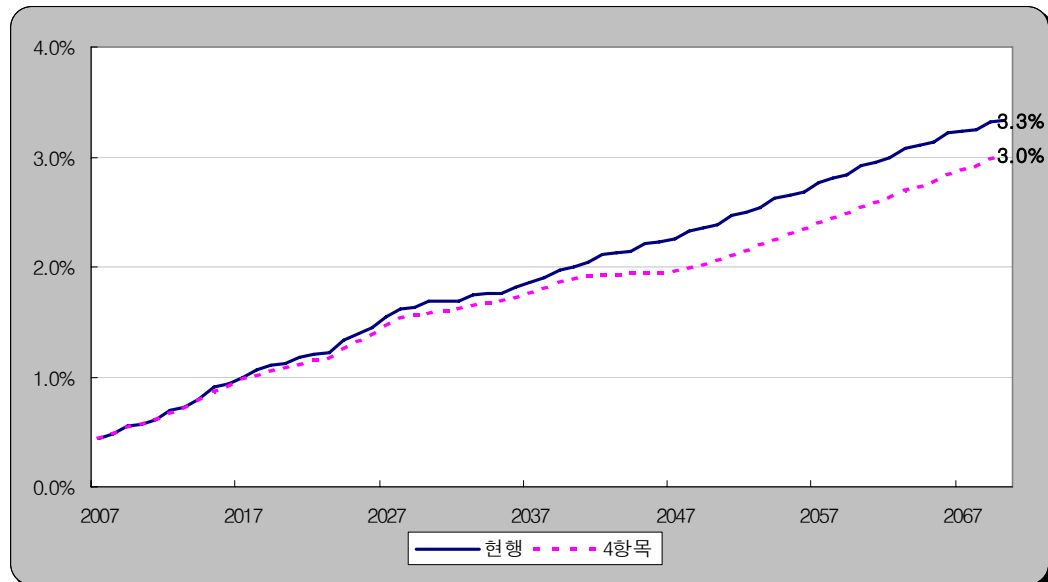
〈부표 8〉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6,205	10,033	46,238	101.2%
2010	46,552	13,385	59,937	46,351	13,385	59,737	99.7%
2015	93,366	25,074	118,441	87,979	25,074	113,054	95.5%
2020	143,646	32,879	176,525	136,454	32,879	169,333	95.9%
2025	211,991	44,496	256,487	194,276	44,496	238,772	93.1%
2030	298,118	50,644	348,762	267,103	50,644	317,747	91.1%
2035	353,767	46,462	400,229	318,732	46,462	365,193	91.2%
2040	435,784	56,971	492,755	375,422	56,971	432,394	87.8%
2045	517,196	63,885	581,082	403,840	63,885	467,725	80.5%
2050	595,286	77,662	672,948	448,731	77,662	526,394	78.2%
2055	706,527	93,468	799,994	539,999	93,468	633,466	79.2%
2060	834,659	108,740	943,399	658,613	108,740	767,353	81.3%
2065	959,762	119,666	1,079,428	792,987	119,666	912,653	84.5%
2070	1,103,284	128,371	1,231,655	955,319	128,371	1,083,689	88.0%

※ 연금연동률 변경 내역 참조

[부도 3] 연금연동방법의 변동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9〉 연금연동률 변경 내역

연도	명 목 보수인상율	cpi	연금연동률		연 도	명 목 보수인상율	cpi	연금연동률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2008	7.00	3.00	3.00	4.20	2041	5.70	3.00	3.00	3.81
2009	7.00	3.00	7.03	4.20	2042	5.70	3.00	5.17	3.81
2010	6.90	3.00	3.00	4.17	2043	5.70	3.00	3.00	3.81
2011	7.00	3.00	3.00	4.20	2044	5.70	3.00	3.00	3.81
2012	7.00	3.00	8.94	4.20	2045	5.70	3.00	5.03	3.81
2013	6.90	3.00	3.00	4.17	2046	5.60	3.00	3.00	3.78
2014	6.90	3.00	3.00	4.17	2047	5.60	3.00	3.00	3.78
2015	6.80	3.00	8.72	4.14	2048	5.70	3.00	4.94	3.81
2016	6.80	3.00	3.00	4.14	2049	5.70	3.00	3.00	3.81
2017	6.70	3.00	3.00	4.11	2050	5.80	3.00	3.00	3.84
2018	6.70	3.00	8.30	4.11	2051	5.80	3.00	5.23	3.84
2019	6.70	3.00	3.00	4.11	2052	5.80	3.00	3.00	3.84
2020	6.60	3.00	3.00	4.08	2053	5.80	3.00	3.00	3.84
2021	6.50	3.00	7.88	4.05	2054	5.80	3.00	5.27	3.84
2022	6.50	3.00	3.00	4.05	2055	5.80	3.00	3.00	3.84
2023	6.40	3.00	3.00	4.02	2056	5.80	3.00	3.00	3.84
2024	6.40	3.00	7.39	4.02	2057	5.80	3.00	5.27	3.84
2025	6.30	3.00	3.00	3.99	2058	5.80	3.00	3.00	3.84
2026	6.30	3.00	3.00	3.99	2059	5.80	3.00	3.00	3.84
2027	6.20	3.00	6.90	3.96	2060	5.80	3.00	5.27	3.84
2028	6.20	3.00	3.00	3.96	2061	5.80	3.00	3.00	3.84
2029	6.10	3.00	3.00	3.93	2062	5.80	3.00	3.00	3.84
2030	6.00	3.00	6.30	3.90	2063	5.80	3.00	5.27	3.84
2031	5.90	3.00	3.00	3.87	2064	5.80	3.00	3.00	3.84
2032	5.90	3.00	3.00	3.87	2065	5.80	3.00	3.00	3.84
2033	5.90	3.00	5.63	3.87	2066	5.80	3.00	5.27	3.84
2034	5.90	3.00	3.00	3.87	2067	5.80	3.00	3.00	3.84
2035	5.90	3.00	3.00	3.87	2068	5.80	3.00	3.00	3.84
2036	5.80	3.00	5.55	3.84	2069	5.80	3.00	5.27	3.84
2037	5.80	3.00	3.00	3.84	2070	5.80	3.00	3.00	3.84
2038	5.80	3.00	3.00	3.84					
2039	5.80	3.00	5.36	3.84					
2040	5.80	3.00	3.00	3.84					

□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부표 10〉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46,806	58,515	11,709	2.8%	-0.1%
2010	51,320	72,367	21,047	4.5%	51,320	71,774	20,454	4.3%	-0.2%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2,327	123,608	61,281	10.2%	-0.2%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519	180,239	104,720	14.5%	-0.1%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86,426	253,879	167,453	19.6%	-0.1%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03,980	349,118	245,138	25.1%	-0.1%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23,344	415,343	291,999	26.0%	0.0%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3,570	508,971	365,401	28.1%	0.1%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67,691	604,427	436,736	29.3%	0.2%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90,604	696,944	506,340	29.7%	0.4%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15,986	823,407	607,421	31.3%	0.5%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42,956	967,288	724,332	32.9%	0.6%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75,762	1,110,549	834,787	33.3%	0.6%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19,133	1,277,440	958,307	33.4%	0.6%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 연금지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시금 지출이 감소하여 연금재정이 경미하게 개선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지출이 증대하여 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2070년 보전율의 경우, 현행 33%에 비해 0.4% pt 높은 수준인 33.4%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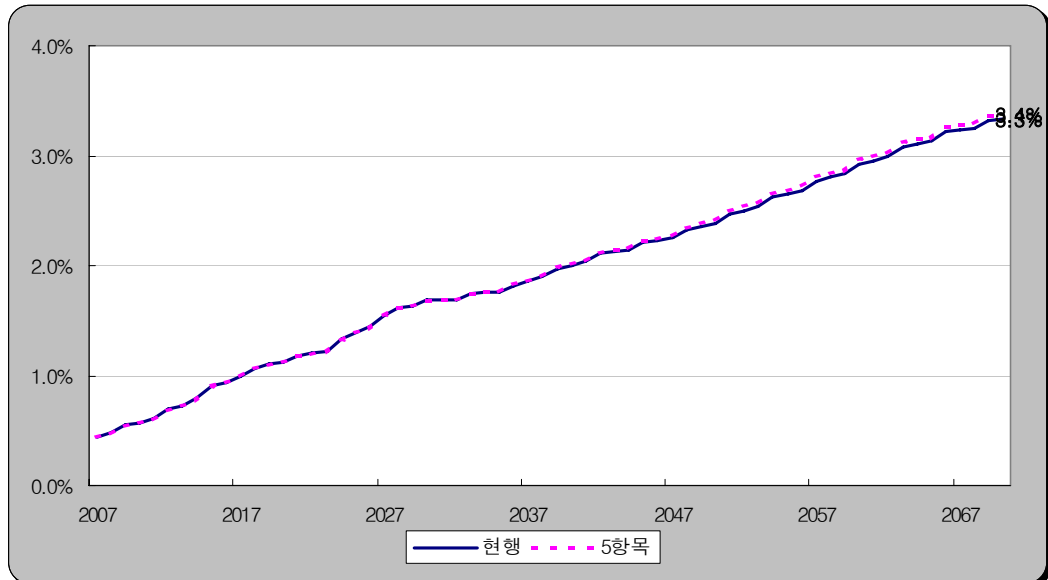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11〉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4,915	10,033	44,947	98.4%
2010	46,552	13,385	59,937	45,959	13,385	59,344	99.0%
2015	93,366	25,074	118,441	92,454	25,074	117,528	99.2%
2020	143,646	32,879	176,525	142,710	32,879	175,589	99.5%
2025	211,991	44,496	256,487	210,999	44,496	255,495	99.6%
2030	298,118	50,644	348,762	297,563	50,644	348,207	99.8%
2035	353,767	46,462	400,229	354,218	46,462	400,680	100.1%
2040	435,784	56,971	492,755	437,850	56,971	494,821	100.4%
2045	517,196	63,885	581,082	521,386	63,885	585,271	100.7%
2050	595,286	77,662	672,948	602,580	77,662	680,242	101.1%
2055	706,527	93,468	799,994	716,498	93,468	809,966	101.2%
2060	834,659	108,740	943,399	847,050	108,740	955,790	101.3%
2065	959,762	119,666	1,079,428	974,099	119,666	1,093,765	101.3%
2070	1,103,284	128,371	1,231,655	1,119,556	128,371	1,247,927	101.3%

[부도 4] 연금수급요건의 변화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부표 12〉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46,806	59,248	12,442	2.9%	0.0%
2010	51,320	72,367	21,047	4.5%	51,320	72,367	21,047	4.5%	0.0%
2015	62,327	124,520	62,193	10.4%	62,327	124,520	62,193	10.4%	0.0%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75,519	181,175	105,656	14.6%	0.0%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86,426	252,747	166,321	19.5%	-0.2%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03,980	337,756	233,776	24.0%	-1.2%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23,344	366,205	242,861	21.6%	-4.4%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43,570	435,669	292,099	22.5%	-5.5%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167,691	526,247	358,556	24.1%	-5.0%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190,604	602,376	411,772	24.2%	-5.1%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15,986	709,027	493,041	25.4%	-5.4%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242,956	839,185	596,229	27.1%	-5.2%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275,762	973,479	697,717	27.8%	-4.9%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19,133	1,148,748	829,615	28.9%	-3.9%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보전율이 현행에 비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연금 재정개선효과는 2030년대 중반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
- 2070년 보전율의 경우, 현행 33%에 비해 4% pt 낮은 수준인 29%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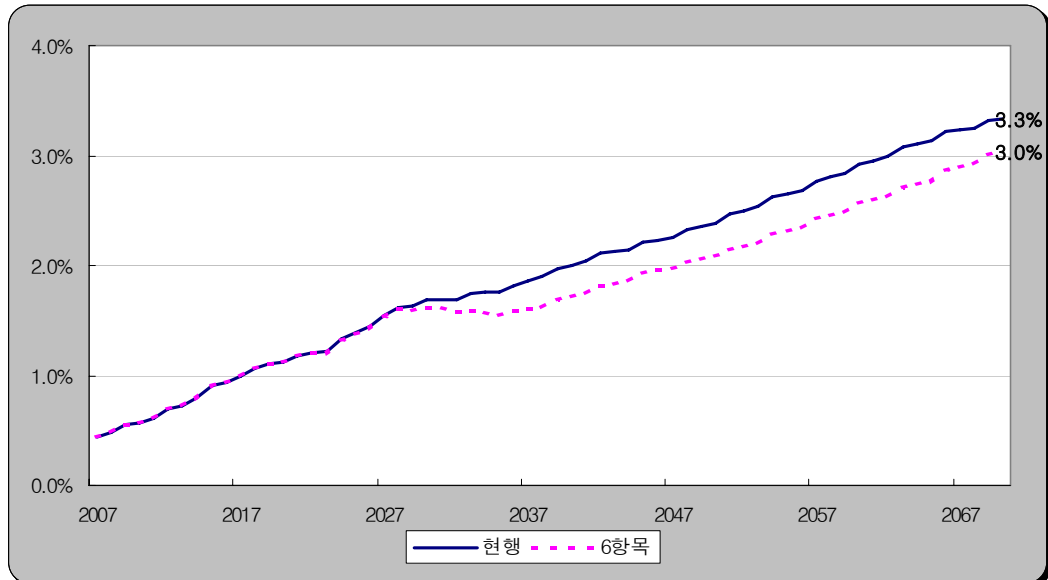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13〉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액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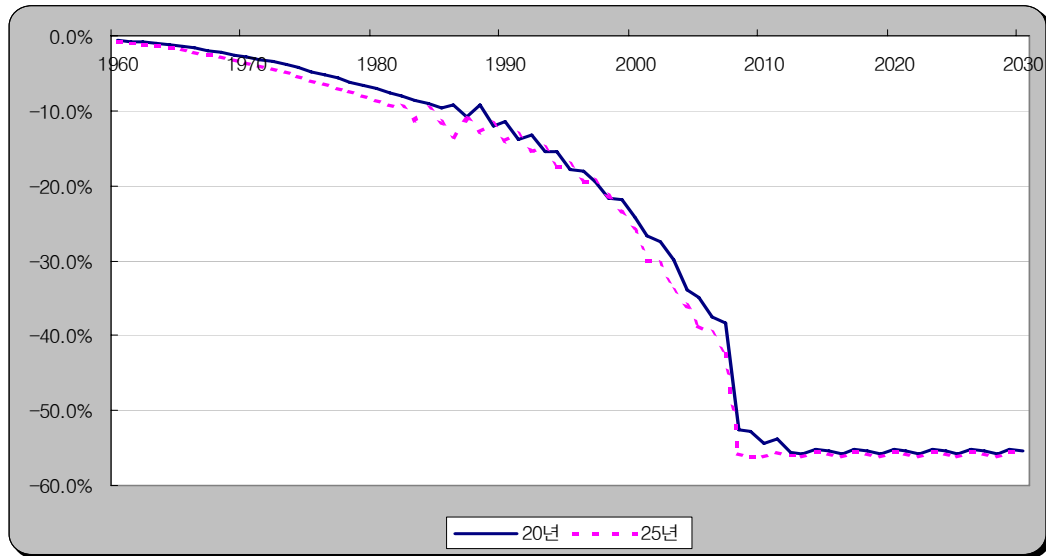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수당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5,647	10,033	45,680	100.0%
2010	46,552	13,385	59,937	46,552	13,385	59,937	100.0%
2015	93,366	25,074	118,441	93,366	25,074	118,441	100.0%
2020	143,646	32,879	176,525	143,646	32,879	176,525	100.0%
2025	211,991	44,496	256,487	209,867	44,496	254,363	99.2%
2030	298,118	50,644	348,762	286,201	50,644	336,845	96.6%
2035	353,767	46,462	400,229	305,080	46,462	351,541	87.8%
2040	435,784	56,971	492,755	364,549	56,971	421,520	85.5%
2045	517,196	63,885	581,082	443,206	63,885	507,091	87.3%
2050	595,286	77,662	672,948	508,011	77,662	585,673	87.0%
2055	706,527	93,468	799,994	602,118	93,468	695,586	86.9%
2060	834,659	108,740	943,399	718,947	108,740	827,687	87.7%
2065	959,762	119,666	1,079,428	837,029	119,666	956,694	88.6%
2070	1,103,284	128,371	1,231,655	990,865	128,371	1,119,236	90.9%

[부도 5]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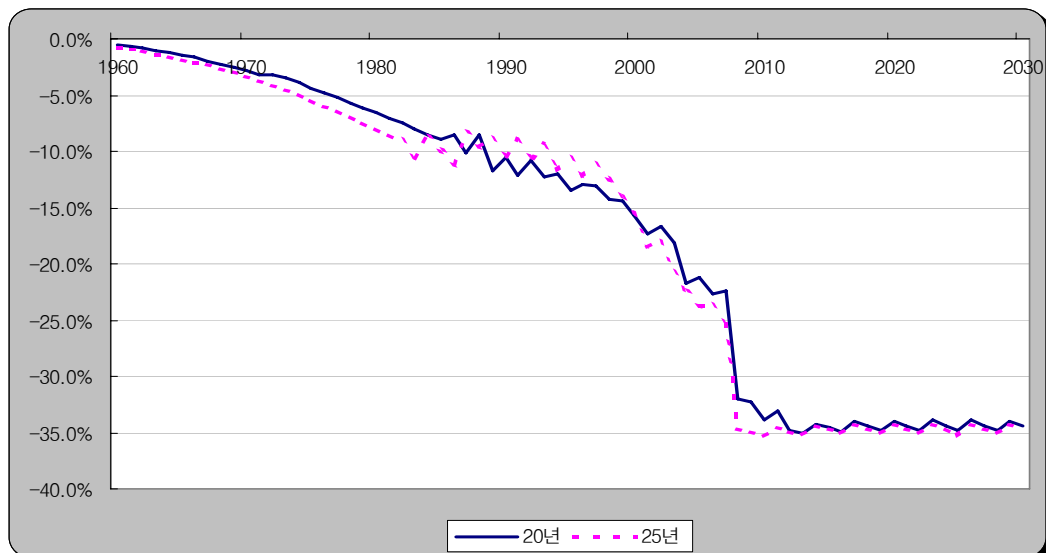


부 록 2 : 개선안에 따른 임용연도별 공무원편익의 변화

[부도 6] 제도개선안에 따른 연금 감소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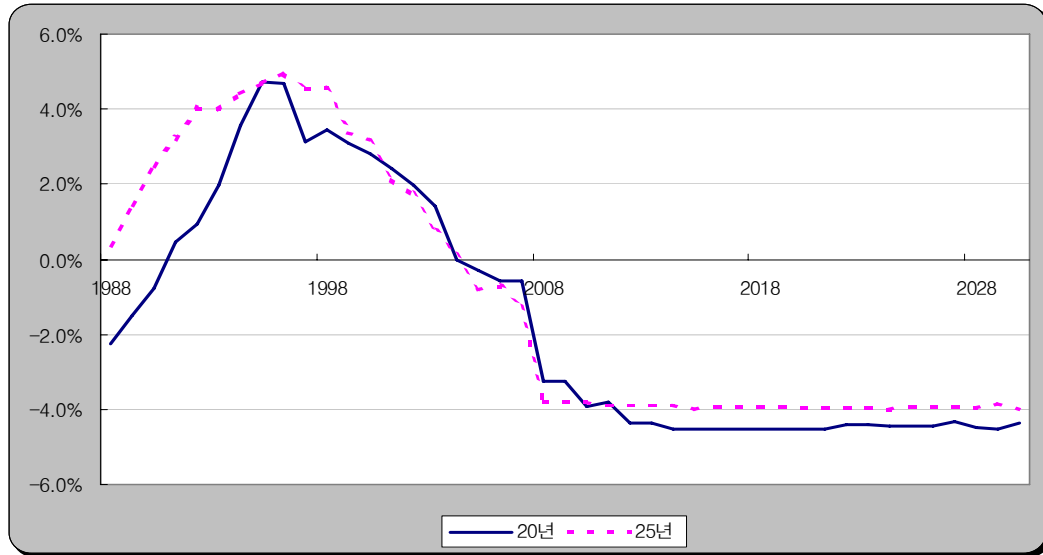


[부도 7] 제도개선안에 따른 총급여 감소율 추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도 8] 제도개선안에 따른 민간 대비 생애소득 증감률 추이



부 록 3 : 신규자 퇴직연금의 완전적립화에 따른 정책효과

1) 제도개선안의 연금재정 영향분석

□ 수지규모 개선효과

〈부표 14〉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보전율 차이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수 입	지 출	보전액	보전율	
2008	46,806	59,248	12,442	2.9%	55,164	58,897	3,734	0.9%	-2.1%
2010	51,320	72,367	21,047	4.5%	63,281	71,590	8,309	1.8%	-2.7%
2015	62,327	124,520	62,193	10.4%	85,091	120,316	35,225	5.9%	-4.5%
2020	75,519	181,175	105,656	14.6%	107,016	177,926	70,910	9.8%	-4.8%
2025	86,426	254,871	168,445	19.7%	120,133	243,457	123,324	14.4%	-5.3%
2030	103,980	349,673	245,693	25.2%	149,529	328,323	178,794	18.3%	-6.9%
2035	123,344	414,892	291,548	26.0%	164,949	347,627	182,678	16.3%	-9.7%
2040	143,570	506,905	363,335	28.0%	183,734	395,356	211,622	16.3%	-11.7%
2045	167,691	600,238	432,547	29.1%	206,405	452,302	245,898	16.5%	-12.5%
2050	190,604	689,651	499,047	29.3%	235,590	494,010	258,420	15.2%	-14.1%
2055	215,986	813,435	597,449	30.8%	268,414	535,082	266,669	13.7%	-17.0%
2060	242,956	954,896	711,940	32.3%	304,480	583,584	279,104	12.7%	-19.6%
2065	275,762	1,096,212	820,450	32.7%	345,957	642,985	297,028	11.9%	-20.9%
2070	319,133	1,261,168	942,035	32.8%	396,072	714,465	318,393	11.1%	-21.7%

※ 과세대상 보수총액 기준

- 연금지출액은 2008년 5조 8,897억원, 2010년 7조 1,590억원, 2015년 12조 316억 원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에는 71조 4,465억원에 달하여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에 비해 12.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제도개선안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02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지출액이 경미하게 감소하나, 그 이후 점차적으로 절약규모가 커져서,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43% 감소하였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반면, 연금수입액은 2008년 5조 5,164억원, 2010년 6조 3,281억원, 2015년 8조 5,09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며, 2070년에는 39조 6,072억원에 머물러서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에 비해 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보험료율 상향조정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에 말미암아, 이행기간인 초반부를 제외하면, 일정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24%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2008년 수입액은 동년 지출액의 93.7%에 이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이 하락하여 2010년 88.4% 및 2015년 70.7%로 떨어지고 있으며, 2070년에 접어들어서는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전액은 2008년 3,734억원에서 2010년 8,309억원 및 2015년 3조 5,22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그 이후 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어 2030년에 17조 8,794억원 그리고 2070년 31조 8,393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는, 2020년대 후반부까지는 연금수입의 증가로 보전액이 경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 비해 66%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연금지출은 2020년대 후반 이후 상당 규모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입은 전 기간에 걸쳐 경미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보전액은 202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여, 2070년의 경우, 개혁 전 보전액의 1/3 규모에 이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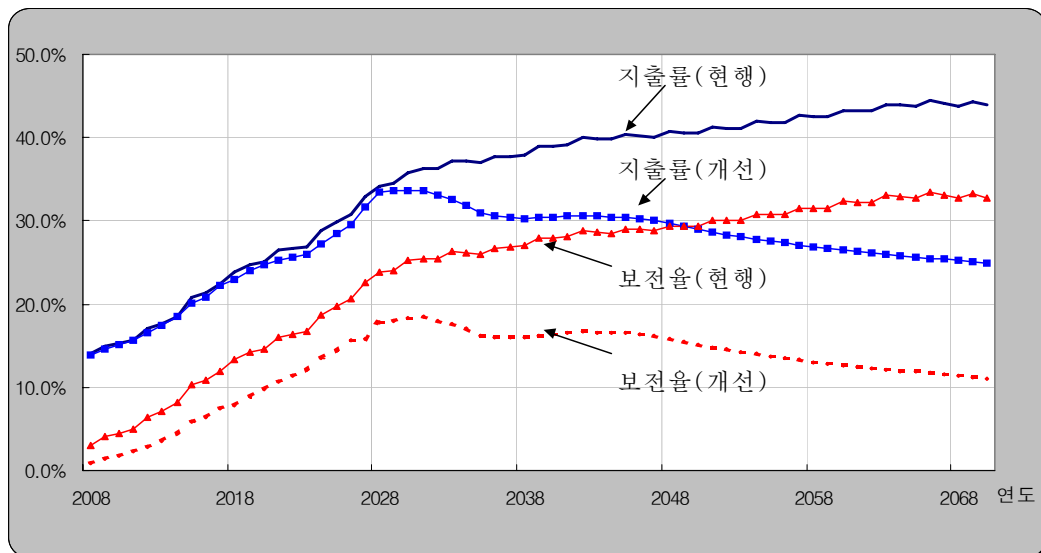
□ 재정지표 개선효과

〈부표 15〉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계

(단위 : %)

연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보전율
2008	24.6%	13.9%	13.0%	0.9%
2010	27.3%	15.2%	13.4%	1.8%
2015	35.8%	20.1%	14.2%	5.9%
2020	45.5%	24.7%	14.8%	9.8%
2025	54.7%	28.5%	14.1%	14.4%
2030	62.1%	33.7%	15.3%	18.3%
2035	64.8%	31.0%	14.7%	16.3%
2040	68.8%	30.4%	14.1%	16.3%
2045	73.7%	30.4%	13.9%	16.5%
2050	76.3%	29.0%	13.8%	15.2%
2055	78.4%	27.6%	13.8%	13.7%
2060	80.4%	26.5%	13.8%	12.7%
2065	82.3%	25.7%	13.8%	11.9%
2070	84.4%	24.9%	13.8%	11.1%

[부도 9] 제도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추이 : 과세대상보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장기재정동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연금정보를 제도 운영자 및 정책 입안가에게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추계결과를 지표화할 필요가 있음.
 - 전망지표로 부양률, 수입률, 지출률, 수지율, 추가부담률(보전율), 기금적립률 등이 존재함.
 - 재직공무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부양률은 연금재정의 선행지표로서 재정부담의 간접적인 척도 역할을 담당하며, 과세대상보수총액 대비 연금재정수입액, 연금재정지출액 및 보전액으로 각각 정의되는 수입률, 지출률 및 보전율을 통해서 재정수지의 균형 여부 및 균형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족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재정추세(financial trend)를 진단할 수 있음.
 - 한편, 연금재정지출 대비 연금재정수입의 비율로 정의되는 수지율은 연금재정수입의 규모를 지출에 대비하여 가늠하는 지표로서 보전율과 유사한 개념이며, 연금재정지출액 대비 연금기금의 비율로 정의되는 기금적립률은 연금기금만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최대화 연도 및 고갈시점을 알려줌.
 - 이 중에서, 보전율이야말로 장기재정추계의 최종 결과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성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정부의 부담을 시간에 걸쳐 평준화함으로써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진작시키거나 적립지향적인 재정방식으로 이행하는 정책실험(policy simulation)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지출률 및 보전율 추계결과를 위주로 하여 제도 개선안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추계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지출률추계 결과
 -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 13.9%에 불과하지만 202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2030년 33.7% 정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면모를

나타내어, 2070년의 경우, 24.9%에 달하여 초기연도 13.9%에 비해 1.8배 상승하고 있음.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세는, 한편으로는, 퇴직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더 오래 사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연금수급자 구조가 아직 유년상태라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이행기간의 적용으로 제도개선효과가 분명하게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중반기부터의 완만한 하락세는, 한편으로 연금수급자구조 역시 노령화되면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연금지급률 인하, 전 기간평균보수 적용, 지급개시연령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금재정지출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임.
- 제도개선효과로는, 1) 제도개선사항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보수로의 확대, 물가와 보수의 조합에 의한 연금연동, 최저가입기간 하향조정 등의 지출증가요인이 겹치는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지출률 하락이 상당히 저조하지만, 2)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출률 하락이 확대되어, 2070년의 경우, 44.0%에서 19.1% pt 하락하여 24.9%에 머물게 됨.

○ 보전율추계 결과

- 보전율은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점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표로서 공무원연금의 장·단기 재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재정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예컨대, 보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는 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방식이 균등부담원칙의 각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 보전율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추계 초기연도인 2008년 0.9%에서 시작하여 2010년 1.8% 및 2015년 5.9%로 경미하게 상승, 점차 급속하게 진행되어 2030년 18.3% 정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면모를 나타내어, 2070년의 경우, 11.1%에 불과해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전반기의 급속한 상승세는, 앞서의 지출률 추세와 흡사하게, 한편으로는, 퇴직자 증가, 연금선택률 상승,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연수급자가 더 많이 유입되고 더 오래 사는 반면에 연금수급자 구조가 아직 유년상태라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이행기간의 적용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발휘되지 않기 때문임.
- 중반기부터의 완만한 하락세는, 앞서의 지출률 추세와 흡사하게, 한편으로 연금수급자구조 역시 노령화되면서 사망하는 수급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연금지급률 인하, 전기간평균보수 적용, 지급개시연령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연금재정지출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임.
- 제도개선효과로는, 1) 제도개선사항이 장기적 이행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 물가와 보수의 조합에 의한 연금연동, 최저가입기간 하향조정 등의 지출증가요인이 겹치는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보전율 하락이 다소 경미하지만, 2)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보전율 하락이 확대되어, 2070년의 경우, 32.8%에서 21.7% pt 하락하여 11.1%에 머물게 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지출률의 경우, 제도 개선 후 20년까지는 하락폭이 미미하나, 203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개선되어 2070년 경 4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보전율의 경우, 제도 개선 직후부터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030년대 초반 이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음. 2070년 경 33% 수준에서 11%로 하락하여 개혁 전의 1/3에 머무르고 있음.

□ 정부부담 개선효과

- 제도개선안은,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조정하는 반면 과세대상소득으로의 연금산정 기준보수 확대, 법정퇴직금수준으로의 퇴직수당 상향조정, 신규임용자 저축계정 제공 등과 같은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개선안의 재정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연금 재정효과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즉, 퇴직연금·저축계정 부담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연금보수 범위 확대로 인한 정부재정의 증가규모와 공무원연금 수급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감소규모를 비교하는 가운데 제도개선안의 재정효과를 검토하여야 함.

〈부표 16〉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증감률 (b/a)
	연 금	퇴직수당	계(a)	연 금	퇴직금	저축계정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1,166	11,023	39	42,227	92.4%
2010	46,552	13,385	59,937	39,864	17,599	222	57,685	96.2%
2015	93,366	25,074	118,441	77,913	42,548	887	121,347	102.5%
2020	143,646	32,879	176,525	124,832	70,106	2,039	196,977	111.6%
2025	211,991	44,496	256,487	183,919	110,464	3,734	298,117	116.2%
2030	298,118	50,644	348,762	254,258	151,022	6,143	411,423	118.0%
2035	353,767	46,462	400,229	265,941	162,825	8,948	437,715	109.4%
2040	435,784	56,971	492,755	304,388	176,209	11,918	492,515	100.0%
2045	517,196	63,885	581,082	350,130	157,336	14,651	522,116	89.9%
2050	595,286	77,662	672,948	377,414	142,967	17,032	537,413	79.9%
2055	706,527	93,468	799,994	402,265	161,191	19,421	582,877	72.9%
2060	834,659	108,740	943,399	432,943	182,924	22,039	637,906	67.6%
2065	959,762	119,666	1,079,428	471,846	207,982	25,058	704,887	65.3%
2070	1,103,284	128,371	1,231,655	518,560	238,158	28,694	785,412	63.8%

※ 연금 : 정부부담금과 보전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부표 17〉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총부담(내역) 전망

(단위 :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행				개선							
	정부 부담금	퇴직 수당	정부 보전액	계(a)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보충 연금 (신규 공무원)	계(b)
					정부부담금		정부보전액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2008	23,205	10,033	12,442	45,680	27,241	191	4,106	-372	10,699	324	39	42,227
2010	25,505	13,385	21,047	59,937	30,378	1,177	10,483	-2,174	15,759	1,840	222	57,685
2015	31,172	25,074	62,194	118,441	37,037	5,651	45,168	-9,943	35,185	7,363	887	121,347
2020	37,990	32,879	105,656	176,525	39,639	14,283	96,680	-25,770	53,181	16,925	2,039	196,977
2025	43,546	44,496	168,445	256,487	34,438	26,157	170,972	-47,649	79,469	30,995	3,734	298,117
2030	52,425	50,644	245,693	348,762	32,437	43,028	257,209	-78,415	100,038	50,984	6,143	411,423
2035	62,219	46,462	291,548	400,229	20,585	62,679	295,390	-112,712	88,556	74,269	8,948	437,715
2040	72,449	56,971	363,335	492,755	9,281	83,485	351,745	-140,122	77,287	98,922	11,918	492,515
2045	84,650	63,885	432,547	581,082	1,608	102,624	392,713	-146,815	35,735	121,601	14,651	522,116
2050	96,239	77,662	499,047	672,948	0	118,994	368,537	-110,117	1,597	141,370	17,032	537,413
2055	109,077	93,468	597,449	799,994	0	135,596	309,581	-42,912	0	161,191	19,421	582,877
2060	122,719	108,740	711,940	943,399	0	153,839	237,680	41,424	0	182,924	22,039	637,906
2065	139,312	119,666	820,450	1,079,428	0	174,818	160,434	136,595	0	207,982	25,058	704,887
2070	161,250	128,371	942,034	1,231,655	0	200,167	89,044	229,350	0	238,158	28,694	785,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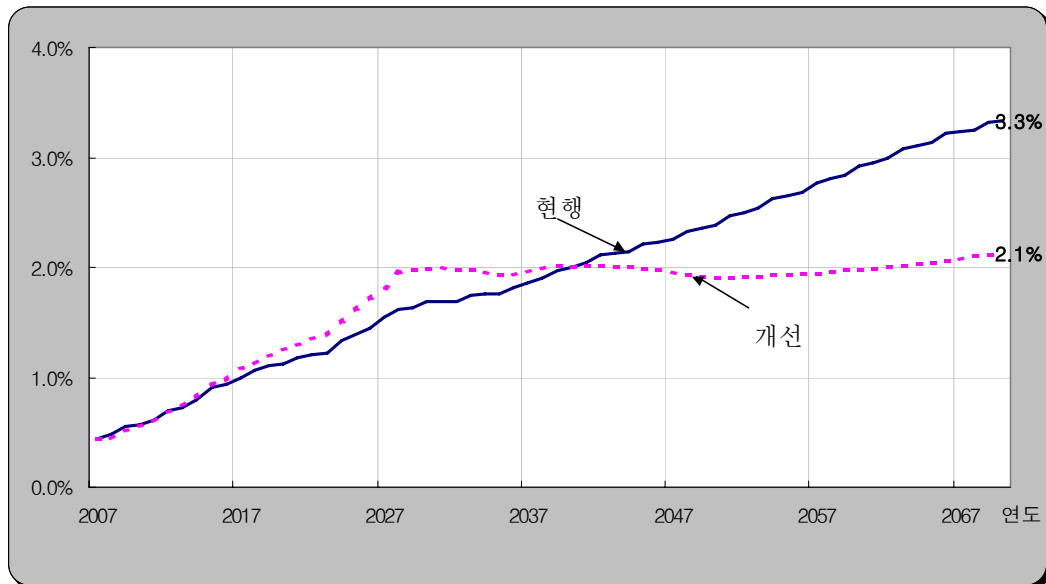
-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의 경우, 2008년 3조 1,166억원, 2010년 3조 9,864억원에서 2030년 25조 4,25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51조 8,56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로는, 정부보험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전액이 개혁 전에 비해 점차 크게 절약되어, 공무원연금 관련 정부부담은 2020년대 후반 이전에는 경미하게 감소하나, 그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의 경우, 52조억원에 이르러 개혁 전의 50%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반면, 퇴직급여 관련 정부부담의 경우, 2008년 1조 1,023억원, 2010년 1조 7,599억원에서 2030년 15조 1,02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23조 8,158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로는,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재직자의 미래기간 및 신규자에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 2070년의 경우, 개혁 전에 비해 86%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신규자 저축계정의 신설로 말미암아 정부부담이 2008년 39억원, 2010년 222억원 규모에서 2030년 6,14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2조 8,694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정부총부담액의 경우, 제도개선안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2008년 4조 2,227억원, 2010년 5조 7,685억원 규모에서, 2020년 19조 6,977억원, 2030년 41조 1,42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70년 78조 5,412억원에 달하고 있음.
- 제도개선효과로는, 1)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특히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정부부담이 감소하지만, 2) 그 이후부터 2030년대 후반까지는, 제도개선안의 장기적인 이행기간, 법정퇴직금 수준으로의 퇴직급여 상향조정, 신규자 저축계정 제공 등으로 인해 정부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3) 204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압도하면서 감소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함.
- 2070년의 경우, 개혁 전 정부부담 128조억원의 34% 수준인 79조억원이 되어 단해절약규모가 49조억원에 달하게 됨.
- 한편,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사전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할 경우, 사전적립식에 비해 추계 초·중반기에 걸쳐 정부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신 후반기의 재정절감 정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누적정부부담액이 20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현행제도에 비해 작아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에 따른 장기재정절약효과는 2050년대 초반에 가능해짐.
- 이를 보다 자세히 언급하면,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9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2055년에 이르러 누적정부부담액이 개혁 전과 일치하는 장기재정균형연도에 도달됨.

□ 정부부담지표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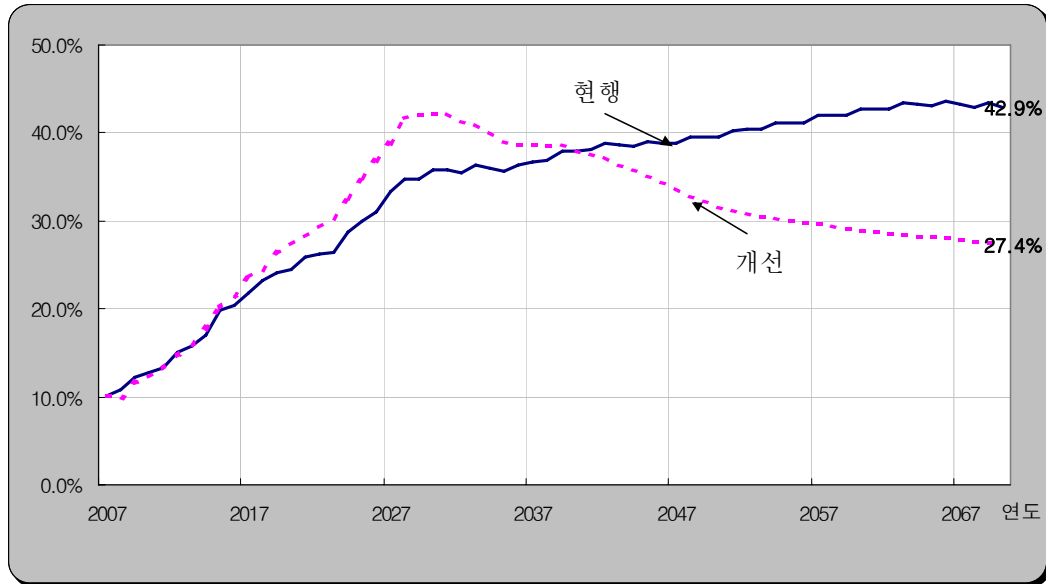
-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초기를 제외한 2030년대 후반이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비해 0.3~0.1% pt 높은 수준, 2040년에 이르러 동일 수준인 2.0% 그리고 그 이후 상당 폭 낮아져 2070년 현행 3.3%에 비해 1.2% pt 하락한 2.1%를 나타냄.

[부도 10] 제도개선안에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 GDP 대비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 특히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정부부담률이 하락하지만, 2) 그 이후부터 2030년대 후반까지는, 제도개선안의 장기적인 이행기간, 법정퇴직금 수준으로의 퇴직급여 상향조정, 신규자 저축계정 제공 등으로 인해 정부부담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3) 204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압도하면서 정부부담률이 다시 확대·하락하기 시작함.

[부도 11] 제도개선안에 따른 정부부담액 비율 추이: 과세대상보수 대비



- 과세대상 보수총액 대비 정부총부담률의 경우, 초기를 제외한 2030년대 후반까지는 현행 제도에 비해 7.2~0.1% pt 높은 수준, 2040년에 이르러 동일 수준인 37.9% 그리고 그 이후 상당 폭 낮아져 2070년 현행 42.9%에 비해 15.5% pt 하락한 27.4%에 머물게 됨.

□ 제도개선안의 전반적 재정 영향

-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때, 1) 연금재정에서는 수급구조 조정으로 정부담이 감소하나, 2) 퇴직급여재정 및 저축계정재정에서는 정부부담이 증가하여, 3) 정부총부담은,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0년대 후반까지는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그 이후에 접어들어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조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부담감소 현상이 확대·진행됨.
- 연금재정의 경우, 1) 제도 개선안의 장기적 이행기간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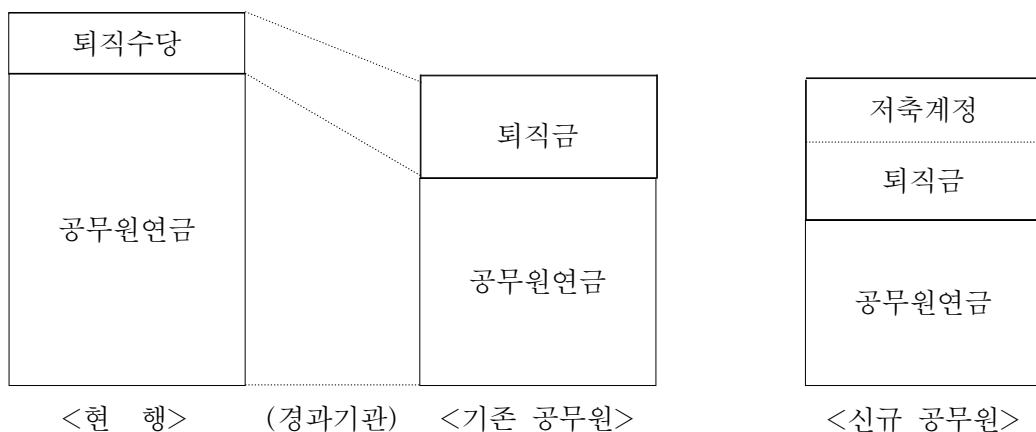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를 통해 202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절감효과가 경미하며, 2) 그 이후 접어들어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에 이르러, 보전액이 개혁 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짐.

- 정부총부담의 경우, 1) 초반을 제외한 2039년까지는 오히려 가중되어 연평균 1.2조원(현재가치 기준) 규모의 추가소요가 발생하나, 2) 2040년부터 재정이 확대·절감되기 시작하여 2055년에 이르러 장기재정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 수준 확대되며, 3) 전체적으로 볼 때, 2070년까지 83.8조원 감소가 가능하며, 2070년 단해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2.1%로 1.2% pt 하락하고 있음.
- 결국, 제도개선안의 재정절약효과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초)장기적인 측면에 찾아볼 수 있음.
 - 물론,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사전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할 경우, 사전적립식에 비해 추계 초·중반기에 걸쳐 정부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신 후반기의 재정절감 정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제도개선안의 선진화효과

[그림 4] 제도개선안 체계도



□ 보장체계의 다층구조화

- 제도개선안은 연금체계의 이원화에 기반을 둔 다층구조화(신규임용 공무원의 3층 구조 및 재직공무원의 2층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재직자의 경우, 개정공무원연금(1층), 결합형 퇴직금제도(2층, 과거재직기간 퇴직수당 및 미래재직기간 법정퇴직금 수준 부과식 퇴직연금)에 가입함.
 - 신규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의 개정공무원연금(1층), 법정퇴직금 수준 완전적립 퇴직연금(2층) 및 보충연금으로서의 저축계정(3층, 공무원 및 정부 1.0% 부담)에 가입함.
- 결국, 다층구조화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성숙에 따른 노령화 및 정부 미래 부담 증가에 따른 제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적립 퇴직연금 제도와 보충연금제도(저축계정)를 신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에 완충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연금제도의 합리화

-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 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신설 등으로 종래의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보충연금제도 등의 다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제공함.
- 또한, 연금수급권 확보 용이성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과 반환일시금 신설은 직업 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공적연금 간 및 퇴직연금 간 연계제도의 신설은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개선안에서 제외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요약

□ 제도개선안의 재정 영향

- 연금재정의 경우, 1) 개선안의 장기적 이행기간 및 과세대상보수로의 확대를 통해 202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절감효과가 경미한 반면, 2) 그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70년에 이르러, 보전액이 개혁 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짐.
- 정부총부담의 경우, 1) 연금재정에서는 크게 감소하나(특히 장기에 그러함) 퇴직 급여재정 및 저축계정재정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며, 3) 전체적으로는, 초반부를 제외하면, 2030년대 후반까지는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4) 그 이후, 공무원 연금의 수급구조 조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부담감소현상이 확대·진행됨.
 - 즉, 초반을 제외한 2039년까지는 연평균 1.2조원(현재가치 기준) 추가소요가 발생하나, 2) 2040년부터 재정이 확대·절감되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2070년까지) 83.8조원(현재가치 기준) 감소하며, 3) 2070년 단해의 경우,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이 2.1%로 1.2% pt 하락하여 개혁 전의 3/5 수준에 이르게 됨.
 - 신규자 퇴직급여를 제도개선안의 사전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할 경우, 사전적립식에 비해 추계 초·중반 기간에 걸쳐 정부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신 후반기의 재정절감 정도 역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 제도개선안의 형평성 영향

- 급여항목 차원에서 볼 때, 1) 연금급여는 감소하고, 2) 퇴직급여 및 저축계정급여(신규자의 경우)가 증가하는 반면, 3) 연금급여 감소효과가 기타급여 증가효과를 압도하여, 공무원의 총급여는 전반적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수익비, 급여에서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 생애소득이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내는 생애소득증감율 등에 있어서도 점진적 하향현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재직기간 및 지표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1) 신규자의 편익 감소 폭이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재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감소 폭이 확대되어 공무원의 세대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음.²³⁾

□ 제도개선안의 선진화 영향

- 연금체계의 이원화에 기반을 둔 다층구조화(신규임용 공무원의 3층 구조 및 재직공무원의 2층 구조)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성숙에 따른 노령화 및 정부 미래부담 증가의 제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2) 완전적립 퇴직연금제도와 보충연금제도(저축계정)를 신규임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에 완충역할을 도모하고자 함.
- 최저재직기간의 하향조정, 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신설 등으로 단기 재직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종래의 인사·정책적 차원 연금운영에서 탈피하여 직업 간 이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체적으로 볼 때, 제도개선안의 적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 결과가 가능해짐.

- 첫째, 초·중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추가 소요되나,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보전액이 지대한 규모로 감소하는 등, 재정절감효과가 지대하여, 정부부담 관련 국민 세대간 형평성이 크게 증진됨.

23) 급여 감소와 관련하여,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그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제도의 정책조정 연동방식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불과하며, 수익비, 균형보험료율 등과 같은 편익지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공무원 개인편익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대안 분석

- 둘째, 공무원 편익이 감소됨에 따라 민·관 편익 격차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임용연도가 늦어질수록 편익 감소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으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음.
- 셋째, 다층구조화를 통해 노령화에 따른 위험대처가 용이해지고 있으며, 단 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보다 유연한 연금제도를 제공하게 됨.

참 고 문 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5).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기초연구』.
- 김재경 · 김정록. (2002).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 송인보 · 황정아. (2004). 『공무원연금 개인적 형평성 연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김재경 · 김정록. (2005). 『공무원연금제도 이원화방안 평가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저자 약력 ■

✦ 김재경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미국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 김정록

경상대학교 전산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현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차장

✦ 황정아

이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석사
현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재정추계 주임

✦ 백은영

화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졸업
미국 Purdu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